대한민국정부

관보

http://gwanbo.moi.go.kr

제18923호 2017. 1. 6.(금)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7762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5
○대통령령제27763호(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 …… 7
○대통령령제27764호(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 …… 16
○대통령령제2776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26
○대통령령제2776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33
○대통령령제27767호(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38
○대통령령제2776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51
○대통령령제27769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63
○대통령령제27770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84

【부 령】

○행정자치부령제105호(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91
○행정자치부령제106호(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99
○법무부령제886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08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3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4호(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 …… 1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5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137
○국토교통부령제38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83
○국토교통부령제38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88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 199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0
○교육부고시제2017-108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 200
○외교부고시제2017-1호(여권의 사용제한 등) …… 201
○법무부고시제2017-7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20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 2100-3345, 2100-3346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2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호(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일부 개정) ····· 204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8호(청소년유해매체물) ····· 205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9호(청소년유해매체물) ····· 2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3호(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준공) ····· 2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호(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 ····· 2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중정정) ····· 217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2호(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 218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4호(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수립) ····· 218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5호(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 ····· 220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6호(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22
○문화재청고시제2017-1호(등록문화재 등록) ····· 238
○문화재청고시제2017-2호(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7년도〉) ····· 239
○문화재청고시제2017-3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240
○산림청고시제2017-1호(2017년도 조림비용) ····· 24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1호(국적상실) ····· 242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국적상실) ····· 2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하천점용 허가) ····· 2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호(하천점용〈변경〉 허가) ····· 24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항만공사 시행) ····· 2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항로표지 폐지) ····· 24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 24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 246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 247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호(소하천의 구조 · 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254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호(소하천의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254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호(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55
○국가보훈처공고제2017-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5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호(금융투자업 등록) ····· 25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호(자본감소 신청 승인) ····· 257
○교육부공고제2016-368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57
○교육부공고제2017-4호(대학설립 ·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59
○통일부공고제2017-1호(업무 위탁) ····· 259
○국방부공고제2017-1호(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6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호(2개 이상 시 ·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26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호(기부금품 처분 · 사용 계획 승인) ····· 2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 26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호(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 262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3
○환경부공고제2017-1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2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호(부동산투자회사 등록)…… 2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변경〉) …… 2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2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호(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6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호(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68
○병무청공고제2017-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270
○경찰청공고제2017-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91
○경찰청공고제2017-2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91
○중소기업청공고제2016-411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29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호(항만공사 실시계획)…… 29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호(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29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호(행정처분 통지)…… 29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 29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공시송달)) …… 296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7-101호(2017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 299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5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11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30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5호(학교[동탄중앙고〈구. 화성동탄(2) 제1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중정정) …… 304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2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304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 305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 306
○(울산)울주군고시제2017-7호(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 306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307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호(폐교재산 매각계획)…… 308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 309

【상　　훈】

○서훈(방송통신위원회 · 통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국세청 · 문화재청 · 대전광역시) …… 335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 342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 …… 343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 344
○결정(부산지방법원) …… 34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제2776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월이내에"를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을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과징금중에서"를 "과징금 중에서"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를 "행정심판 등에 따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으로, "가격등을"을 "가격 등을"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30일이전"을 "30일 전"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15일이내에”를 “1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향교등의 실명등기등”을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향교재산법에 의한”을 “「향교재산법」에 따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향교등”을 “향교 등”으로, “농지법에 의한”을 “「농지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763호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

국민제안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副賞)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8조(국방·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국방·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액 기준
1. 예산 절감	가. 1천만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frac{30}{100}$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frac{20}{100}$ + 300만원
	다. 1억원 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frac{10}{100}$ + 2100만원
2. 국고·조세 수입 증대		국고·조세 수입 증대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3. 행정 업무의 개선		가. 수: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나. 우: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다. 미: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라. 양: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마. 가: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고, 국민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며, 국민제안 실시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제외 대상 추가 및 반려 절차 신설(제2조제1호바목 및 제6조제4항)

1) 종전에는 제안이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도 국민제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추가함.

2)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 사유 통지(제10조제2항 및 제11조)

1) 국민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국민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2) 채택된 국민제안은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제13조)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제18조제2항)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한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았거나 채택제안과 동일·유사한 다른 사람의 국민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764호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

공무원제안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확인·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국방·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공무원의 국가 행정사무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방·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제안의 제출방법·접수·심사·채택·포상 및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5호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

창안등급	인사 특전의 종류	인사 특전 대상자 구분
1. 금상 · 은상 · 동상	가. 특별승진	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및 군무원 2)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3)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4) 교육공무원
	나. 특별승급	1)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직원 및 경호공무원 2) 호봉제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5)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 6) 군인
2. 장려상	특별승급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 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 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위 표의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표 2]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액 기준
1. 예산 절감	가. 1천만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frac{30}{100}$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frac{20}{100}$ + 300만원
	다. 1억원 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frac{10}{100}$ + 2100만원
2. 국고·조세 수입 증대		국고·조세 수입 증대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3. 행정 업무의 개선		가. 수: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나. 우: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다. 미: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라. 양: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마. 가: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무원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고, 공무원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의 제외 대상 추가 및 반려 절차 신설(제2조제1호바목 및 제6조제4항)

1) 종전에는 제안이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도 공무원제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추가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 사유 통지(제9조제2항 및 제10조)

1) 공무원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2) 채택된 공무원제안은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제16조제2항)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한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았거나 채택제안과 동일·유사한 다른 사람의 공무원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호의2 중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을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6만5100원”을 “6만7300원”으로, “6만3200원”을 “6만5500원”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을 “승진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35조제3항 전단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을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까지의”를 “지방소방령까지의”로, “4급까지의”를 “5급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94만7천원”을 “720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62만4천원”을 “790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77만2천원”을 “702만1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789만4천원”을 “818만4천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액”을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항에서”로,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를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25,304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1,69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6,43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8,132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1,008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1,691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8,132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1,008천원으로 한다.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급(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급(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급(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급(상당) 공무원	75,165	33,39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9,972천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지방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자치경무관·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자치총경·지방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자치경정·지방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0,31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010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37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864	57,007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862	43,118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274	33,390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0,310
가급(2급 상당)		73,010
가급(3급 상당)		66,375
가급(4급 상당)	84,864	57,007
나급(5급 상당)	75,862	43,11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2조 단서,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별표 12, 별표 13 및 부칙 제5조)

1)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등급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제10조제2항제3호 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15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되는”을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별표 8 제4호의 을종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가목1) 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표 14의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5,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5항)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제10호 및 별표 9)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별표 8 및 별표 9)

1)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과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재난·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8·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별표 14)

8·9급(상당) 공무원, 2호봉 이하 지도사,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형 환

◉대통령령 제27767호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 석유광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및 안전광주(安全鑛柱)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측정, 통기시설의 설치·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공기압축기·가스집합용접장치·기중기·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인차(人車)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운반·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6.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1. 완성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규정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 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에 관한 사항
4.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운반에 관한 사항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 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 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 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연소하거나 화재·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유정(油井)이 폭발하였을 때
3.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5. 갱도·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의 발생
2.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제3장 보칙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와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쇄시설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1호	100	150	200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2호	10	30	50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3호	30	70	100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4호	10	30	50
마.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5호	10	30	50
바.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6호	30	70	100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광산안전도를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7호	100	150	200
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8호	50	100	200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갱내가스·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탐사·선광·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 인 용

◉대통령령 제2776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으로, “종류와 규모”를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11월 30일까지”를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매년 1월 31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매년 3월 31일”을 “해당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제43조의11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제5장의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로 하고,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4(종전의 제43조의12)제1항 중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참여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3조의15(종전의 제4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를 “훈련평가”로, “실시일”을 “종료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재난대비훈련의 평가”를 “훈련평가”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4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군·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사업시행계획과 시·군·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제2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긴급구조교육)”을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제6장제2절에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6조의5(종전의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6조의2제2항”을 각각 “제6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제7장제1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복구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
3.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이하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의 목적
2. 지도·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응”을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심리회복”으로 한다.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심리회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제2항 본문 중 “최저적립액”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을 "(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5항"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 제31호 및 제5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70호, 제71호, 제79호, 제80호 및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9호를 제10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99호부터 제10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2호(종전의 제99호) 중 “제1호부터 제8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로 한다.

1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별표 1의3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별표 1의3의 법무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교정시설”을 “법무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자치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정부주요시설”을 “정부중요시설”로 하며, 같은 표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3호 중 “가동중단을 포함한다”를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 1. 7. 공포, 2017. 1. 8.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제43조의12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재난 대응 지시 등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의1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훈련 기획에 관한 사항 및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및 운영(제61조의2 신설)

1)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제66조의2 신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에 관한 자료와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마.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제68조의2 신설)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추가함.

사.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 등(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정함.

2)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보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재산상 손해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안내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을 “제17조제1항”으로,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을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를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연구관으로서”를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로, “연구관으로”를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로, “연구실적”을 “업무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관의”를 “국가정보원 전문관의”로,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3200원”을 “6만5500원”으로, “6만5100원”을 “6만7300원”으로 한다.

제33조 단서 중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을 “승진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총경”을 “경정”으로, “소방정”을 “소방령”으로,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77만2천원”을 “702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89만4천원”을 “818만4천원”으로 한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720만2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790만3천원

제3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제38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되어”를 “강임되어”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5등급”을 “4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하한액으로 한다”를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을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5등급”을 “4등급”으로, “6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금액”을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을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으로, “연봉으로”를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을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8등급”을 “6등급”으로, “금액”을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6등급 외무공무원이 5등급”을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으로 한다.

제57조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59조제1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5등급”을 “4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제66조제2항 중 “762만4천원”을 “790만3천원”으로, “419만원”을 “434만3천원”으로, “762만4천원”을 “790만3천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를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각각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별표 29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연구관란을 국가정보원 전문관란으로 한다.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0의2, 별표 31부터 별표 33까지,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4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342,6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2,437,3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2,535,5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2,637,6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2,742,4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2,849,4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2,958,0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3,067,9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3,178,2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3,289,3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3,392,9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3,493,0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3,588,0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3,676,7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3,760,3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3,839,1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3,913,1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391,800	3,983,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460,800	4,049,0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525,300	4,110,7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585,600	4,168,8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642,200	4,223,4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695,300	4,274,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905,400	5,364,200	4,745,200	4,323,0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5,950,600	5,407,400	4,791,100	4,368,6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5,448,400	4,829,800	4,411,4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5,486,600	4,865,600	4,446,9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899,800	4,481,1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512,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543,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640,7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342,600	1,734,200	1,395,800
2	2,453,800	1,828,200	1,466,800
3	2,565,100	1,923,600	1,538,800
4	2,677,500	2,019,900	1,611,400
5	2,792,000	2,115,300	1,688,200
6	2,903,800	2,212,700	1,767,800
7	3,012,000	2,311,600	1,846,700
8	3,121,600	2,407,600	1,922,500
9	3,232,300	2,491,700	1,996,500
10	3,344,800	2,574,300	2,069,100
11	3,445,100	2,655,700	2,135,500
12	3,542,500	2,728,300	2,194,200
13	3,629,400	2,801,600	2,256,400
14	3,719,100	2,865,500	2,319,500
15	3,812,700	2,929,300	2,380,100
16	3,883,900	2,995,500	2,438,000
17	3,954,400	3,062,000	2,489,200
18	4,017,200	3,121,500	2,541,600
19	4,083,300	3,177,100	2,595,000
20	4,145,200	3,236,200	2,649,300
21	4,211,300	3,296,300	2,700,500
22	4,274,500	3,349,000	2,753,000
23	4,340,800	3,403,900	2,801,200
24	4,409,000	3,461,500	2,852,700
25	4,475,500	3,514,300	2,899,500
26	4,547,100	3,567,300	2,950,100
27	4,616,300	3,622,700	2,998,700
28	4,683,900	3,678,500	3,042,000
29	4,754,500	3,730,400	3,084,500
30	4,820,800	3,782,100	3,124,600
31	4,889,000	3,833,400	3,161,800
32	4,959,100	3,884,400	3,197,300
33	5,028,600	3,936,600	3,230,800
34	5,097,800	3,986,400	3,264,000
35	5,166,500	4,037,800	3,299,000
36	5,235,300	4,085,500	3,333,500
37	5,304,900	4,132,900	3,367,800
38	5,374,400	4,180,400	3,402,100
39	5,442,600		
40	5,486,6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967,200	3,691,000	3,370,800	2,927,000	2,528,400	2,077,200	1,850,000	1,634,500	1,452,700
2	4,099,200	3,816,800	3,484,000	3,034,100	2,623,100	2,167,000	1,929,100	1,709,600	1,523,300
3	4,234,600	3,944,200	3,600,500	3,142,900	2,721,300	2,259,900	2,012,900	1,788,800	1,598,000
4	4,373,000	4,072,900	3,717,900	3,254,200	2,823,400	2,354,700	2,100,900	1,869,600	1,677,200
5	4,514,700	4,203,200	3,837,200	3,367,100	2,928,200	2,452,200	2,192,000	1,953,700	1,757,100
6	4,658,200	4,333,900	3,957,600	3,481,000	3,035,200	2,552,500	2,285,400	2,039,800	1,838,800
7	4,803,800	4,466,200	4,079,500	3,596,000	3,143,800	2,653,100	2,379,500	2,126,300	1,917,000
8	4,950,700	4,598,400	4,201,700	3,711,600	3,253,700	2,754,000	2,474,000	2,209,200	1,992,400
9	5,099,500	4,731,400	4,325,000	3,827,500	3,364,000	2,855,200	2,563,900	2,288,500	2,064,700
10	5,249,300	4,864,500	4,448,100	3,943,300	3,475,100	2,950,100	2,649,900	2,363,300	2,134,000
11	5,398,800	4,998,100	4,571,400	4,060,100	3,578,700	3,040,100	2,730,900	2,435,900	2,200,400
12	5,553,200	5,136,200	4,699,300	4,170,000	3,678,800	3,128,700	2,810,400	2,506,800	2,266,100
13	5,708,600	5,275,300	4,818,200	4,272,900	3,773,800	3,212,100	2,886,000	2,575,000	2,329,300
14	5,864,400	5,401,000	4,928,400	4,368,900	3,862,500	3,290,900	2,958,300	2,640,000	2,390,500
15	6,000,500	5,517,100	5,030,000	4,459,200	3,946,100	3,366,600	3,027,200	2,702,500	2,449,100
16	6,121,300	5,623,500	5,124,900	4,544,400	4,024,900	3,437,400	3,092,600	2,762,800	2,505,800
17	6,228,500	5,721,500	5,213,000	4,623,600	4,098,900	3,505,100	3,155,300	2,819,200	2,561,300
18	6,324,000	5,810,800	5,294,900	4,697,500	4,168,900	3,569,100	3,215,200	2,874,000	2,612,900
19	6,409,500	5,893,500	5,370,700	4,766,500	4,234,800	3,629,700	3,271,500	2,926,400	2,663,600
20	6,486,100	5,969,000	5,441,600	4,831,000	4,296,500	3,686,800	3,325,300	2,976,400	2,711,900
21	6,556,700	6,037,800	5,507,200	4,891,300	4,354,600	3,741,800	3,376,600	3,024,200	2,757,500
22	6,619,600	6,101,100	5,568,000	4,947,900	4,409,200	3,793,400	3,425,100	3,070,200	2,801,400
23	6,672,700	6,159,000	5,624,200	5,001,000	4,460,700	3,841,900	3,471,800	3,113,800	2,843,000
24		6,206,300	5,676,500	5,050,900	4,508,800	3,888,100	3,516,400	3,155,900	2,883,200
25		6,251,500	5,719,700	5,096,800	4,554,400	3,932,100	3,558,400	3,195,800	2,921,300
26			5,760,700	5,135,500	4,597,200	3,973,500	3,598,700	3,234,700	2,955,800
27			5,798,900	5,171,300	4,632,700	4,013,000	3,632,900	3,266,900	2,985,600
28				5,205,500	4,666,900	4,046,000	3,664,700	3,298,100	3,014,300
29					4,698,300	4,077,000	3,695,500	3,327,500	3,042,000
30					4,728,800	4,107,600	3,724,800	3,356,100	3,068,800
31						4,135,800	3,752,400	3,383,800	3,095,200
32						4,162,5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342,600	1,734,200
2	2,457,400	1,843,500
3	2,572,100	1,952,400
4	2,686,800	2,061,700
5	2,801,200	2,171,000
6	2,966,800	2,277,700
7	3,131,700	2,384,600
8	3,296,500	2,491,600
9	3,460,600	2,597,700
10	3,624,700	2,704,000
11	3,770,600	2,783,900
12	3,916,500	2,864,000
13	4,060,500	2,944,500
14	4,205,800	3,024,700
15	4,349,400	3,104,500
16	4,489,500	3,168,400
17	4,628,800	3,231,500
18	4,768,500	3,295,500
19	4,906,900	3,358,500
20	5,045,400	3,422,000
21	5,160,800	3,483,200
22	5,275,500	3,545,000
23	5,390,500	3,606,500
24	5,505,000	3,667,700
25	5,619,700	3,728,700
26	5,715,600	3,771,000
27	5,812,700	3,813,200
28	5,908,800	3,855,500
29	6,004,600	3,896,600
30	6,100,800	3,938,800
31	6,175,100	3,980,700
32	6,249,700	4,017,400
33		4,054,300
34		4,090,600
35		4,126,900
36		4,160,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342,600	1,546,200
2	2,455,900	1,658,300
3	2,568,800	1,770,100
4	2,682,500	1,882,100
5	2,794,000	1,994,200
6	2,942,800	2,091,200
7	3,091,400	2,188,800
8	3,240,600	2,285,600
9	3,388,800	2,382,600
10	3,536,300	2,479,100
11	3,669,700	2,562,400
12	3,802,100	2,645,500
13	3,934,900	2,727,800
14	4,066,800	2,809,900
15	4,197,700	2,891,000
16	4,313,300	2,964,300
17	4,430,600	3,037,300
18	4,547,000	3,109,600
19	4,662,200	3,181,700
20	4,777,200	3,254,200
21	4,879,600	3,321,200
22	4,982,500	3,388,800
23	5,084,800	3,455,600
24	5,187,100	3,522,500
25	5,289,500	3,588,800
26	5,378,900	3,639,000
27	5,467,900	3,689,700
28	5,557,300	3,740,400
29	5,645,900	3,791,300
30	5,735,800	3,840,900
31	5,796,200	3,884,400
32	5,857,000	3,922,500
33		3,960,600
34		3,998,400
35		4,036,300
36		4,071,5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우정1급·기능1급	우정2급·기능2급	우정3급·기능3급	우정4급·기능4급	우정5급·기능5급	우정6급·기능6급	우정7급·기능7급	우정8급·기능8급	우정9급·기능9급
1	2,777,400	2,585,800	2,409,100	2,239,900	2,079,0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2,882,600	2,687,200	2,506,900	2,335,600	2,171,7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2,992,000	2,792,400	2,607,100	2,433,200	2,267,3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3,106,100	2,901,400	2,708,800	2,533,400	2,364,8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3,223,600	3,013,800	2,812,300	2,633,700	2,465,2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3,344,000	3,128,800	2,919,800	2,735,100	2,565,5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3,468,400	3,245,700	3,027,900	2,836,000	2,666,4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3,593,700	3,364,600	3,138,700	2,937,800	2,767,3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3,720,000	3,483,900	3,249,600	3,039,900	2,869,1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3,846,700	3,604,000	3,360,700	3,142,400	2,971,2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3,974,300	3,723,800	3,471,800	3,245,600	3,066,8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4,095,300	3,831,500	3,573,000	3,344,500	3,159,4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4,208,400	3,932,100	3,666,600	3,437,000	3,247,6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4,313,200	4,027,200	3,756,300	3,524,200	3,331,0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4,410,600	4,115,500	3,839,300	3,606,800	3,410,0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4,501,400	4,199,300	3,918,300	3,685,100	3,484,7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4,585,300	4,276,700	3,992,600	3,758,600	3,555,5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4,663,100	4,349,700	4,063,000	3,827,900	3,622,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4,735,300	4,417,800	4,128,900	3,893,100	3,684,8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4,802,600	4,482,000	4,191,100	3,955,100	3,744,9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4,865,500	4,541,300	4,249,600	4,013,100	3,801,3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4,923,000	4,597,700	4,304,700	4,067,800	3,853,9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4,970,900	4,650,200	4,356,900	4,119,000	3,903,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015,500	4,694,300	4,405,400	4,167,900	3,951,5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4,735,500	4,446,400	4,213,400	3,996,8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4,485,200	4,251,200	4,038,6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4,522,200	4,287,200	4,074,1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321,900	4,108,2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353,800	4,139,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170,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3,765,700	3,390,100	3,058,500	2,746,200	2,469,400	2,133,200	1,906,000	1,766,600	1,604,200	1,486,9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853,300	2,564,100	2,224,900	1,995,800	1,845,700	1,679,300	1,557,5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962,100	2,662,300	2,318,500	2,086,800	1,929,500	1,758,500	1,632,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3,073,400	2,764,400	2,414,800	2,180,300	2,017,500	1,839,300	1,711,4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186,300	2,869,200	2,512,500	2,276,000	2,108,600	1,923,400	1,791,3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300,200	2,976,200	2,612,900	2,372,900	2,202,000	2,009,500	1,873,0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415,200	3,084,800	2,715,200	2,470,500	2,296,100	2,096,000	1,951,2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530,800	3,194,700	2,818,600	2,568,300	2,390,600	2,178,900	2,026,6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646,700	3,305,000	2,922,800	2,666,500	2,480,500	2,258,200	2,098,9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762,500	3,416,100	3,020,200	2,759,200	2,566,500	2,333,000	2,168,3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879,300	3,519,700	3,112,400	2,846,400	2,647,500	2,405,600	2,234,6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989,200	3,619,800	3,202,200	2,932,000	2,727,000	2,476,500	2,300,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4,092,100	3,714,800	3,287,100	3,013,500	2,802,600	2,544,700	2,363,5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188,100	3,803,500	3,368,100	3,090,200	2,874,900	2,609,700	2,424,7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278,400	3,887,100	3,444,200	3,163,900	2,943,800	2,672,200	2,483,3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363,600	3,965,900	3,517,200	3,232,900	3,009,200	2,732,500	2,540,0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442,800	4,039,900	3,585,000	3,299,100	3,071,900	2,788,900	2,595,5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516,700	4,109,900	3,650,300	3,361,600	3,131,800	2,843,700	2,647,1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585,700	4,175,800	3,711,500	3,421,000	3,188,100	2,896,100	2,697,8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650,200	4,237,500	3,769,600	3,477,400	3,241,900	2,946,100	2,746,1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710,500	4,295,600	3,824,300	3,531,000	3,293,200	2,993,900	2,791,7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767,100	4,350,200	3,877,100	3,581,800	3,341,700	3,039,900	2,835,6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820,200	4,401,700	3,925,600	3,629,700	3,388,400	3,083,500	2,877,300
24		5,905,400	5,364,200	4,870,100	4,449,800	3,972,400	3,675,700	3,433,000	3,125,600	2,917,400
25		5,950,600	5,407,400	4,916,000	4,495,400	4,016,400	3,719,600	3,475,000	3,165,500	2,955,500
26			5,448,400	4,954,700	4,538,200	4,058,100	3,759,800	3,515,300	3,204,400	2,990,100
27			5,486,600	4,990,500	4,573,700	4,097,200	3,794,100	3,549,500	3,236,600	3,019,800
28				5,024,700	4,607,900	4,130,600	3,827,400	3,581,300	3,267,800	3,048,500
29					4,639,300	4,161,600	3,858,500	3,612,100	3,297,200	3,076,200
30					4,669,800	4,192,100	3,888,100	3,641,400	3,325,800	3,103,100
31						4,220,200	3,916,100	3,669,000	3,353,500	3,129,400
32						4,246,900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4,222,100	3,975,200	3,200,900	2,835,800	2,311,700	1,829,400	1,406,300	1,275,100	1,684,000	2,432,600	1,641,900	1,306,900	1,105,100
2	4,330,000	4,082,200	3,313,300	2,948,200	2,421,900	1,933,000	1,493,400	1,357,900	1,770,600	2,513,600	1,719,900	1,380,200	1,148,100
3	4,437,900	4,189,200	3,425,700	3,060,600	2,532,100	2,036,600	1,580,500	1,440,700	1,857,200	2,594,600	1,797,900	1,453,500	1,191,100
4	4,545,800	4,296,200	3,538,100	3,173,000	2,642,300	2,140,200	1,667,600		1,943,800	2,675,600	1,875,900	1,526,800	1,234,100
5	4,653,700	4,403,200	3,650,500	3,285,400	2,752,500	2,243,800	1,754,700		2,030,400	2,756,600	1,953,900	1,600,100	1,277,100
6	4,761,600	4,510,200	3,762,900	3,397,800	2,862,700	2,347,400	1,841,800		2,117,000	2,837,600	2,031,900	1,673,400	1,320,100
7	4,869,500	4,617,200	3,875,300	3,510,200	2,972,900	2,451,000	1,928,900		2,203,600	2,918,600	2,109,900	1,746,700	1,363,100
8	4,977,400	4,724,200	3,987,700	3,622,600	3,083,100	2,554,600			2,290,200	2,999,600	2,187,900	1,820,000	1,406,100
9	5,085,300	4,831,200	4,100,100	3,735,000	3,193,300	2,658,200			2,376,800	3,080,600	2,265,900	1,893,300	1,449,100
10	5,193,200	4,938,200	4,212,500	3,847,400	3,303,500	2,761,800			2,463,400	3,161,600	2,343,900	1,966,600	1,492,100
11	5,301,100	5,045,200	4,324,900	3,959,800	3,413,700	2,865,400			2,550,000	3,242,600	2,421,900	2,039,900	
12	5,409,000	5,152,200	4,437,300	4,072,200	3,523,900	2,969,000			2,636,600	3,323,600	2,499,900	2,113,200	
13	5,516,900	5,259,200	4,549,700	4,184,600	3,634,100				2,723,200	3,404,600	2,577,900	2,186,500	
14			4,662,100	4,297,000	3,744,300				2,809,800	3,485,600	2,655,900	2,259,800	
15			4,774,500	4,409,400					2,896,400	3,566,600	2,733,900	2,333,100	
16									2,983,000		2,811,900	2,406,400	
17									3,069,600		2,889,900	2,479,700	
18									3,156,200		2,967,900	2,553,000	
19									3,242,800		3,045,900	2,626,300	
20									3,329,400			2,699,600	
21									3,416,000			2,772,900	
22									3,502,600			2,846,200	
23									3,589,200				
24									3,675,800				
25									3,762,400				
26									3,849,000				
27									3,935,600				

비고

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
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753,100
15	7,313,300
14	6,875,600
13	6,482,900
12	6,151,600
11	5,991,800
10	5,803,800
9	5,489,700
8	5,115,600
7	4,792,800
6	4,490,100
5	4,197,800
4	3,903,600
3	3,619,300
2	3,335,600
1	2,960,400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80,3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25,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97,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제2호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19,799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304
국무총리	170,399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8,916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1,691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급(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급(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급(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급(상당) 공무원	69,972	33,39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92,767	46,198
전문관 공무원	69,972	33,397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치안감·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경무관·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총경·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경정·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5,542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0,31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3,010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37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7,007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5,862	43,118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274	33,39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740	26,748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7,569	21,789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9,269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56,338
나	70,041	46,670
다	57,243	40,657
라	50,220	35,823
마	44,21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07,972	71,972
12등급	107,972	69,478
11등급	99,788	66,491
10등급	95,821	64,364
9등급	92,767	62,317
8등급	85,196	57,232
7등급	82,498	55,420
6등급	81,968	46,198
5등급	69,972	33,397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7,202	3,560	4,343	4,304	5,290	6,328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98,339	63,297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88,615 ~ 63,297	107,604 ~ 63,297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10,800	4,800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3,900	2,400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제3항, 제53조,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별표 31,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 및 별표 40)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제39조제3항 및 제58조제1항)

1)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과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보수제도 개선(별표 33 제7호가목)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상한액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2777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공무상질병”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제11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5조제2항 중 "10호까지 해당자"를 "9호까지 해당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표 제3호라목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제1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2. 재외공무원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유치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재외근무지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의 을종란 바목 중 “임검”을 “검색”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별표 10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별표 10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해군(UDT, SSU)”을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으로 한다.

다. 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별표 10의2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3조 단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7)나) 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을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을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월 20,000원

별표 11 제3호가목2)나)(3) 중 “3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
	5급 이상	473,800원	156,700원
	6급	341,100원	124,200원
	7급	242,600원	98,000원
	8급	194,000원	92,100원
	9급	154,500원	87,100원

별표 11 제3호바목3)가)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11)다) 중 “항공구조사”를 “항공구조사 및 응급구조사”로 하며, 같은 목 1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8)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월 360,000원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를 “직무의”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급방법

(1)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1 제3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td>아.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td><td>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td><td>가) 지 급 액: 월 20만원
나)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td></tr>
<tr><td>자. 전문직무급</td><td>「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td><td>(지급액)
<table><tr><th rowspan="2">근무기간</th><th colspan="2">월 지급액</th></tr><tr><th>수석전문관</th><th>전문관</th></tr><tr><td>1년 미만</td><td>710,000원</td><td>500,000원</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735,000원</td><td>530,000원</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800,000원</td><td>600,000원</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925,000원</td><td>710,000원</td></tr><tr><td>4년 이상</td><td>1,080,000원</td><td>870,000원</td></tr></table>(비고)
1.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td></tr>
</table>

별표 13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4급상당 이상”을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으로 한다.

별표 15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의 월지급액란 중 “105,000원”을 “12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기능10급(상당)의 월지급액란 중 “95,000원”을 “115,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제16호·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 및 전문관
경호공무원	1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기능직군무원	전체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며, 공직 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1조의3 및 별표 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종전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 및 별표 11)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등의 확대(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에 근무하는 군인 등에게 야외 출동 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잠수병을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 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인상함.

라.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의 확대 및 전문직무급의 신설(별표 11)

특정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전문직무급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령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 행정기관의 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		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국민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297㎜[보존용지 70g/㎡]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 연락처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국민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 심사자	심사 부서		심사자 직위・성명	
채택 여부	〔 〕채 택 〔 〕불 채 택			

(제2쪽)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성명	
	실시일			
	실시 내용 (보완・개선 여부 포함)			
	실시 성과 측정	측정기간	측정내용	
		~		
		~		
		~		
	제안자 시 상	포상 내용(일시)		
		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	불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결과	〔 〕채 택 〔 〕불 채 택	

210㎜×297㎜[보존용지 7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기간 및 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등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3호, 2017.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제안 접수증에 심사기준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령 제106호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297㎜[보존용지 70g/㎡]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중앙우수제안 선정	선정 통보 일시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제안 실시	제안 개요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성명	
	실시일 및 실시 내용			
	실시 효과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297㎜[보존용지 70g/㎡]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제안 일시				
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 심사자	심사 부서		심사자 직위・성명	
채택 여부	〔 〕채 택 〔 〕불 채 택			

(제2쪽)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성명	
	실시일			
	실시 내용 (보완·개선 여부 포함)			
	실시 성과 측정	측정기간	측정내용	
		~		
		~		
		~		
	제안자 시 상	포상 내용(일시)		
		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	불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결과	[ ] 채 택 [ ] 불 채 택	

210㎜×297㎜[보존용지 7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견과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기간 등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4호, 2017.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제안 접수증에 심사기준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법무부령 제88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각각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과징금 [ ] 납부기한 연장 [ ] 분 할 납 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과징금 부과내역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머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4. 생활용품”을 “5. 생활용품”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4. 생활용품)너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7호나목, 같은 표 제8호 및 같은 표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열시트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관리됨에 따라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용 안전유리 및 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으로서 부품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각각 관리됨에 따라 이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4호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석유광산보안규칙”을 “석유광산안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산보안법 및 동법시행령”을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을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으로, “보안을”을 “안전을”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시설계획과 성능검사”를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나. 공사설계설명서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중 “영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종전의 제5조) 중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명령”을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의”로,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장제4절의 제목 “석유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석유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유전안전계원
   나. 기계안전계원
   다. 전기안전계원
   라.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마. 환경안전계원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관리자 및 보안감독자”를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계원”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0조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을 “전기기능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환경보안계원”을 “환경안전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안관리자 1인”을 “안전관리자 1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보안계원”을 “전기안전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보안계원”을 “환경안전계원”으로 한다.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발파안전계원

제22조제3항 본문 중 “보안계원직”을 “안전계원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전보안계원 1인”을 “유전안전계원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보안감독자 및 보안감독계원의 선임)”을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석유광산보안상”을 “석유광산안전상”으로, “보안감독자 및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보안관리직원”을 “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관리직원”을 “안전관리직원”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의”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보안관리직원”을 “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보안관리직원”을 “해당 안전관리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를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유전보안”을 “유전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안시설”을 “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보안”을 “안전”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를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유전보안”을 “유전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보안에”를 “안전에”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전기보안계원”을 “전기안전계원”으로, “보안”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약보안계원”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운반ㆍ취급”을 “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보안계원”을 “환경안전계원”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보안감독자”를 “안전감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감독자는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를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계원”으로, “보안을”을 “안전을”로, “보안감독자”를 “안전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보안감독자”를 “안전감독자”로,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안”을 “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을 각각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보안관리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안상황ㆍ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안”을 “안전”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보안계원”을 “전기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안”을 “안전”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약보안계원”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유지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제3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안계원”을 “환경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보안감독자”을 “안전감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감독자”를 “안전감독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감독계원”을 “안전감독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감독계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로, “제3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장제5절의 제목 “광산보안도”를 “광산안전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도”를 “광산안전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이하 “광산보안도”라 한다)”를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사무소장이 보안상”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도”를 “광산안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광산보안도를 2부”를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광산보안도”를 각각 “광산안전도”로 한다.

제41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46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55조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65조제8호 단서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단서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74조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75조 중 “보안조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에 규정된 것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를 “안전조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76조 중 “발파보안계원 또는 화약보안계원”을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0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안”을 각각 “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제1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안”을 각각 “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제1호 중 “보안”을 각각 “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보안상”을 각각 “안전상”으로 한다.

제94조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보안시설”을 “안전시설”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중 “보안용”을 “안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제2항 및 제111조 중 “보안상”을 각각 “안전상”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조치사항”을 “안전조치사항”으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보안계원”을 “전기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보안시설”을 “안전시설”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보안시설)”을 “(안전시설)”로 한다.

제127조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37조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보안시설 등)”을 “(안전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2호서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산보안도”를 “광산안전도”로 한다.

제147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49조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계원”을 각각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57조 중 “유전보안계원”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60조 중 “보안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를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62조제2항 중 “보안계원”을 각각 “안전계원”으로, “보안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63조제2항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68조 중 “전기보안계원”을 “전기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4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보안상”을 “안전상”으로 한다.

제181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계보안계원”을 “기계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보계원”을 “안전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195조제4항 단서 중 “광산보안상”을 “광산안전상”으로 한다.

제198조 중 “보안계원”을 “안전계원”으로 한다.

제208조 다음에 제10장(제209조 및 제21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칙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0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계획 [ ] 승인신청서 [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시설의 종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 ]승인신청 [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계획서 및 계획도 각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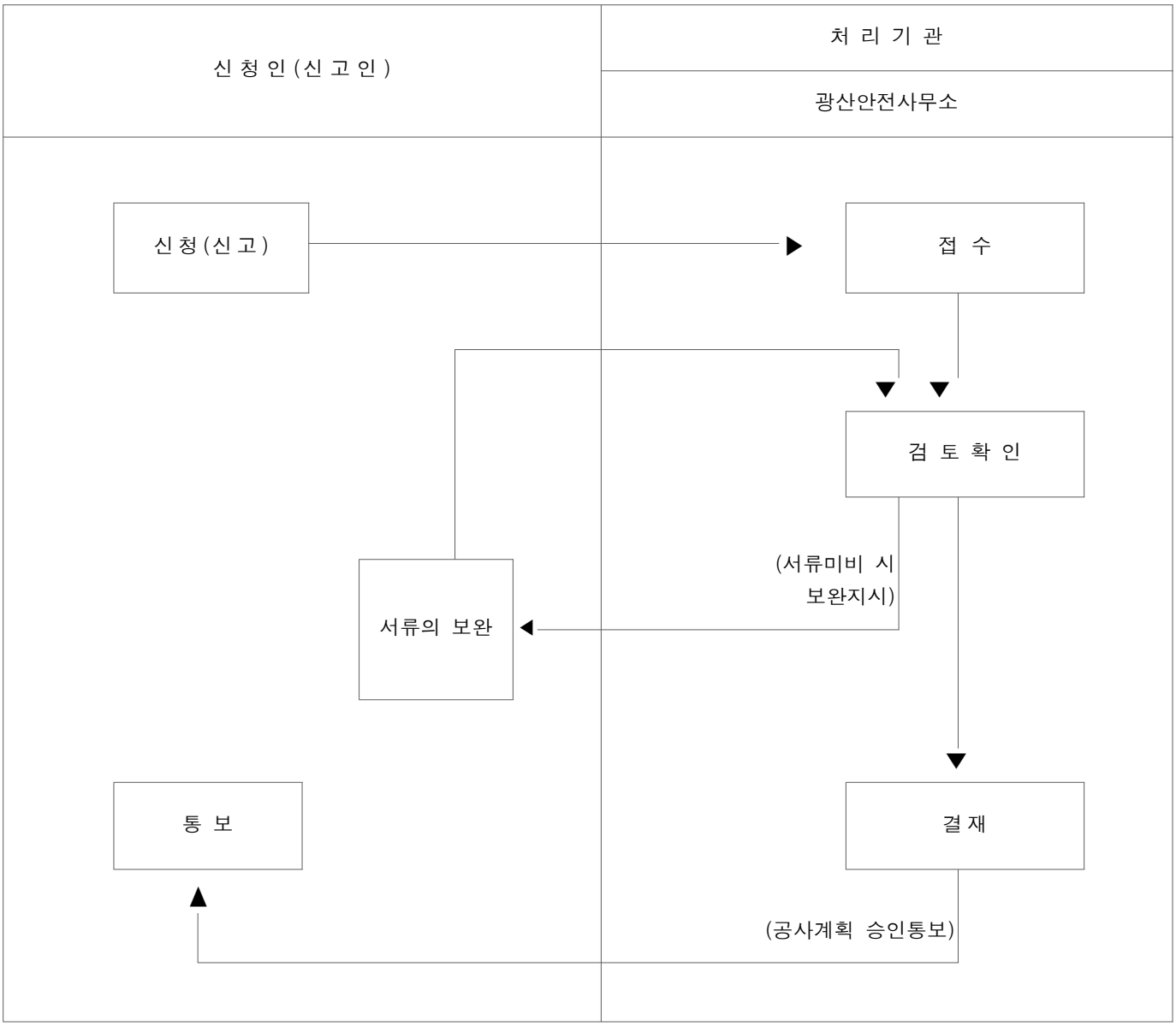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신청내용	시설의 종류	시설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설치승인(신고수리)번호	검사증번호
	폐지기간	. . .부터 ~ . . . 까지 ( )일간
	재활용 예정일	
	재활용 이유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평면도 및 단면도로 작성된 계획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조사	➔	결 재	➔	공사계획승인 결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설치공사 [ ] 변경공사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시설의 종류		
시설능력·규모·대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일자	
공사완료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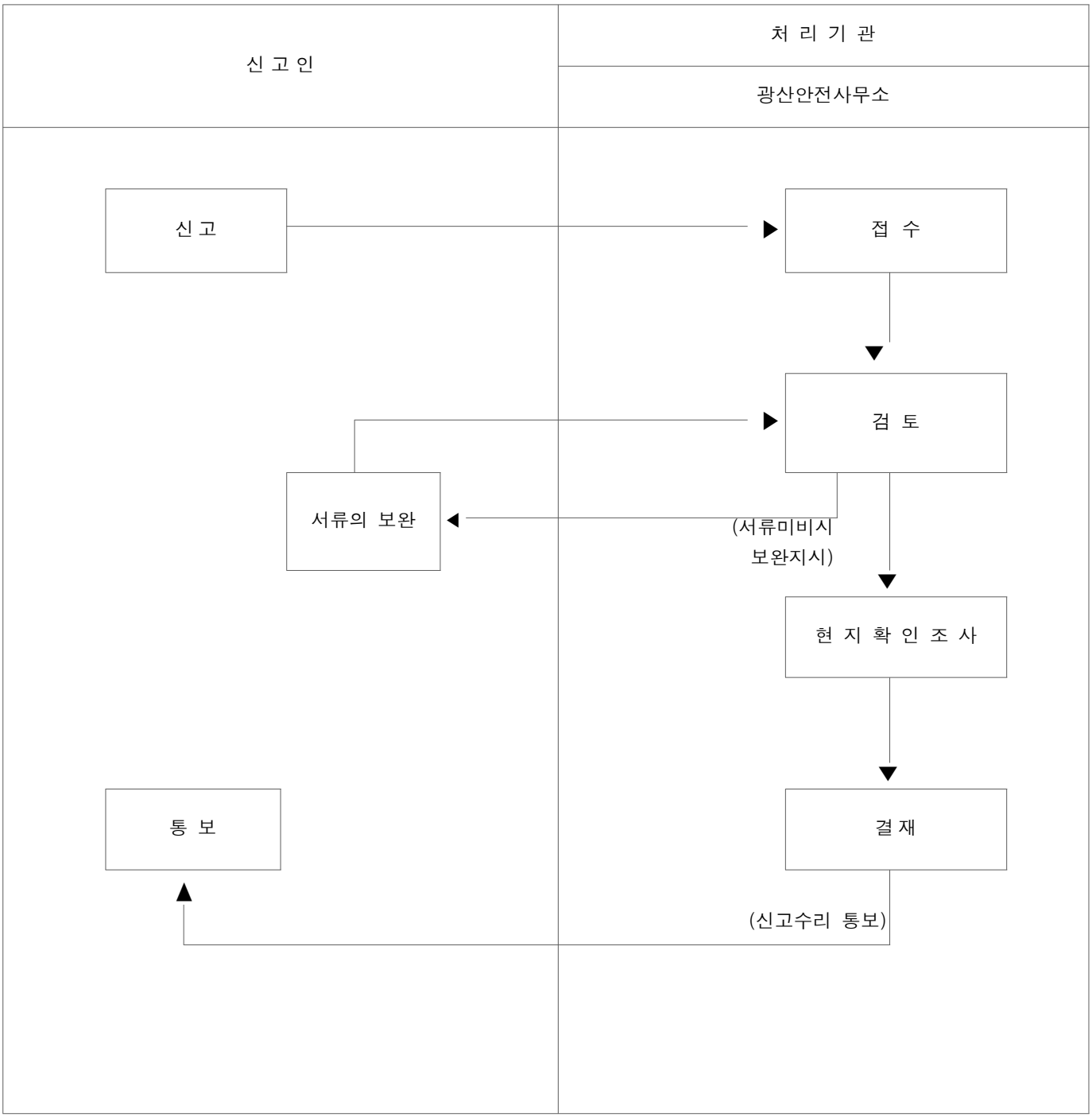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폐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신고내용	시설의 종류	시설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설치승인번호
	검사증번호	폐지 연월일
	폐지 이유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폐지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완성검사 [ ] 성능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신청내용	시설의 종류	시설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 년 월 일
	설치완료 연월일	전회 검사증번호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수검희망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 ]완성검사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물자원공사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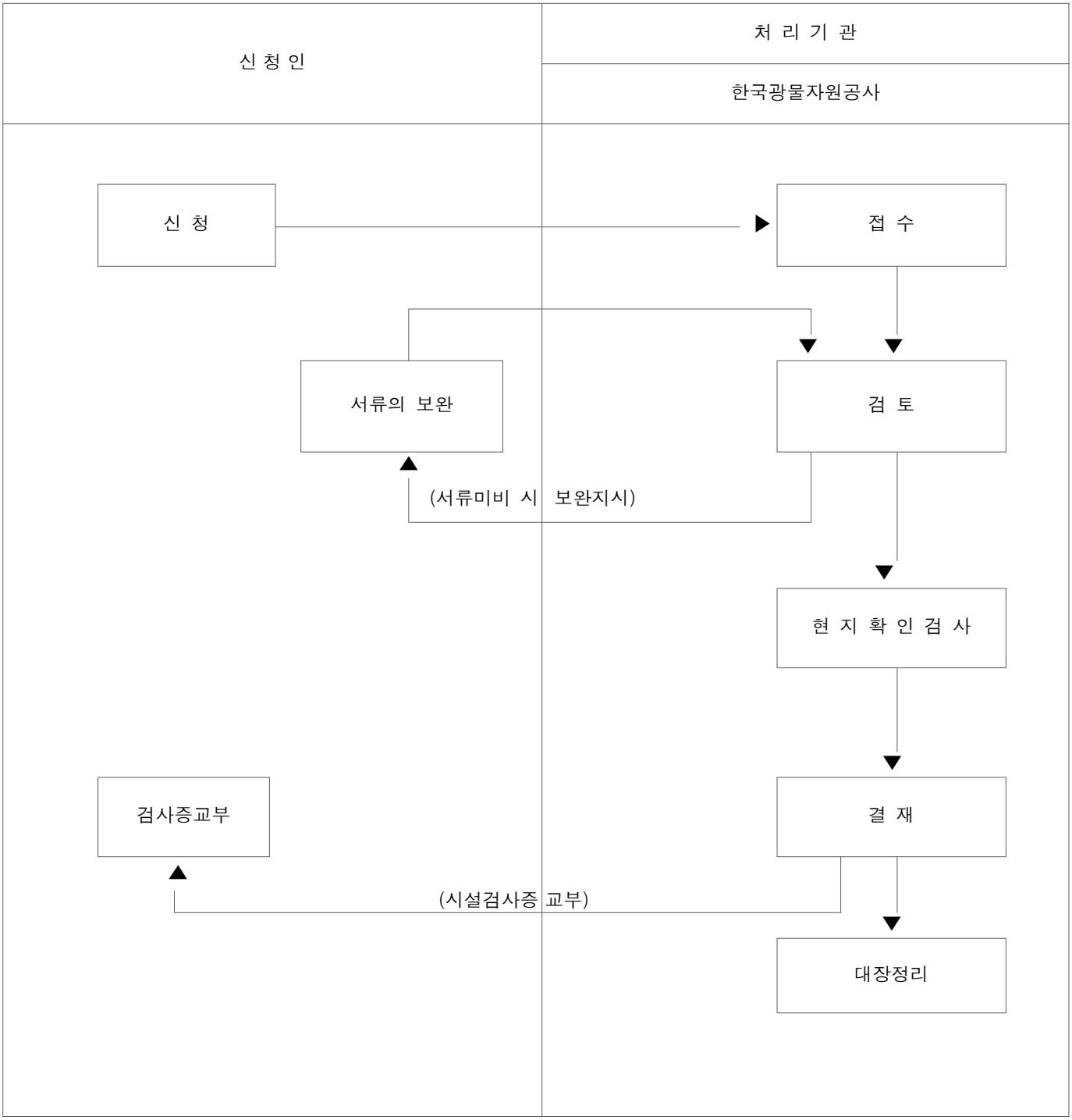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시설 검사증

1. 광 상 명:

2. 광 종:

3. 광업권자:
(조광권자)

4. 시설의 종류:

5. 시설능력 또는 규모:

6. 설치장소:

7. 유효기간:

8. 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설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유생산작업재개 [ ]광업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광산명	전화번호
	광종명	등록번호
	소재지	

작업정지구역 (사용정지 시설명)	
작업 (시설사용) 중지 연 월 일	
작업 (시설사용) 재개 연 월 일	
시정조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업(시설사용) 재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사용)설명서 1부 2. 작업(사용)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조사	➔	결 재	➔	재개 승인 통 보
신청인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

210㎜×297㎜(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고서

광산명: 년 월

종별 / 원인별	이재사항					손비사항(천원)					손실일수	비고 (재해장소 및 연월일)
	횟수	사망(명)	중상(명)	경상(명)	합계(명)	보상비	인건비	기자재비	자원손비	합계		
1. 유정폭발												
2. 질식 및 중독												
3. 화 재												
4. 풍수해 및 풍랑												
5. 권양시설												
6. 체인 및 로프절단												
7. 기계 및 시설물												
8. 전 기												
9. 고압가스												
10. 공 구												
11. 보급선 및 그 밖의 선박												
12. 경비행기												
13. 기중기 및 부대시설												
14. 낙하물 및 도괴물												
15. 추락 및 전도												
16. 기자재 취급 중												
17. 파이프 등 파열												
18. 충돌 및 지진												
19. 그 밖의 원인												

종별 / 구분	월 말 광산조업원수			가동 연인원			가동 연시간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플랫폼 내										
2. 플랫폼 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조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광산안전관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위 사람을 광산안전관에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0㎜×60㎜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직원 [ ] 선 임 / [ ] 해 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광산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광종명
	소재지		
안전관리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선임자 또는 해임자	성명		자격증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선임 또는 해임 연월일	년 월 일	직위
직무 범위	직무의 종류		
	담당구역		
	직접감독자 성명		직위
안전관리직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개월)
	년 월 일까지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직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재	➔	대장정리	➔	국가기술자격수첩 등재 및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안전관리 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대리자	성명	자격증 번호
	주소	
	선임 연 월 일	
	안전관리직 경력	. . .부터 . . .까지 (년 월)
전임 안전관리직원	직 위	성 명
대리의 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 제5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대장 정리	➔	선 임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계획서

(앞 쪽)

제출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광산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광종명
	소재지	
광해방지사업 시행자	시행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복구 대상		
복구 방법		
복구 기간		
복구비 예치금액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1부 2. 광해방지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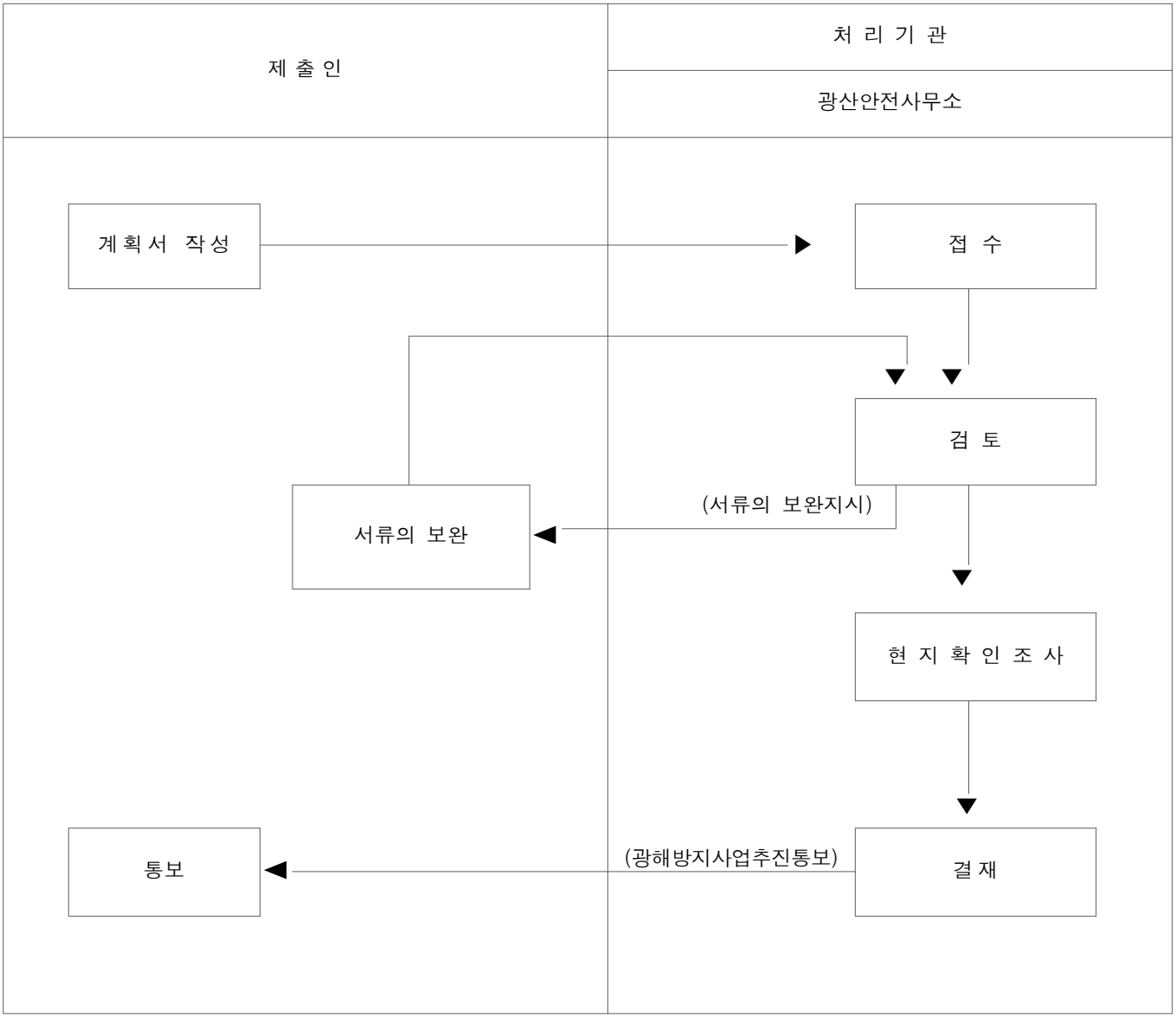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완료보고서

제출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광산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광종명
	소재지	
광해방지사업 시행자	시행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복구 대상		
복구 방법		
복구완료일		
소요사업비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1부 2. 광해방지완료 도면 1부 3. 총 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 고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조사	➔	결 재	➔	대장등재	➔	광해방지사업 완료 또는 보완 통보

제출인 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임
광업 대리인 [ ]변경 신고서
[ ]대리권소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 업 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명
광업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광업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임·변경·대리권소멸 연 월 일		
대리인에 대한 위임사항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 대리인의 [ ]선임 [ ]변경 [ ]대리권소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업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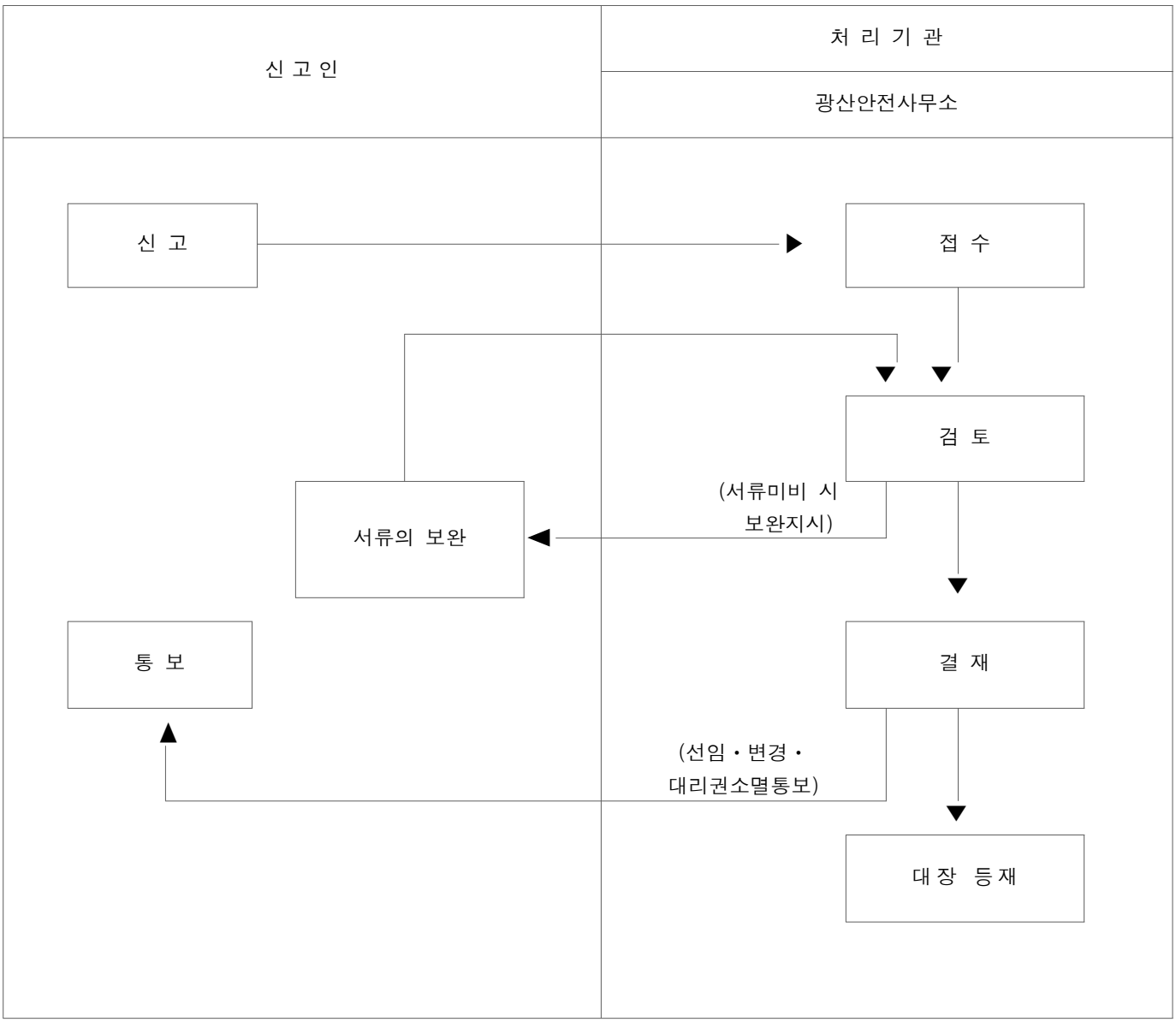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및 「광산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공포,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등을 정하는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격증 취득 전후의 실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선임자격을 완화하고,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화약안전계원과 발파안전계원을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모·안전등 및 자기구명기(自己救命器) 등 개인장비
2.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산가스측정기·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채굴방법·채굴기간·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종류·주향(走向)·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의 위치·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제2절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4절 화약류의 사용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제5절 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절 안전관리직원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受拂)에 관한 사항

5. 화약·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폭발·화재·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기구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기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 화약·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수불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의견 또는 보고·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절 작업재개 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제8절 보고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3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운반갱도·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3.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4.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5.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

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10조제1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교육대상자 분류</th><th colspan="4">교육과정</th></tr>
<tr><th>대분류</th><th>소분류</th><th>교육명칭</th><th>대상자</th><th>교육
시간</th><th>교육
주기</th></tr>
<tr><td>광업
권자</td><td>-</td><td rowspan="2">광업경영자 교육</td><td rowspan="2">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td><td rowspan="2">8시간</td><td rowspan="11">1회/1년</td></tr>
<tr><td>조광
권자</td><td>-</td></tr>
<tr><td rowspan="9">광산
안전
관리
직원</td><td>안전
관리자</td><td rowspan="3">안전관리자 교육</td><td rowspan="3">안전관리자</td><td rowspan="3">8시간</td></tr>
<tr><td>안전
감독자</td></tr>
<tr><td>안전
감독계원</td></tr>
<tr><td rowspan="6">안전계원</td><td rowspan="2">갱내, 화약·발파
안전계원 교육</td><td>갱내안전계원</td><td>8시간</td></tr>
<tr><td>화약·발파안전계원</td><td>8시간</td></tr>
<tr><td rowspan="2">기계·전기
안전계원 교육</td><td>기계안전계원</td><td rowspan="2">8시간</td></tr>
<tr><td>전기안전계원</td></tr>
<tr><td rowspan="2">갱외, 광해
안전계원 교육</td><td>갱외안전계원</td><td>8시간</td></tr>
<tr><td>광해안전계원</td><td>8시간</td></tr>
</table>

광산구호대원	-	광산구호대원 교육	광산구호대원	16시간	
광산 근로자	채굴·생산 관련 근로자	채굴, 생산 안전교육	갱내 근로자	8시간	1회/2년
			갱외 근로자		
			화약·발파 근로자		
			광해 담당 근로자		
	운반, 전기·기계 관련 근로자	운반, 전기·기계 안전교육	운반 근로자		
			전기·기계 근로자		

※ 둘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중복된 교육내용에 대해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별표 2]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

구 분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1. 굴착기계	가. 쇼벨(Shovel)류 굴착기계 나. 연속식 굴착기계 다. 가목 및 나목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2. 적재기계	가.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나. 연속식 적재기 다. 로더(Loader)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3. 운반기계자동차	가. 로드 홀 덤프(Load-Haul-Dump) 나. 갱내용 마인트럭(Mine Truck) 다. 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4. 지보기계	가. 록 볼터(Rock Bolter) 나. 케이블 볼터(Cable Bolter) 다. 쇼트크리트 기계(Shotcrete Machine)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5. 천공기계	가. 크롤러 드릴(Crawler Drill) 나. 점보드릴(Jumbo Drill) 다. 다운 홀 드릴(Down-The-Hole Drill) 라. 장공천공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6. 그 밖의 기계	가. 안포 장전기(ANFO-Charger) 나. 지게차(Fork Lift) 다. 부석제거기(Scaler) 라. 그레이더(Grader) 마. 기중기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별표 3]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안전관리직원
구분</th><th>선임기준</th><th>자격요건</th></tr>
<tr><td colspan="2">1. 안전관리자</td><td>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 광산
나.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채굴하는 광산</td><td rowspan="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colspan="2">2. 안전감독자</td><td>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상시 200명 이상의 광산 근로자를 고용하는 탄광
나.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채굴하는 광산</td></tr>
<tr><td colspan="2">3. 안전감독계원</td><td>상시 100명 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2">4. 안전계원</td><td>갱내안전계원</td><td>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td><td rowspan="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갱외안전계원</td><td>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나. 상시 300명 이상의 광산 근로자를 고용하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td></tr>
</table>

기계안전계원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광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안전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 라. 메탄가스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화약·발파안전계원	화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광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해안전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월 8천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나. 월 3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일반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다. 습식 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비고

1. 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표의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2.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명의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해야 하며, 300명을 초과하는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명마다 1명 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해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3. 안전감독계원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감독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4. 안전계원은 한 사람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안전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
6. 갱내안전계원 1명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하여야 한다.
7.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광산으로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갱내안전계원 또는 갱외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갱내안전계원과 갱외안전계원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담당해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발파안전계원을 겸할 수 있다.
10.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채굴예정구역
주요 공중 이용 시설물
지반안전성 조사기관
채굴의 방법
채굴기간
복구방법

안전관리자	직위	자격구분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지반안전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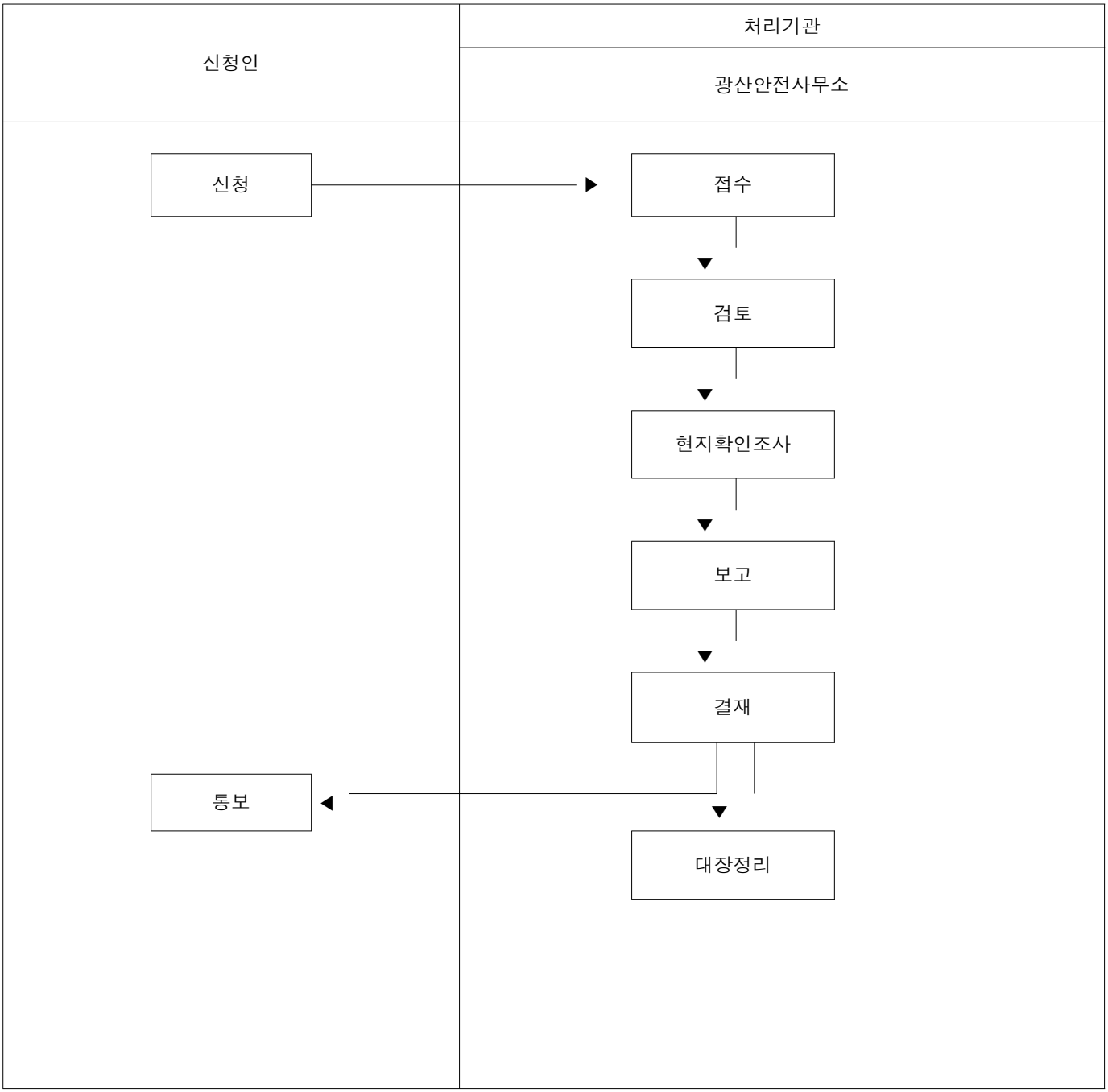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광산안전교육이수증

위 사람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 명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발행일자:

교 육 사 항			
소속	교육종류	기간	확인
			교육기관의 장 인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광산안전교육기록부

광산명	성명	생년월일	이수증번호	교육차수	교육종류	교육기간

210mm×297mm 백상지(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설치 [ ]변경 공사계획 [ ]승인신청서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시설의 종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승인신청의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신고의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나. 공사설계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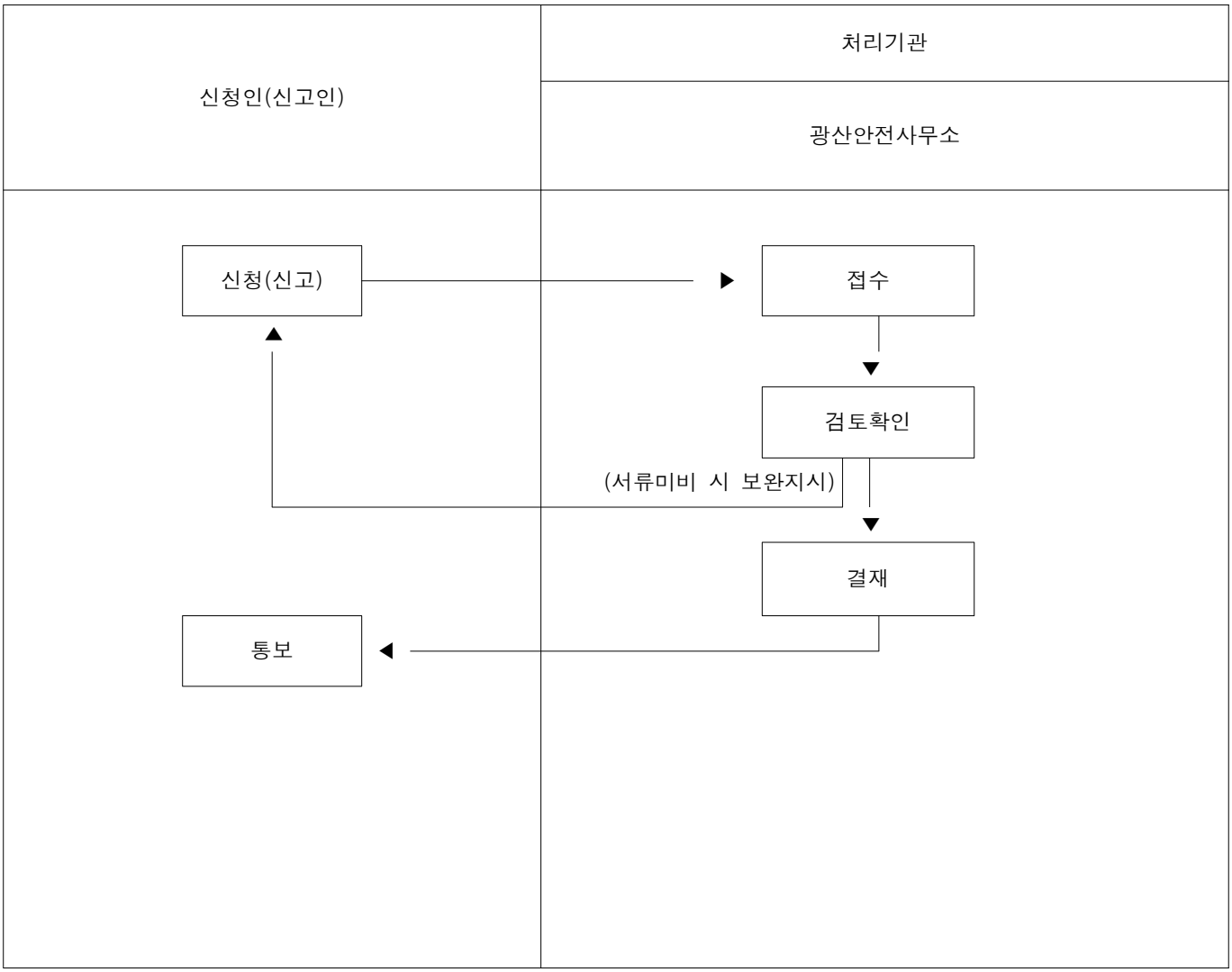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 (신고수리)번호		
검사증번호		
사용중지기간	. . . 부터 . . . 까지	(일간)
재활용예정일		
재활용이유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재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계획도(평・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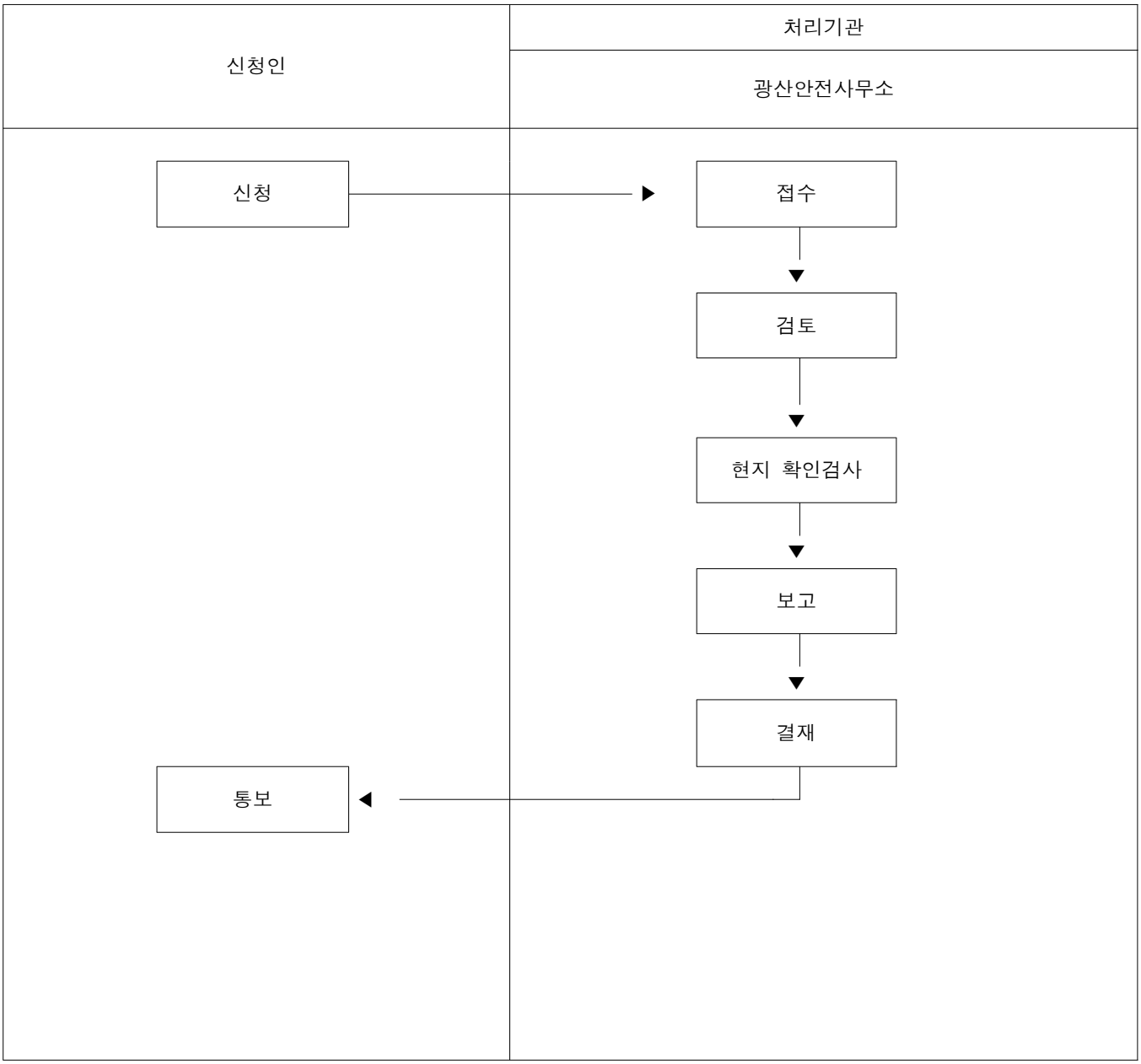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규모・대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날짜	
[ ] 설치 [ ] 변경 완료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 ]설치공사 [ ] 변경공사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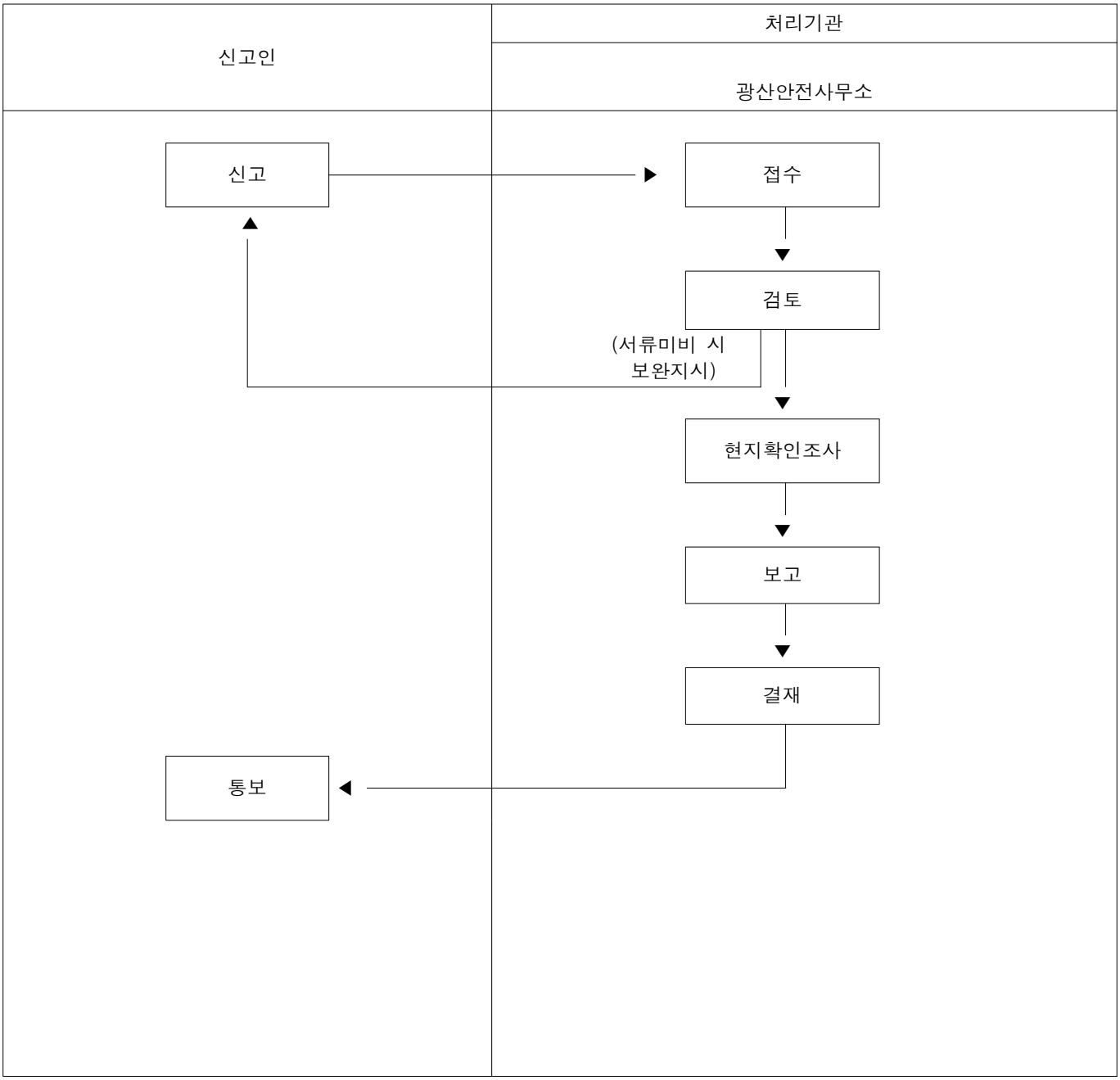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폐지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번호	
검사증번호	
폐지 연월일	
폐지 이유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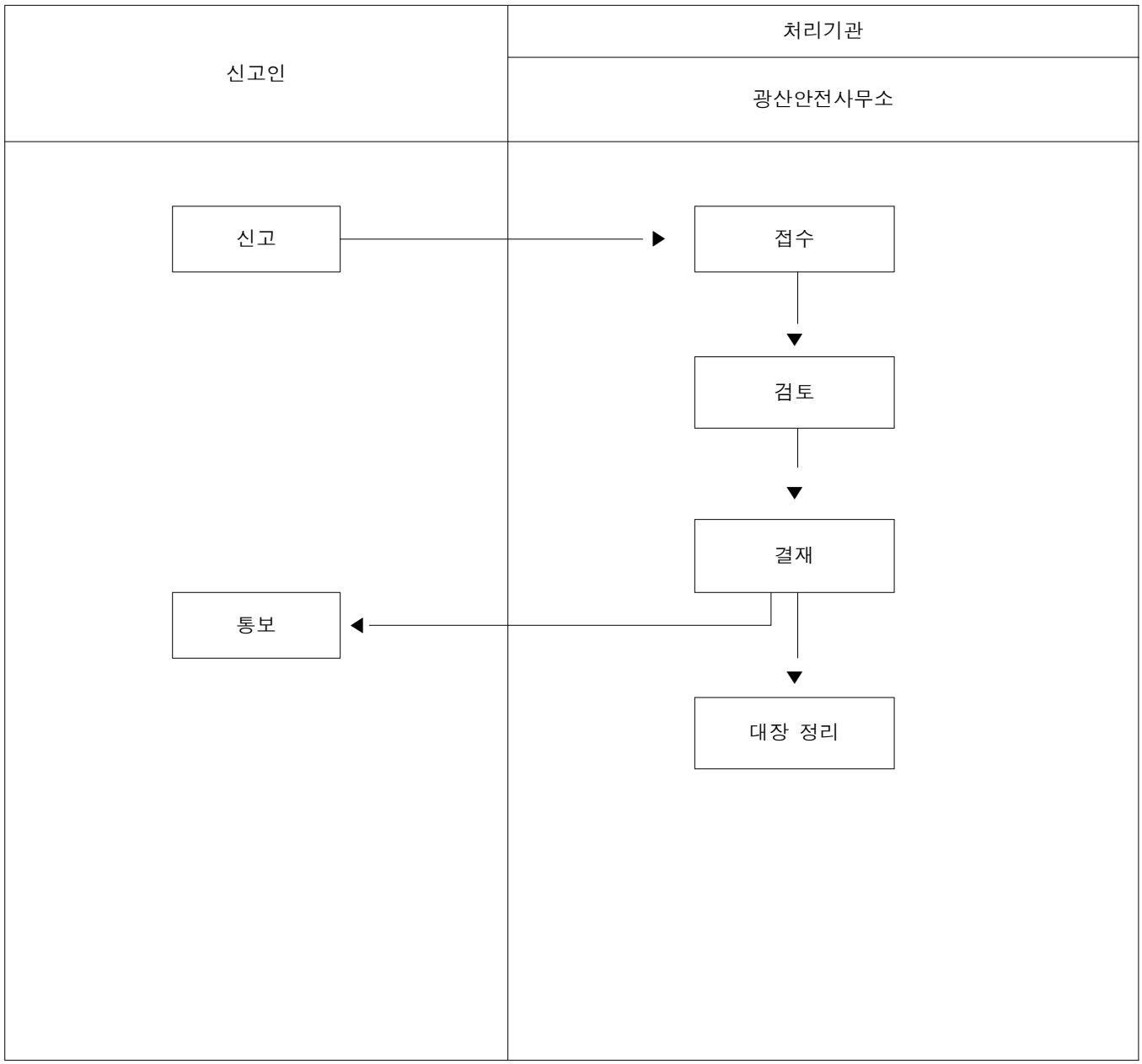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완성검사 [ ]성능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규모・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날짜
설치완료 연월일	. . .	
전회 검사증번호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수검 희망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 ]완성검사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물자원공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장이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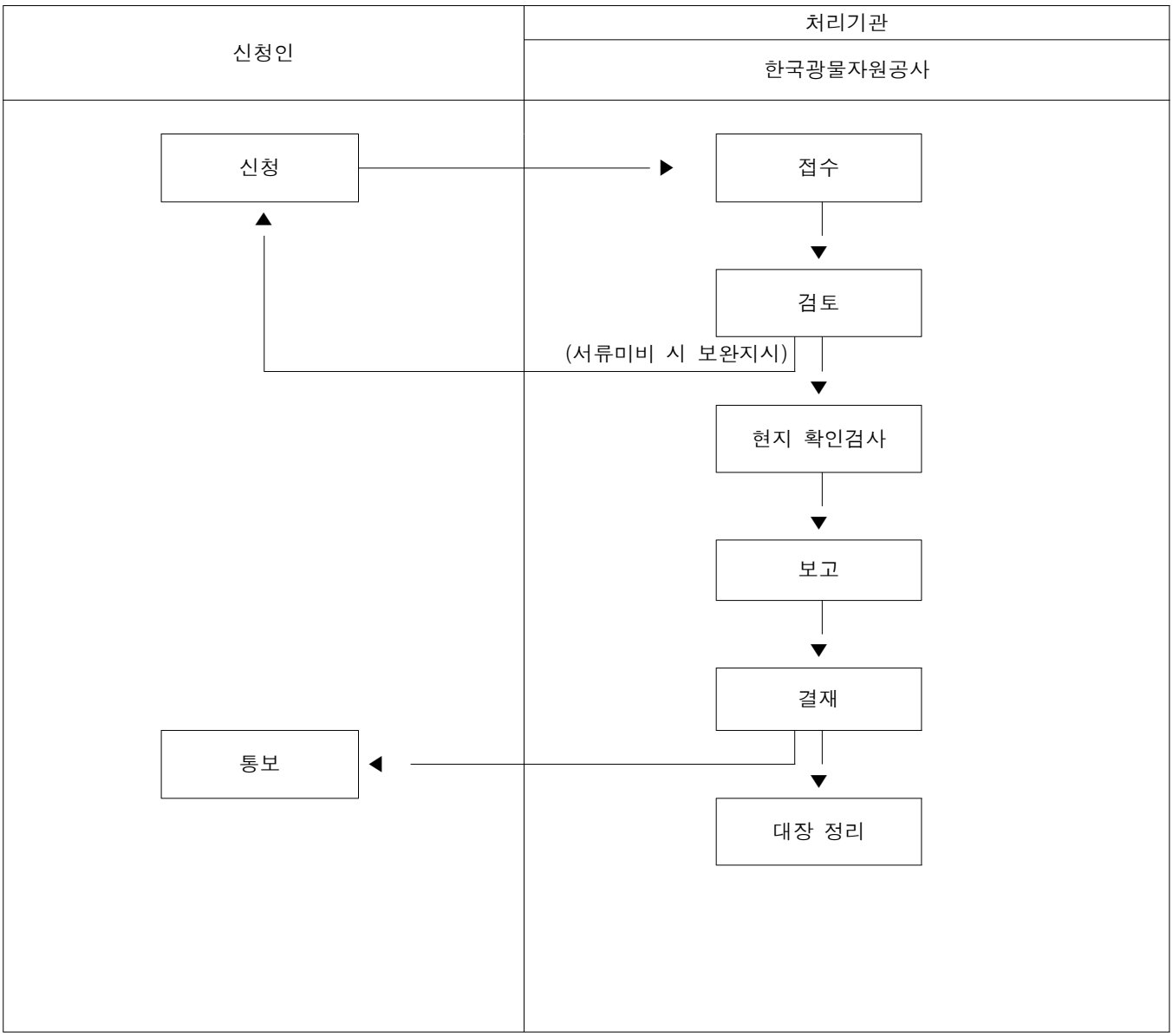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광업시설 검사증

제 호

①광산명		②광 종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④시설의 종류					
⑤능력 또는 규모					
⑥설치장소					
⑦유효기간					
⑧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물자원공사장 [인]

190㎜×268㎜ 백상지 (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규정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조광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광산의 종류 (채굴방법)	석탄광산	[ ] 갱내 [ ] 갑종 [ ] 갱외 [ ] 을종	일반광산 [ ] 갱내 [ ] 갱외

「광산안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규정 1부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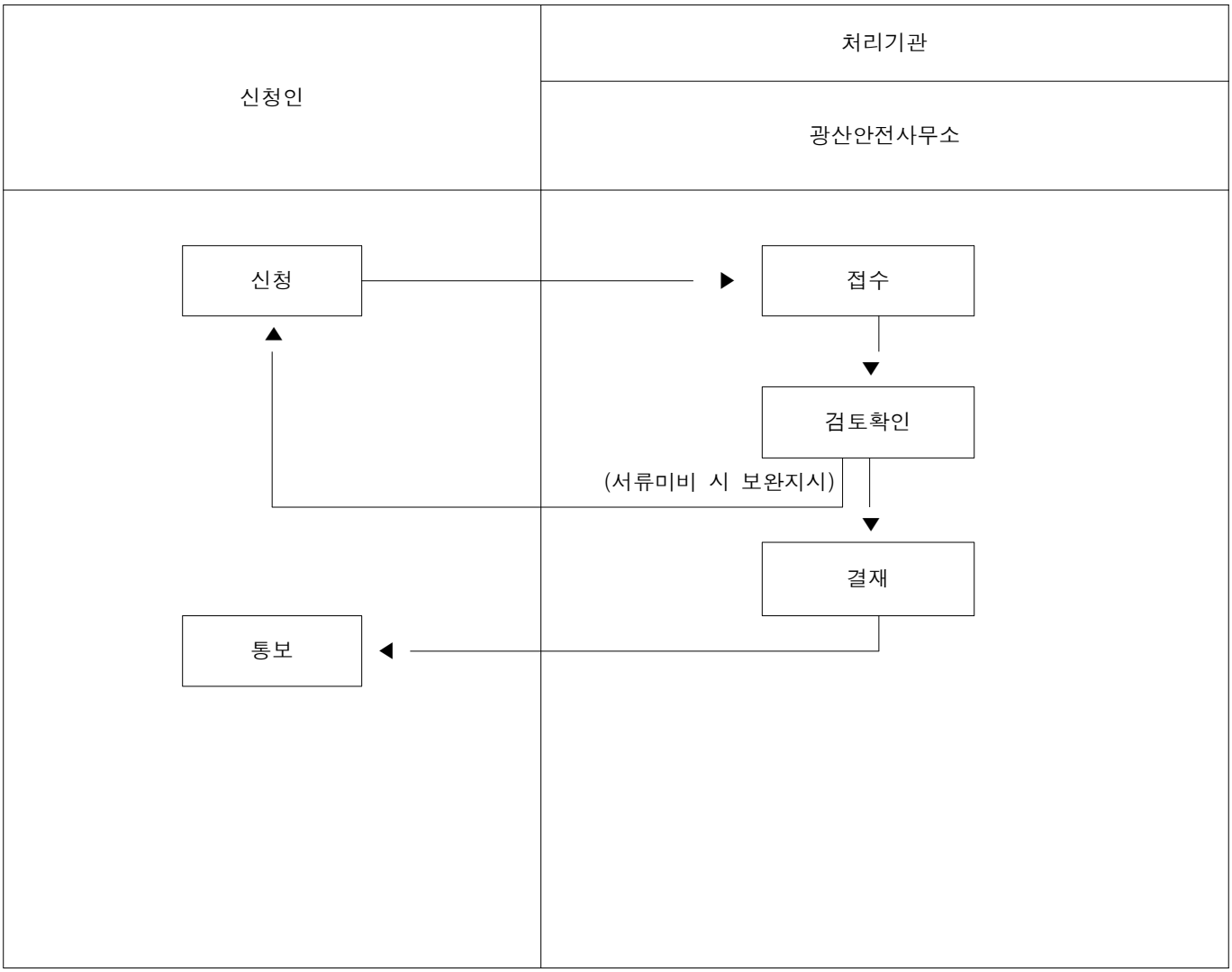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 ]선임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안전관리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선임자 또는 해임자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선임 [ ] 해임	연월일	년 월 일	직위
직무 범위	직무의 종류			
	담당구역			
	직접감독자 성명			직위
안전관리직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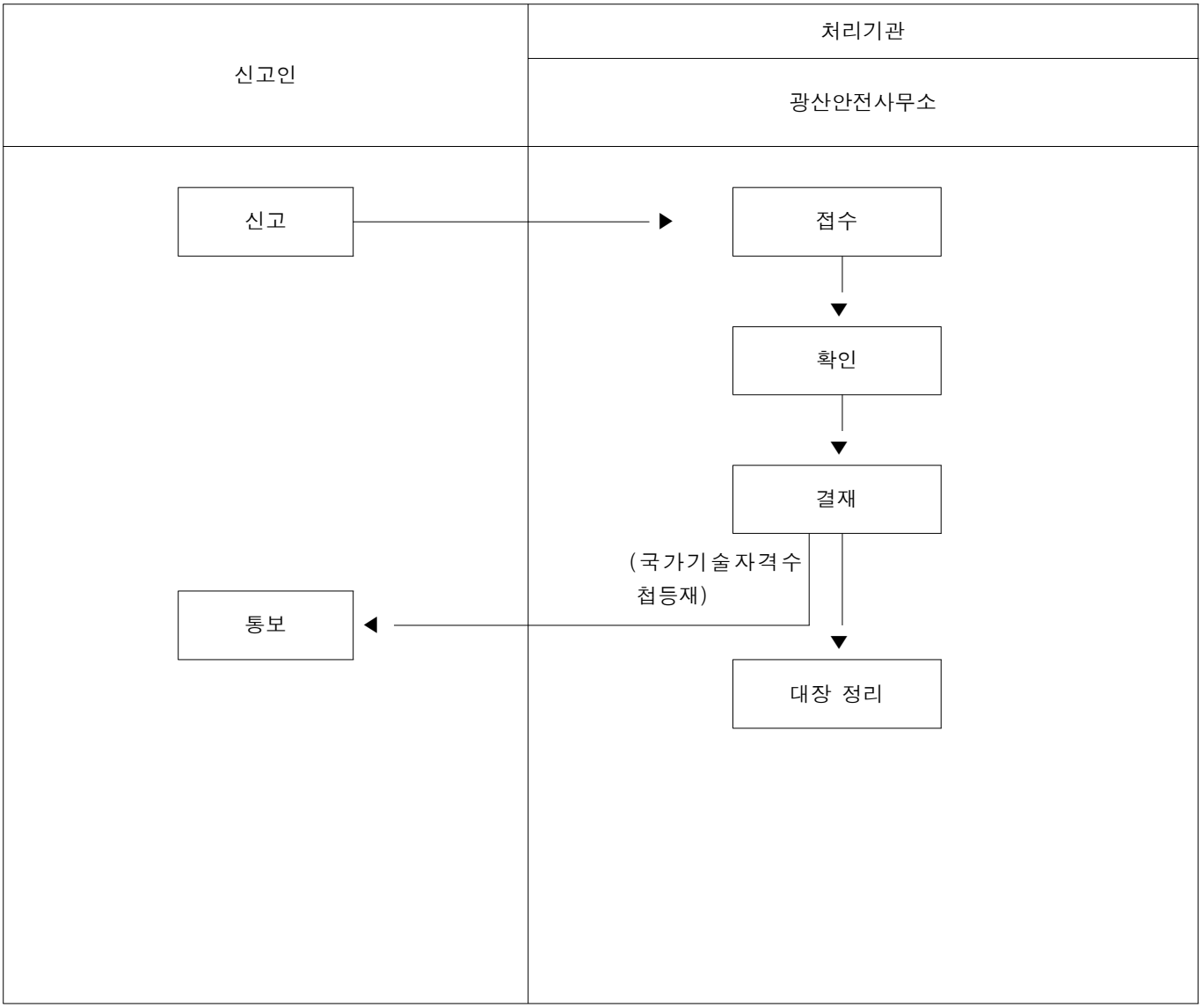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안전관리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전임 안전관리직원의 성명	

대리자	자격증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임 연월일	. . .
	안전관리직 경력	. . . 부터 . . . 까지(년 개월)

대리의 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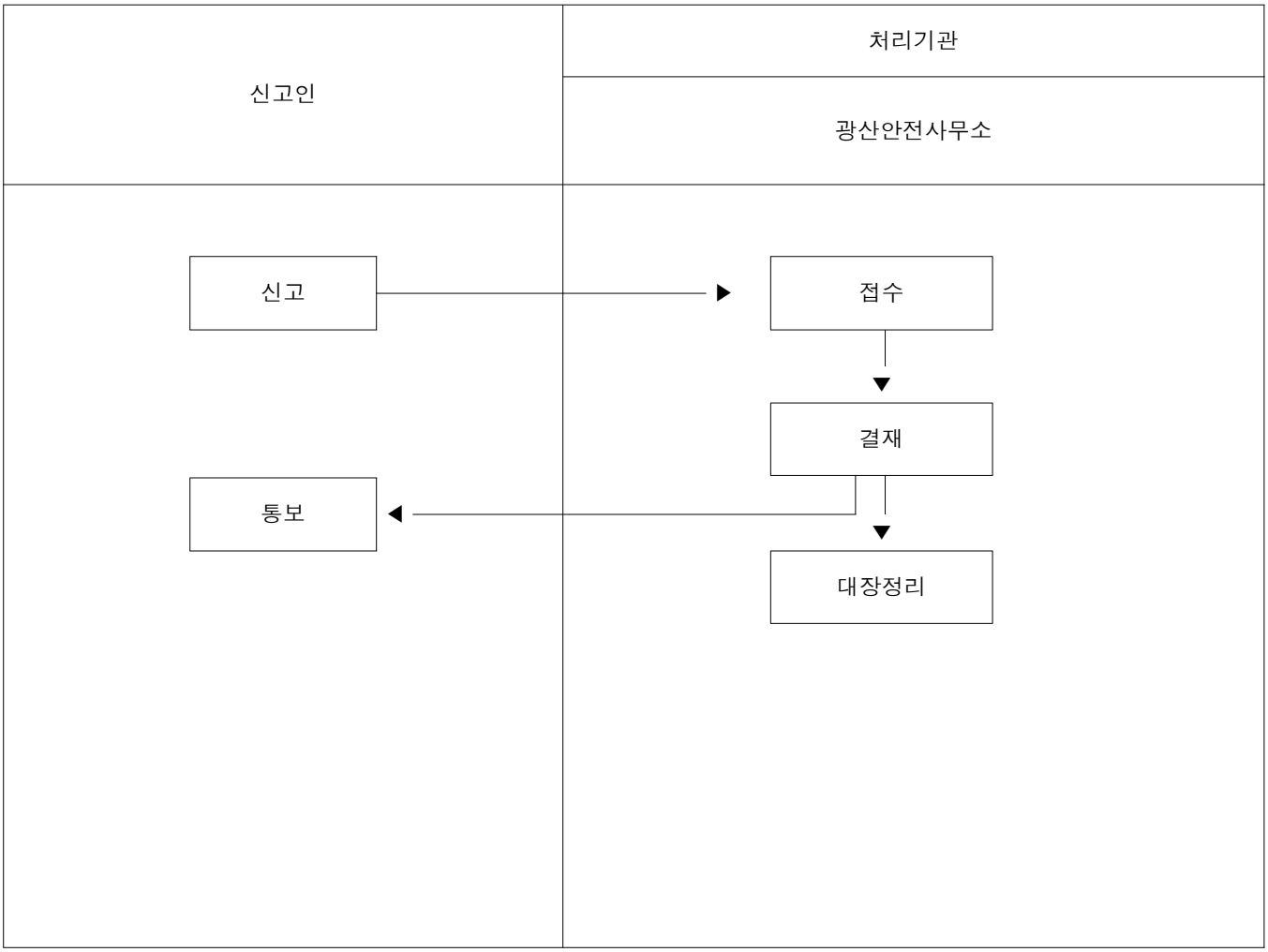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광작업재개 [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작업정지구역 (사용정지 시 설명)	
작업(시설사용) 정지연월일	
작업(시설사용) 정지연월일	
시정조치 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채광작업재개 [ ]채광시설사용재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설명서 1부 2. 작업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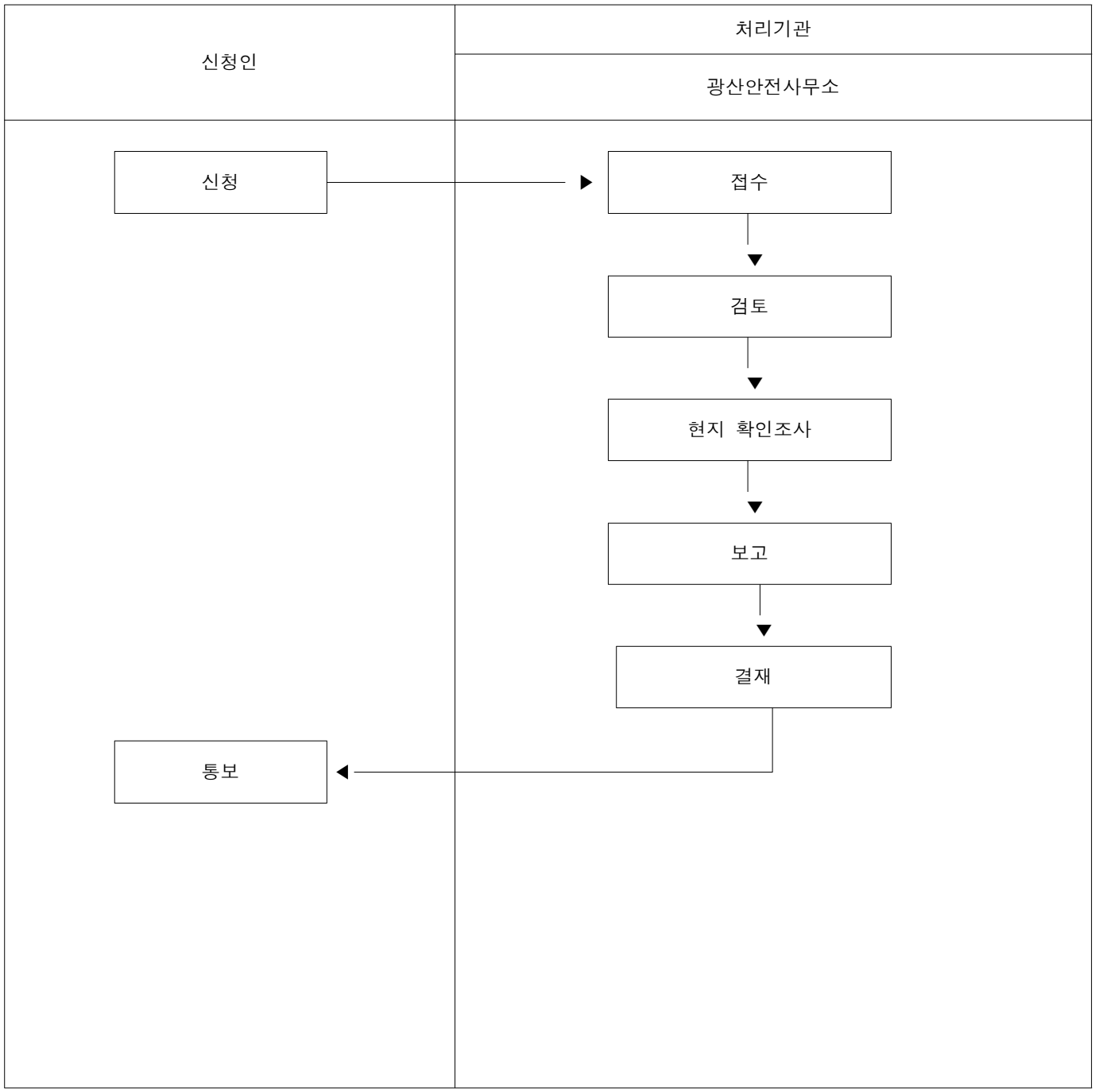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고서

(앞쪽)

년 월분 작성자: (서명 또는 인)

1. 광산명:	2. 경영구분(Ⓥ 표시) □ 모광 □ 조광 (모광명:)
3. 광종:	4. 광구번호 등 개 광구
5. 광업(조광)권자 (대표자 성명) (대표)	6. 생년월일 년 월 일
7. 광산소재지 우편번호: □□□□□	☏ ( ) -
8.광업(조광)권자 연락처 우편번호: □□□□□	☏ ( ) -

9. 종업원수(명)			10. 가동 연인원(명)			11. 가동 연시간		
갱내	갱외	계	갱내	갱외	계	갱내	갱외	계

12. 재해발생일시 월 일 시 분	13. 날씨(Ⓥ표시) 1 맑음 2 흐림 3 비 4 눈
14. 재해장소	15. 채광(탄)법
16. 작업명	17. 재해유형
18. 재해원인(1) 재해원인(2) 재해원인(3)	
19. 이재자 성명:	20. 생년월일 년 월 일
21. 학력	22. 직종
23. 입사연월일 년 월 일	24. 총광산근무경력 년 개월
25. 재해작업경력 년 개월	26. 위탁교육 과정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7. 재해정도(Ⓥ표시) 1 사망 2 중상 3 경상	28. 재해부위
29. 재해종류	30. 손실일수 일
31. 손실비용 ① 직접비 천원	② 간접비 천원 ③ 계 천원
32. 사고요약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광업(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붙임: 재해보고서 매. 끝.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 작성방법

이 보고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통계처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코드일람표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코드란은 비워두고 그 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1. 광산명: 광산명을 적습니다.
2. 경영구분: 해당난에 ∨표를 합니다. 조광일 경우 모광명을 적습니다.
3. 광종: 광종이 2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종(주광종)을 앞에 적습니다.
4. 광구번호: 광구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구를 앞에 적고 그 수를 적습니다.
5. 광업(조광)권자(대표자의 성명): 광업권등록원부상의 광업(조광)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광업(조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 )안에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6. 생년월일: 광업(조광)권자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광산소재지: 광산소재지 우편번호·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광업(조광)권자의 연락처: 광업(조광)권자의 우편번호·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9. 종업원수(명): 갱내·갱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가동 연인원(명): 실제 월 가동인원(또는 종업원수(9)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수)을 적습니다.
11. 가동 연시간: 실제 월 가동 연시간(또는 가동 연인원(10)에 일근무시간을 곱한 수)을 적습니다.
12. 재해발생일시: 재해가 발생한 날짜·시간 및 분을 적습니다.
13. 날씨: 해당난에 ∨표를 합니다.
14. 재해장소: 재해장소와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5. 채광(탄)법: 채광(탄)법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6. 작업명: 재해 시의 작업명과 해당 전산코드(전산토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7. 재해유형: 재해유형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8. 재해원인: 주요 재해원인을 중요정도의 순서대로 적습니다.
19. 이재자의 성명: 이재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20. 생년월일: 이재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1. 학력: 이재자의 최종학력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2. 직종: 이재자의 직종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3. 입사연월일: 이재자의 입사연도 및 월일을 적습니다.
24. 총광산근무경력: 이재자가 광산에서 근무한 총경력을 적습니다.
25. 재해작업경력: 재해발생작업의 작업경력을 적습니다.
26. 위탁교육과정명: 이재자가 이수한 최근 위탁교육명과 기간 및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7. 재해정도: 사망·중상(28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경상(3일 이상 28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8. 재해부위: 2곳 이상 부상 시 가장 부상이 심한 곳을 적고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9. 재해종류: 재해종류와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30. 손실일수: 이재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정된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손실일수(사망의 경우 7,500일, 중상은 28일 이상, 경상은 3일 이상 28일 미만)를 적습니다.
31. 손실비용
   ① 직접비: 이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비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법정보상비와 그 밖에 지급(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를 포함합니다)된 비용을 적습니다.
   ② 간접비: 인건비(이재자의 구호·병문안·재해조사·현장정리 또는 재해대책 등에 소요된 경비를 말합니다), 기자재비(시설물을 포함한 재해 시에 사용된 기계·기구 및 용품류의 파손·손실·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말합니다), 자원손비(광물자원의 일부의 채굴이 불가능하게 된 것, 광석의 일부가 유실된 것 및 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일시 정지되어 생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가계산상의 손비를 말합니다)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32. 사고요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광산안전관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cm×4cm

위 사람은 광산안전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90㎜×60㎜ 백상지(15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업대리인 [ ]선임 [ ]변경 신고서
[ ]광 업 대 리 권 소 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광업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광업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변경 또는 소멸) 연월일	
대리인에 대한 위임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 대리인 선임, [ ]광업 대리인 변경, [ ]광업 대리권 소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업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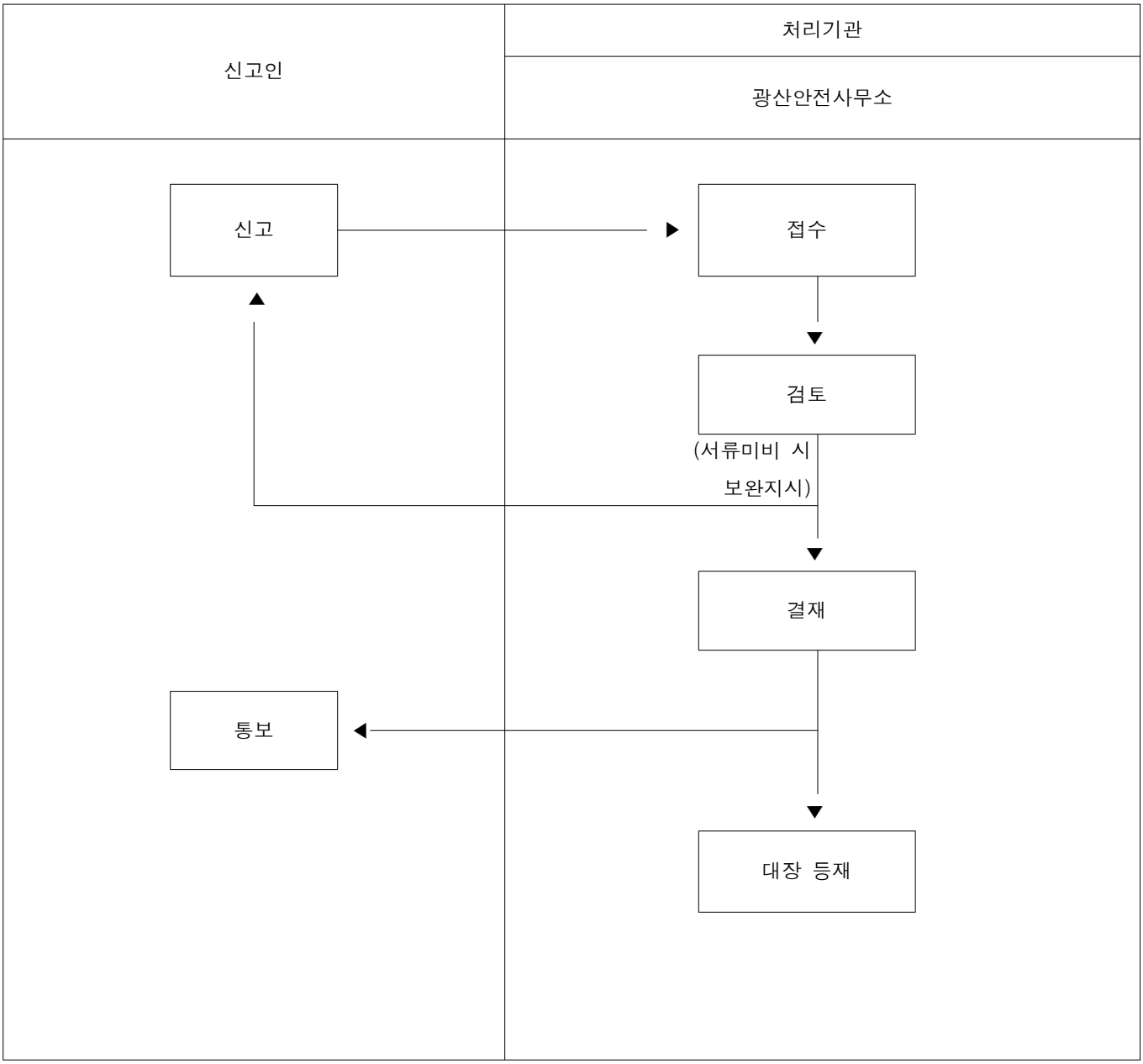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및 「광산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공포,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등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조치 장비(안 제2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메탄가스검정기, 갱내유선통신시설 등 기술적으로 오래된 장비를 메탄가스측정기, 갱내통신시설 등으로 현행화하고, 출수재해 방지를 위한 장비인 선진천공기를 갱외광산에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갱내광산의 경우에만 갖추도록 함.

나. 채굴제한구역의 범위 완화 등(안 제4조)

1)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제도를 폐지함.

2)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까지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등의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때에는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받도록 하되,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산구호대의 훈련·편성방법(안 제7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산구호대는 원칙적으로 2개조 이상 편성하도록 함.

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안 제8조)

메탄가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구역인 특례구역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를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및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로 정함.

마.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자격 및 선임기준(안 제18조)

1)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격증 취득 전후의 실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선임자격을 완화함.

2)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갱내안전계원, 갱외안전계원, 기계안전계원, 전기안전계원 또는 화약·발파안전계원뿐만 아니라 광해안전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함.

3)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화약안전계원과 발파안전계원을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통합함.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은 갑종탄광 또는 100명 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광산 등으로 하던 것을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 또는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하고, 안전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은 60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광산 등으로 하던 것을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 등으로 하는 등 광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변경함.

바. 위험 발생 보고(안 제2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작업환경의 위험과 관련하여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를 받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유해인자가 석면일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1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38조의3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영 제9조제1호에 따른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3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2.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별표 2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60	-	180

별표 3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	-	-	20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	-	-	20	-

별표 4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사업정지(20일)
6.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사업정지(20일)

별표 4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별표 6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가목 중 “주유소, 세탁실”을 “주유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면실”을 “세탁실, 수면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연속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주사무소가 이전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 지역이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자 중 해당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라.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함.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안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

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등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교육시간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 중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제30조제3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적합한"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0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별지 제2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판매한 날”을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3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량생산 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

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1항제1호의 자료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야한다.

제5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조ㆍ장치를”을 “구조ㆍ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튜닝”을 “튜닝(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중 “완충장치, 차체”를 “차체”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를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1.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 작 자 : _____

제 작 연 도 : _____

차량총중량 : _____kg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차 대 번 호 : _____

차 종 : _____ 차 명 : _____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합니다.

2.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 작 자 : _____

제 작 연 도 : _____

차량총중량 : _____kg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하였습니다.)

차 대 번 호 : _____

차 종 : _____ 차 명 : _____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

최초제작자 : _____ 수 입 자 명 : _____

제 작 연 도 : _____

차량총중량 : _____kg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차 대 번 호 : _____

차 종 : _____ 차 명 : _____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합니다.

[별표 29의2]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른 가속제어장치, 같은 규칙 제88조의2에 따른 타이어, 같은 규칙 제54조 및 제110조의2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 같은 규칙 제85조제4항에 따른 사륜형이륜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같은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장치, 같은 규칙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기압고무타이어를 말한다.
2.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향핸들 및 조향바퀴를 말한다.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4)에서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67조, 제90조 및 별표 34에 따른 제동장치를 말한다.
4.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5)에서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에 따른 연료누출 방지장치, 같은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전자파 장치, 같은 규칙 제18조의2 및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같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구동축전지,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가스 연료장치 및 같은 규칙 제91조제6항에 따른 기체연료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5.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6)에서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른 승객보호장치, 같은 규칙 제105조에 따른 앞면창유리, 같은 규칙 제92조에 따른 천정, 같은 규칙 제9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 같은 규칙 제102조의2에 따른 보행자보호장치 및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측면보호대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7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등록목적		[ ] 판매목적 [ ] 자가사용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 ] 완성자동차 [ ] 미완성자동차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 ] 승용 [ ] 승합 [ ] 화물 [ ] 특수 [ ] 이륜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작자등 등록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작자 등록번호	자기인증 능력 [ ] 확보 [ ] 미확보

제작자 구분	구분 1	[ ] 자동차 제작자 [ ] 이륜 자동차 제작자
	구분 2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구분

[ ] 완성자동차 [ ] 미완성자동차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 ] 승용 [ ] 승합 [ ] 화물 [ ] 특수 [ ] 이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10㎜×297㎜[백상지(15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최초제작자명	제작국가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확인	➔	기술검토	➔	기술검토서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자 동 차 제 원 표

1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대 · 차체형상					8	구 분				
5	승차정원(명)					9	용 도				
10	차량중량(kg)			( )	17	원동기	형 식				
11	최대적재량(kg)						최고출력 (ps / rpm)	/			
12	차량총중량(kg)			( )			기통수 / 총배기량(cc)	/			
13	차체 제원 (mm)	길이		( )			사용연료				
		너비		( )	18	연료소비율	항목 / 모드	복합	시가지	고속	
		높이		( )			연비(km/ℓ)				
14	하대내측지수 (mm)	길이					1회충전주행거리(km)				
		너비			19	축간거리(mm)					
		높이			20	윤간거리(mm)	전				
							후				
15	공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	21	하대옵셋트(mm)					
			후축	( )	22	변속기	종류				
		후	전축	( )			단수				
			중축	( )	23	타이어형식	전				
			후축	( )			후				
16	적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	24	구동방식					
			후축	( )							
		후	전축	( )	25	차대번호(1 ~ 8자리)					
			중축	( )	26	모델연도					
			후축	( )	27	축별설계허용하중	전		후		
28	선택사양										

유 의 사 항

1.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승용자동차의 경우 축별설계허용하중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5. 사용연료의 종류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연료소비율(km/ℓ)"은 충전소진모드(CD모드)에서의 연비를 말합니다.
6. 1회충전주행거리의 경우,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이거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7. 자동차 구동방식(상시4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등)을 기재합니다.
8.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차량총중량은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제시하는 최대허용총중량으로 기재합니다.
9. 안전기준 제1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의 경우 "복합모드"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생산대수
	차종	원동기형식
	최초제작자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작국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대상여부 검토	➔	대상확인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형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소량생산 인정대수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범위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대수 미만으로 생산되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정하고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도입(안 제1조의2 신설, 안 제31조 및 제36조 제1항, 안 제39조의2제2호의2 신설)

미완성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구조·장치로 차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을 정하고,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하여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곳에 부착하도록 함.

나.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안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소량생산 자동차를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고,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강도 계산서, 전산 모의 시험 결과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무상수리기간 기산일 명확화(안 제49조의3제1항제1호)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의 기산일인 자동차를 판매한 날을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자동차를 실제로 소비자에게 양도한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기산일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제7호가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1.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2.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3.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호, 201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정보와 협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7-10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 12. 1.) 【별책 1】 총론의 부칙 중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 ‘한국사’ 과목의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 육 부 장 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외교부고시제2017-7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7.2.1-2017.7.31
4. 제한대상
   - o 대한민국 국민
     -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나. 제출 서류
     -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 (2) 여권 사본
     -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7-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398. 재단법인 인천대학교발전기금

399.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4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01. 교정공제회
402.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
403. 대한타이어산업협회
404.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405. 재단법인 서울신학대학교동혜장학재단
406. 재단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이남열박용연장학재단
407. 사단법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408. 사단법인 웰브
409. 재단법인 안동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410. 재단법인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411. 건축사공제조합
4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13.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14. 흥덕고사회적협동조합흥덕쿱
415. 기흥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16.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417.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
418. 춘천한샘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19. 문경여자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0. 사회적협동조합의정부여자중학교모꼬지
421. 한국도예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2. 신길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423. 마을교육경제공동체별내고사회적협동조합
424. 가온길사천여고사회적협동조합
425. 길음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6.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7. 덕이고교육복지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8. 가재울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9.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430.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31.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2. 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3. 사회적협동조합술이홀통일출판사
434.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5. 재단법인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436. 재단법인 비성장학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혼다코리아(주)의 “ACCORD HYBRID”가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골자

○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정의 신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고정가격계약’으로 정의

나)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개편

기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 입찰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에 대한 입찰방식으로 개편

다)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우대

라)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의무이행비용보전 규정 신설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선정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SMP)를 차감한 계약단가로 보전하고, 입찰시장 선정분 이외 고정가격계약 구매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으로 보전토록 규정 신설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tie.go.kr) 접속→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1	소년은 신을 배반한다	H.Yakou /김서윤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6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	애죄신부 ~빠져드는 밀월~	S.Mayuyama /진혜영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67	2016-12-23	가학적 성행위	2017-01-06
2017-3	언제나 너와 영원히	J.Kizuki /윤선미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6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	무릎 꿇고 청혼!! -집착 재벌후계자의 달콤한 덫-	나나사토 루미 /심민하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6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	발칙한 구애 -따분한 왕의 왕비 고르기-	이케도유코/전우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6	황제 폐하의 익애혼 -사자는 아기 고양이를 달래준다-	스즈네린 /조이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7	납치된 아가씨의 사랑받는 결혼	아사미마리/심민하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	절대 군주의 독점애 -가면 속에 숨겨진 달콤한 유희-	미카즈키 코게츠/김진영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	왕자님, 주웠습니다	카즈키루코/SIO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	밀야 -장미의 신부는 사랑에 취한다-	키사라기/전우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1	왕궁은 사랑의 족쇄	토요가와 모나카/소얼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	돌아온 황녀와 미약 전하 감미로운 쾌감 프러포즈	아이모리 시즈쿠/린도	주)서울문화사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3	최애의 꽃	후지나미 치나코/심이슬	주)서울문화사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4	섹시한 내 운명	김다진	주)뿔미디어	2016-12-0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7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5	화문(下)	무연	주)뿔미디어	2016-11-29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6	욕망에 관한 몇 가지 진실	문희	예원북스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7	당신의 봄이고 싶다	이아현	예원북스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8	혈중 섹시 농도 0.10%	혜태	주)로크미디어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9	오해의 여왕	유리화	봄미디어	2016-12-07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0	허니트랩	한여리	주)동아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1	네가 여자로 보여	강이서	우신출판문화(주)	2016-12-06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2	ふともも寫眞館制服寫眞部	社編	一迅社/교보문고	2015-0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5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23	隣の淫らな奥さま	社編	マドンナ社/교보문고	2010-06-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6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24	珊海王の円環 パーフェクトガイドブック	テックジャイアン編集部	KADOKAWA/예스이십사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7	2016-12-23	음란성 성폭력 ※표지 포함	2017-01-06
2017-25	moecco 60		マイウェイ出版/교보문고	2016-04-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6	或いは、愛咬。	笹原にしき	大洋図書/예스이십사	2016-04-1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7	コレクション	水原とほる	德間書店/예스이십사	2016-07-3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8	ダークホースの罠	谷崎 泉	二見書房/예스이십사	2016-07-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9	タフ4 Light My Fire	岩本薫	リブレ/예스이십사	2016-09-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0	愛の在り處をさがせ!	樋口美沙緒	白泉社/예스이십사	2016-11-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1	眞音1	谷崎 泉	幻冬舎コミックス/예스이십사	2016-09-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2	眞音2	谷崎 泉	幻冬舎コミックス/예스이십사	2016-11-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3	人妻白書私のあやまち体驗	社編	マドンナ社/교보문고	2013-08-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96	빛과 그림자(외전 포함)(1)	류향	신영미디어(판매처:피우리)	2012-08-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7	빛과 그림자(외전 포함)(2)	류향	신영미디어(판매처:피우리)	2012-08-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8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1)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9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2)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0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3)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1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6)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2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7)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3	[블루라벨] 사자도 마다치않고(8)	키리유 키요이	파노라마 엔터테인먼트(판매처:만화365)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4	1억 엔의 좋은 몸(1)	시세이 토케이	울트라미디어(판매처:만화365)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5	1억 엔의 좋은 몸(2)	시세이 토케이	울트라미디어(판매처:만화365)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6	Rental 아내의 일상	마루닷슈	울트라미디어(판매처:리디북스)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7	벌려 보세요 아래쪽 진료 시간입니다(1)	이리에	넥스큐브(판매처:리디북스)	2016-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8	벌려 보세요 아래쪽 진료 시간입니다(2)	이리에	넥스큐브(판매처:리디북스)	2016-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09	벌려 보세요 아래쪽 진료 시간입니다(3)	이리에	넥스큐브(판매처:리디북스)	2016-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10	벌려 보세요 아래쪽 진료 시간입니다(4)	이리에	넥스큐브(판매처:리디북스)	2016-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8	2016-12-23	성폭력 혼음조장	2017-01-06
2017-111	벌려 보세요 아래쪽 진료 시간입니다(5)	이리에	넥스큐브(판매처:리디북스)	2016-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09	2016-12-23	혼음조장	2017-01-06
2017-112	만져서 느껴져(1)	츠루기나 마이/이시하라코헤이	길찾기(판매처:바로북)	2016-11-1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13	만져서 느껴져(2)	츠루기나 마이/이시하라코헤이	길찾기(판매처:바로북)	2016-11-1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1	2016-12-23	성폭력 근친상간 조장	2017-01-06

2017-114	심장이 춤춘다	명우	로맨스토리 (판매처:리디북스)	2014-02-17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7	2016-12-23	음란성	2017-01-13
2017-115	화홍 - 초련(1)	이지환	가하 (판매처:교보문고)	2013-06-03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8	2016-12-23	성행위 조장	2017-01-13
2017-116	화홍 - 오작교(2)	이지환	가하 (판매처:교보문고)	2013-06-03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89	2016-12-23	성행위 조장	2017-01-13
2017-117	보검박도(4)	황성	미스터블루 (판매처:미스터블루)	2014-11-04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0	2016-12-23	포악성	2017-01-13
2017-118	보검박도(16)	황성	미스터블루 (판매처:미스터블루)	2014-11-04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1	2016-12-23	포악성	2017-01-13
2017-119	보검박도(31)	황성	미스터블루 (판매처:미스터블루)	2014-11-04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2	2016-12-23	포악성	2017-01-13
2017-120	보검박도(34)	황성	미스터블루 (판매처:미스터블루)	2014-11-04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193	2016-12-23	포악성	2017-01-1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34	헬로 어게인	K.ICHIKAWA /박소현	주)삼양출판사	2016-11-2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5	맑은 내일이여, 오라	Aki Ueda /이슬	주)넥스콘스튜디오	2016-1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6	꽃과 순결	K.Katsura/김시내	주)넥스콘스튜디오	2016-1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7	귀축, 엔카운트	Owai /박소현	주)현대지능개발사	2017-0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8	밑바닥 인생의 사랑법	A.Hino /김명은	주)현대지능개발사	2017-0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39	달콤한 머릿결	Y.Akimoto /윤선미	주)현대지능개발사	2017-0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0	지저귀는 새는 날지 않는다(4)	K.Yoneda/김명은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1	좋아하잖아!	TOWA /정유진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1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2	날라리 군과 흑심 군의 비밀	S.Takenaka /윤선미	주)현대지능개발사	2016-12-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3	파트너의 영역 -바이 앤 하이-(2)	김다윗 /Aivan	대원씨아이(주)	2016-12-3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4	레토르트 파우치!(3)	M.Yokoyari /주원일	대원씨아이(주)	2016-12-3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2	2016-12-23	성행위 조장	2017-01-06
2017-45	감옥학원 PRISON SCHOOL(21)	A.Hiramoto /오경화	대원씨아이(주)	2016-12-3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6	軍鷄 군계(32)	A.Tanaka/김명은	주)서울문화사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4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47	하렘혼(4)	NON/장지연	주)학산문화사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8	하우스메이트(1)	이누가미 스쿠네/도노랑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49	거짓말쟁이 패러독스(1)	키즈키아키라/문기업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0	원수황제에게 바쳐진 신부	아즈미유우/도노랑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8	2016-12-23	가학적 성행위	2017-01-06
2017-51	적나라한 그녀(2)	LINDA/오광웅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12-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29	2016-12-23	혼음조장	2017-01-06
2017-52	헬조선(4)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11-1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0	2016-12-23	음란성 포악성	2017-01-06
2017-53	헬조선(5)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11-1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1	2016-12-23	음란성 포악성	2017-01-06
2017-54	사생결(32)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1-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2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55	사생결(38)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1-2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6	사생결(3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1-29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7	사생결 제2부(7)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8	사생결 제2부(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59	사생결 제2부(11)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7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60	사생결 제2부(16)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6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61	사생결 제2부(25)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39	2016-12-23	선정성 포악성	2017-01-06
2017-62	사생결 제2부(26)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0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63	사생결 제2부(30)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6-12-09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1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64	삐딱한 브라더스(1)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6-12-02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65	삐딱한 브라더스(5)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6-12-07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66	혈랑공자(31)	하승남	미스터블루(주)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4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67	혈랑공자(32)	하승남	미스터블루(주)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5	2016-12-23	포악성	2017-01-06
2017-68	야설록 천외비 제1부(15)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6-11-21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6	2016-12-23	성폭력	2017-01-06
2017-69	야설록 천외비 제2부(6)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6-11-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70	魔法人妻マナミ	LINDA	白泉社/교보문고	2016-12-0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59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1	オレと彼女と終わる世界 2	東雲龍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0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0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2	黒船來襲少女!	藤坂空樹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1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1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3	セフレ以上、戀人未滿!	曉あまま	海王社/예스이십사	2016-02-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2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4	ノラ猫の性分	隆巳ジロ	フロンティアワークス/예스이십사	2016-11-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3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5	秘密はキスで暴かれる	篁アンナ	彗星社/예스이십사	2016-11-18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4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6	暫定ボーイフレンド❤	高崎ぽすこ	德間書店/예스이십사	2016-1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5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7	焦る鼠は猫を嚙む	黑木えぬこ	竹書房/예스이십사	2015-10-2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6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8	衝突!★★作戰 2	ほむらじいこ	リブレ/예스이십사	2016-1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7	2016-12-23	음란성 ※표지 포함	2017-01-06
2017-79	ToLOVEるダークネス17アニメDVD同梱版	矢吹健太朗	集英社/예스이십사	2016-12-07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0	不倫食堂 2	山口讓司	集英社/예스이십사	2016-11-23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6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1	靈媒師いずなAscension10	眞倉翔/岡野剛	集英社/교보문고	2016-12-07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0	2016-12-23	음란성 폭력성	2017-01-06
2017-82	ダブル~背德の隣人~6	國友やすゆき	日本文芸社/예스이십사	2016-1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1	2016-12-23	음란성 성폭력 폭력성	2017-01-06
2017-83	ぼくらのねがい 3	山本小鐵子	大洋図書/예스이십사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4	抱かれたい男1位に脅されています。 3	櫻日梯子	リブレ/예스이십사	2016-12-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5	いびつ、愛しき、ひみつごと	椋太郎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12-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6	エスケープジャーニー2	おげれつたなか	リブレ/예스이십사	2016-11-1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7	エスケープドロップ	東原さき	フロンティアワークス/예스이십사	2016-11-2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8	となりのヤロウが好みな件	本田ゆいた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12-14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89	はきだめと鶴	キタハラリイ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10-3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0	ふたりの息子に狙われています 2	佳門サエコ	新書館/예스이십사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7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1	夜明けを待つ君のため	りーるー	竹書房/예스이십사	2016-12-14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2	俺のセンセイ!	藤山丸	ホーム社/예스이십사	2016-03-30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3	俺の嫌いなつがい様	桐式トキコ	メディアソフト/예스이십사	2016-07-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4	知らない顔	日高ショーコ	幻冬舎コミックス/예스이십사	2016-11-24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95	彼がかわいいと言ったから	春田	コアマガジン/예스이십사	2016-11-08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8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121	SPARK (2017년1월호)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8	2016-12-23	음란성 유해물건 사용조장	2017-01-06
2017-122	NUDESTORY (2017년1월호)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6-12-15	간행물윤리위원회	1612249	2016-12-23	음란성 유해물건 사용조장	2017-01-06
2017-123	リンクス 2017.1	133	幻冬舎コミックス/동남도서주식회사	2016-12-09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7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4	drap 2017.1	185	コアマガジン/동남도서주식회사	2017-01-01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5	Gush 2017.1	156	海王社/동남도서주식회사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599	2016-12-23	음란성 성폭력	2017-01-06
2017-126	Cool-B 2017.1	71	ヘッドルーム/동남도서주식회사	2016-12-04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7	FLASH 2016.12.13	1402	光文社/동남도서주식회사	2016-11-29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8	FLASH 2016.12.20	1403	光文社/동남도서주식회사	2016-12-06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2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29	FLASH 2016.12.27	1404	光文社/동남도서주식회사	2016-12-13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3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30	weekly プレイボーイ No.50 (2016.12.12)	50	集英社/동남도서주식회사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4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31	weekly プレイボーイ No.51 (2016.12.19)	51	集英社/동남도서주식회사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5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132	weekly プレイボーイ No.52 (2016.12.26)	52	集英社/동남도서주식회사		간행물윤리위원회	162160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133	lux-vape.com	lux-vape.com	럭스베이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27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4	misociga.co.kr	misociga.co.kr	미소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28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5	전자담배몰.com	전자담배몰.com	전담바리스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29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6	tweep.co.kr	tweep.co.kr	트위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0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7	y10cig.com	y10cig.com	샘플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1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8	hiciga.com	hiciga.com	더베이퍼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2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39	cigahouse.cafe24.com	cigahouse.cafe24.com	시가하우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3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40	skin-skin3.rogokids.cafe24.com	skin-skin3.rogokids.cafe24.com	팔팔전자담배닷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4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41	vatooshop.com	vatooshop.com	Vato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5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2017-142	fogstar.kr	fogstar.kr	포그스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6-87-036	2016. 12. 1.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7-01-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3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3호(2016.11.10.)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광주송정역사 건설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3-1번지 일대
   - ○ 면 적 : 74,110.00㎡
5. 사업의 내용
   - ○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93,341.31㎡
     - 연 면 적 : 5,754.80㎡
     - 기타시설 : 여객통로 2,597㎡, 승강장 홈지붕 12,635㎡, 자유연결통로 1,207㎡, 종합보수센터 1,855㎡, 송정리 전기실 437㎡, 하남역사 982㎡, 수송원처소 971.92㎡, 차량주재사무소 187.79㎡, 옥외화장실 87.53㎡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 2013년 6월 26일 ~ 2016년 12월 30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건설기술처(☏061-840-51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2012.4.19), 제2013-159호(2013.4.23))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0호(2012.7.4)),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35호(2015.4.27.), 제2015-869호(2015.12.2.))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현 구역	고속 국도	제105호	남해 제3지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웅동단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남해고속도로)	840,026.5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1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260-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소사동 대장동 제덕동 김해시 관동동 대청동 부곡동 삼문동 진례면 신월리 송현리 산본리	15.26
변경 구역					841,44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07.13 ~ 2017.01.12.(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제이배후 도로(주)(☎055-339-7163),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 건설사업단(☎055-720-6717)에 비치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및 녹지)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정정)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0-10 (90)	답	65	66	기획재정부	-				정정
2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1-6 (91-1)	대	200	197	국토교통부	-				정정
3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207-28 (207-14)	도	344	337	건설부	-				정정
4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1-7 (91-3)	대	76	75	국토교통부	-				정정
5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1-5 (91)	대	217	216	국토교통부	-				정정
6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8-1 (98)	대	445	454	국토교통부	-				정정
7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 (100)	대	437	-	동래정씨웅동죽항종친회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				해지
8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95-18 (95)	대	94	92	국토교통부	-				정정
9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17-3 (117)	답	310	314	기획재정부	-				정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정정)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20-32 (120-12)	전	64	67	기획재정부	-				정정
11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20-31 (120-10)	전	27	28	기획재정부	-				정정
12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16-1 (-)	대	-	54	국토교통부	-				추가
13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246-15 (246-15)	구	548	973	국토교통부	-				정정
14	김해시 관동동	산117-8 (-)	도	-	894	경상남도	-				추가
15	김해시 관동동	산117-7 (-)	도	-	352	경상남도	-				추가
16	김해시 관동동	산113-3 (-)	도	-	118	경상남도	-				추가
17	김해시 관동동	산113-2 (-)	도	-	42	경상남도	-				추가
18	김해시 관동동	811-3 (-)	도	-	78	경상남도	-				추가
19	김해시 대청동	800-275 (-)	대	-	14	경상남도	-				추가
2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498-4 (498-1)	답	26	27	국토교통부	-				정정
21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8)	답	150	-	경상남도	-				해지
2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5)	답	2	-	경상남도	-				해지
2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10)	임	1,097	-	경상남도	-				해지
24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9)	임	65	-	경상남도	-				해지
25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7-1)	전	245	-	경상남도	-				해지
26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2)	도	144	-	경상남도	-				해지
2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7)	임	576	-	경상남도	-				해지
28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4)	임	95	-	윤**	김해시 봉황동 459-2 백조아파트*동***호				해지
2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519 (518-2)	도	2	426	경상남도	-				정정
3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5)	도	291	-	경상남도	-				해지
31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7)	답	312	-	경상남도	-				해지
3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8-3)	전	53	-	경상남도	-				해지
3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8-1)	도	51	-	경상남도	-				해지
34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4)	임	76	-	경상남도	-				해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정정)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5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7-2)	도	70	-	경상남도	-				해지
36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3-1)	답	163	-	경상남도	-				해지
3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7-4)	전	191	-	경상남도	-				해지
38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7-1)	전	59	-	경상남도	-				해지
3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59-1 (366-3)	도	138	1,499	경상남도	-				정정
4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3)	답	14	-	경상남도	-				해지
41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10)	답	12	-	경상남도	-				해지
4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6-12)	답	61	-	경상남도	-				해지
4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9)	도	128	-	경상남도	-				해지
44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6-5)	답	108	-	경상남도	-				해지
45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8)	답	25	-	경상남도	-				해지
46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6)	답	34	-	경상남도	-				해지
4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6-10)	도	191	-	경상남도	-				해지
48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2)	도	280	-	경상남도	-				해지
4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508-16 (508-13)	임	4,858	4,857	국토교통부	-				정정
5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66-16 (366-16)	유	243	208	김해시	-				정정
51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7)	답	101	-	경상남도	-				해지
5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3-11)	답	400	-	경상남도	-				해지
5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0-6)	답	6	-	경상남도	-				해지
54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360-11)	답	85	-	경상남도	-				해지
55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11)	임	405	-	경상남도	-				해지
56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2-6)	임	2	-	경상남도	-				해지
57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08-1)	임	23	-	경상남도	-				해지
58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510 (510)	도	11	3,709	경상남도	-				정정
59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1-1)	답	24	-	경상남도	-				해지
6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 (511)	답	32	-	경상남도	-				해지
61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83-4 (383-4)	답	3,917	3,611	국토교통부	-				정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정정)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2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83-23 (383-23)	답	2,053	1,879	국토교통부	-				정정
63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산31-1 (산31-1)	임	2,539	2,536	국토교통부	-				정정
64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83-26 (-)	답	-	306	국토교통부	-				추가
65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83-27 (-)	답	-	174	국토교통부	-				추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호

관보 제18918호(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10.1. 생략 가~사. 생략	10.1. 생략 가~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관보 692페이지
11.1. 생략 가~라. 생략 마.「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 11.2를 다음과 같다	11.1. 생략 가~라. 생략 마.「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보 693페이지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2.를 다음과 같다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관보 693페이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2호

「항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1. 대상항만 : 광양항(묘도 투기장)
2. 변경사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진입도로에 대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증가(증 72㎡), 교통영향평가 결과 수용 등 항만재개발 사업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이 변경되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3.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 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42호, 2016.10.31.)중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4호

「항만법」 제54조제7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기정 : 3,120,862㎡

○ 변경 : 3,120,934㎡(증 72㎡)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6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 항만재개발계획 대상지역으로 개발여건 양호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항내 개발 및 유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이며,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휴부지임

○ 입지환경에 따른 특성화 개발 잠재력 보유

- 주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집적공간 확보로 실질적 물동량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단지로 특성화 개발

- 입지환경 특성상 에너지 자립항만 선도를 위한 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서 잠재력 보유

▶ 특히, 국내 타 지역과 비교 시, 연간 평균 일사량 및 평균풍속 등 양호한 품질의 기후적 요건으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특성화 가능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써 복합에너지발전 연료(석탄)부두 및 복합에너지 물류(유류)부두 등 향후 연료수급계획에 필요한 항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개발 잠재력 보유

○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로 광양만권의 향후 물류 및 항만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개발

-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생하는 해양생태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6.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추가)

1) 토지이용계획

○ (구역계) 광양 묘도 항만재개발 진입도로에 대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구역계 일부 변경

○ (도 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수용에 따른 도로선형 및 폭 변경

○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차장 신설

○ (녹 지) 지형 사정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 (기 타) 교통영향평가 결과, 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구역별 면적 증감

2)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 (교통계획) 장래 발생할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도로 선형, 폭원 변경 및 주차장 신설

○ (공원·녹지계획) 지형 사정에 맞추어 녹지면적 증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5호

「항만법」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기정 : 3,120,862㎡

○ 변경 : 3,120,934㎡(증 7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총괄표

<지 목 별 총 괄 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120,862	3,120,934	100.0	100.0
잡종지	2,990,443	2,990,517	95.8	95.8
제방	106,962	106,961	3.4	3.4
도로	124	124	0.1	0.1
구거	23,333	23,332	0.7	0.7

<소 유 별 총 괄 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20,862	3,120,934	100.0	100.0
국유지(해양수산부)	3,120,862	3,120,934	100.0	100.0

2) 토지조서 : '붙임' 참조

3) 물건조서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	잡	1,126	1,126	1,126	해양수산부	-	
2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1	제	370	370	370	해양수산부	-	
3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2	잡	806	806	806	해양수산부	-	
4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6	도	2,503	124	124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5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8	구	22,747	22,277	22,277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6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8-1	구	1,056	1,056	1,055	해양수산부	-	
7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9	제	12,392	12,217	12,216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8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0	잡	146,972	146,182	146,256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9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0-1	잡	7,951	7,951	7,951	해양수산부	-	
10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1	잡	679,218	679,218	679,218	해양수산부	-	
1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2	제	6,966	6,966	6,966	해양수산부	-	
12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3	잡	1,492	1,492	1,492	해양수산부	-	
13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3-1	제	1,020	1,020	1,020	해양수산부	-	
14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4	제	10,242	10,242	10,242	해양수산부	-	

15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5	잡	299,499	299,499	299,499	해양수산부	-	
16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	잡	1,854,169	1,854,169	1,854,169	해양수산부	-	
17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	제	76,147	76,147	76,147	해양수산부	-	
합 계				3,124,676	3,120,862	3,120,934	-	-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6호

「항만법」 제6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93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1) 사업비 : 220,771백만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 3,120,934㎡

○ 교통시설 : 도로 10개소(9,406m, 총면적 216,154㎡), 주차장 1개소(1,298㎡)

○ 공원·녹지시설 : 공원 3개소(245,476㎡), 녹지 2개소(252,462㎡)

○ 기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16,397㎡),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17,774㎡), 조경/전기시설 1식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5년 ~ 202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여수시 전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024,815,651.4	-	1,024,815,651.4	100.0	
도시지역	302,594,474.4	-	302,594,474.4	29.6	
주거지역	25,835,511.9	-	25,835,511.9	2.6	
제1종전용주거지역	996,879	-	996,879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988	-	40,988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67,301	-	12,767,30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60,535	-	10,260,53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	-	661,241	0.1	
준주거지역	1,108,567.9	-	1,108,567.9	0.1	
상업지역	2,991,739.3	-	2,991,739.3	0.3	
중심상업지역	351,070	-	351,070	0.1	
일반상업지역	2,640,669.3	-	2,640,669.3	0.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58,957,328.8	증)2,387	58,959,715.8	5.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5,740,591	증)2,387	55,742,978	5.4	
준공업지역	3,216,737.8	-	3,216,737.8	0.3	
녹지지역	214,809,894.4	감)2,387	214,807,507.4	21.0	
보전녹지지역	60,067,352	-	60,067,352	5.9	
생산녹지지역	9,151,359	-	9,151,359	0.9	
자연녹지지역	145,591,183.4	감)2,387	145,588,796.4	14.2	
관리지역	70,161,200	-	70,161,200	6.8	
관리지역	227,420	-	227,420	0.0	
보전관리지역	23,135,240	-	23,135,240	2.3	
생산관리지역	18,506,099	-	18,506,099	1.8	
계획관리지역	28,292,441	-	28,292,441	2.7	
농림지역	70,363,271	-	70,363,271	6.9	
자연환경보전지역	539,194,141	-	539,194,141	52.6	
미지정	42,502,565	-	42,502,565	4.1	

※ 기정면적은 익산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35호(2016.11.14.)에 의함

나. 사업대상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120,934	-	3,120,934	100.0	
도시지역	3,120,934	-	3,120,934	100.0	
공업지역	3,118,547	증)2,387	3,120,934	100.0	
일반공업지역	3,118,547	증)2,387	3,120,934	100.0	
녹지지역	2,387	감)2,387	-	-	
자연녹지지역	2,387	감)2,387	-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묘도 준설토 매립장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2,387	250%	•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번지 일원	-	증)3,120,934	3,120,934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변 경 사 유	비고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번지 일원	•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	9,406	216,154	6	5,341	107,916	1	1,817	55,677	3	2,248	52,561
대로	3	3,640	103,001	-	-	-	1	1,817	55,677	2	1,823	47,324
중로	6	5,508	110,309	5	5,083	105,072	-	-	-	1	425	5,237
소로	1	258	2,844	1	258	2,844	-	-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류	27	30~37	보조 간선 도로	1,817	중로1-108	중로1-116	일반 도로	-		가·감속 차로포함
신설	대로	3류	46	25～32	집산 도로	605	대로2-27	중로1-114	일반 도로	-		가·감속 차로포함
신설	대로	3류	47	25～32	집산 도로	1,218	대로2-27	중로1-115	일반 도로	-		가·감속 차로포함
신설	중로	1류	112	20	집산 도로	153	대로2-27	중로3-122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류	113	20~23.5	집산 도로	812	대로2-27	대로3-47	일반 도로	-		가·감속 차로포함
신설	중로	1류	114	20	집산 도로	780	대로2-27	대로3-46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류	115	20	집산 도로	1,135	대로3-47	중로1-113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류	116	20~23.5	집산 도로	2,203	대로3-47	경관녹지283 묘도동2017제	일반 도로	-		가·감속 차로포함
신설	중로	3류	122	12	국지 도로	425	중로1-112	중로3-12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류	397	10	국지 도로	258	대로3-47	중로1-1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류	78	10	국지 도로	13,708	소로1-354 묘도동1052-2대	소로1-356 묘도동1055도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류	78	10	국지 도로	9,700	소로1-354	경관녹지283 묘도동2017제	일반 도로	-		사업 지구외
변경	소로	1류	398	10	국지 도로	1,497	경관녹지284 묘도동2014제	소로1-356	일반 도로	-		사업 지구외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 2-27	• 도로 신설 - 폭원 : 30～37m - 연장 : 1,817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대로 3-46	• 도로 신설 - 폭원 : 25～32m - 연장 : 605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대로 3-47	• 도로 신설 - 폭원 : 25～32m - 연장 : 1,218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1-112	• 도로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153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1-113	• 도로 신설 - 폭원 : 20~23.5m - 연장 : 812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1-114	• 도로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780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1-115	• 도로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1,135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1-116	• 도로 신설 - 폭원 : 20~23.5m - 연장 : 2,203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3-122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425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1-397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58m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 1-78	소로 1-78	• 도로 노선축소 • 연장 변경 : 13,708m → 9,700m • 종점변경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도로 동선체계를 감안하여 기존도로1-78호선 노선 분할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78	소로 1-398	• 도로명 변경 • 연장 변경 : 13,708m → 1,497m • 기점변경	•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도로 동선체계를 감안하여 기존도로 1-78호선 노선 분할에 따른 연장 축소 및 도로명 부여

나 .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2	주차장	중로3-122 일원	-	증)1,298	1,298	-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2	주차장	· 신설 · 면적 : 1,298㎡	· 지원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②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09	공원	근린공원	대로 2-27 남측일원	-	증)20,774	20,774		
신설	210	공원	수변공원①	중로 1-116 동측일원	-	증)137,615	137,615		
신설	211	공원	수변공원②	중로 1-116 동측일원	-	증)87,087	87,087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9	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20,774㎡	• 지역민과 단지내 종사자의 휴식공간 확보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공원 신설
210	공원	• 수변공원① 신설 - 면적 : 137,615㎡	• 해양경관조망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수변공간 조성
211	공원	• 수변공원② 신설 - 면적 : 87,087㎡	• 해양경관조망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수변공간 조성

3) 공원조성계획 조서

3.1) 근린공원 209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20,774	20,774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3,827.5	3,827.5	
조경시설	파고라 외 1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65.0	165.0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외 3종	-	1,802.7	1,802.7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	217.4	217.4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14,761.4	14,761.4	71.1%

3.2) 수변공원 210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137,615	137,615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17,130.5	17,130.5	
조경시설	파고라 외 3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918.1	1,918.1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230.2	230.2	
편익시설	주차장외 1종	-	2,877.6	2,877.6	
공원관리시설	종합안내판 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115,458.6	115,458.6	83.9%

3.3) 수변공원 211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87,087	87,087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11,422.0	11,422.0	
조경시설	파고라 외 3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147.4	1,147.4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287.3	287.3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	983.1	983.1	
공원관리시설	종합안내판 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73,247.2	73,247.2	84.1%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83	녹지	경관녹지	중로1-114 북측일원	-	증)137,576	137,576		
신설	284	녹지	경관녹지	중로1-115 서측일원	-	증)114,886	114,886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3	녹지	• 녹지 신설 - 면적 : 137,576㎡	•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 신설
284	녹지	• 녹지 신설 - 면적 : 114,886㎡	•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 신설

③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6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소로1-397 남측일원		증)16,397	16,397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면적 : 16,397㎡	•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소로1-397 남측일원		증)17,774	17,77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 면적 : 17,774㎡	• 단지내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복합산업물류지구

가. 지원시설 용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지원시설①	①	30,852	-1	1,228	
			-2	1,226	
			-3	1,246	
			-4	2,187	
			-5	1,109	
			-6	1,133	
			-7	1,131	
			-8	11,714	
			-9	1,177	
			-10	1,177	
			-11	1,177	
			-12	1,177	
			-13	1,176	
			-14	1,881	
			-15	2,113	
지원시설②	②	4,924	-1	1,414	
			-2	1,334	
			-3	1,099	
			-4	1,07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나. 미래신소재산업시설 용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미래신소재 산업시설①	①	145,486	-1	48,217	
			-2	48,438	
			-3	48,831	
미래신소재 산업시설②	②	156,227	-1	30,745	
			-2	31,341	
			-3	31,453	
			-4	31,475	
			-5	31,21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다. 복합에너지물류시설 용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복합에너지 물류시설①	①	259,079	-1	259,079	
복합에너지 물류시설②	②	175,100	-1	175,100	
복합에너지 물류시설③	③	207,057	-1	207,057	

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용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재생에너지 생산시설①	①	442,875	-1	442,875	

마.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용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복합에너지 발전시설①	①	519,977	-1	519,977	

② 공공시설지구

가. 유보지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유보지①	①	429,796	-1	429,796	

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폐기물 처리시설①	①	16,397	-1	16,397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폐수종말 처리시설①	①	17,774	-1	17,774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복합산업물류지구

가. 지원시설용지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10">지원시설
①</td><td rowspan="10">지원시설
①</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td><td>• 별도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주방향은 자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형태</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색채</td><td>• 기능별 이용행태를 고려,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 폐쇄감과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의 투명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사용색 범위
<table>
<tr><th>구분</th><th>색상</th><th>흑색량</th><th>순색량</th></tr>
<tr><td>주조색</td><td>G90Y-R</td><td>5-20</td><td>2-10</td></tr>
<tr><td>보조색</td><td>G70Y-R</td><td>5-50</td><td>2-30</td></tr>
<tr><td>강조색</td><td>G-R30B, R70B-B60G</td><td>5-70</td><td>2-70</td></tr>
</table>
• 배색예시
 </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인접대지경계선 1m</td></tr>
<tr><td colspan="2">기타</td><td>• 모든 획지는 입주시설의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필지를 분할·합병 할 수 있다.</td></tr>
</table>

나.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용지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10">미래
신소재
산업시설
①~②</td><td rowspan="10">미래
신소재
산업시설
①~②</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td><td>• 별도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형태</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외벽재 수는 3개 이내로 하고, 미래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재료(예, 커튼월 등) 사용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색채</td><td>• 폐쇄감과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 투명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소재색 사용 시 적용 색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유리가 건물의 70%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색으로 인식될 만한 착색을 하지 않은 유리는 사용색 범위 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사용색 범위
<table>
<tr><th>구분</th><th>색상</th><th>흑색량</th><th>순색량</th></tr>
<tr><td>주조색</td><td>G90Y-R20B</td><td>5-20</td><td>2-10</td></tr>
<tr><td>보조색</td><td>G80Y-R50B</td><td>5-40</td><td>2-30</td></tr>
<tr><td>강조색</td><td>all color</td><td>15-70</td><td>2-70</td></tr>
</table>
• 배색예시
 </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기타</td><td>• 모든 획지는 입주시설의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필지를 분할·합병 할 수 있다.</td></tr>
</table>

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8">복합
에너지
물류
시설
①~③</td><td rowspan="8">복합
에너지
물류
시설
①~③</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td><td>• 별도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부지 내부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하며, 휴게공간은 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배치하여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td></tr>
<tr><td colspan="2">형태</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및 산업시설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td></tr>
<tr><td colspan="2">색채</td><td>• 지구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 사용색 범위
<table>
<tr><th>구분</th><th>색상</th><th>흑색량</th><th>순색량</th></tr>
<tr><td>주조색</td><td>R70B-R</td><td>5-20</td><td>2-5</td></tr>
<tr><td>보조색</td><td>R70B-R</td><td>5-30</td><td>2-20</td></tr>
<tr><td>강조색</td><td>B-G60Y</td><td>5-60</td><td>2-60</td></tr>
</table>
• 배색예시
 </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td></tr>
</table>

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10">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①</td><td rowspan="10">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①</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td><td>• 별도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형태</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관리건축물 등 지표적 성격의 건축물은 부지 중심에 배치하여
부지의 시각적 중심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건축물 등 지표적 성격의 건축물 입면은 경관을 저해하는 폐쇄적 디자인은 금지하며, 반사율이 낮은 유리 등 투과적인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 집열판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집열판 경계부에는 마운딩 혹은 구조물 등을 통해 식재대 조성을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색채</td><td>•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 사용색 범위
<table>
<tr><th>구분</th><th>색상</th><th>흑색량</th><th>순색량</th></tr>
<tr><td>주조색</td><td>R70B-R</td><td>5-20</td><td>2-5</td></tr>
<tr><td>보조색</td><td>R70B-R</td><td>5-30</td><td>2-20</td></tr>
<tr><td>강조색</td><td>B-G60Y</td><td>5-60</td><td>2-60</td></tr>
</table>
• 배색예시
 </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td></tr>
</table>

마.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8">복합
에너지
발전시설
①</td><td rowspan="8">복합
에너지
발전시설
①</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td><td>• 별도 제한 없음</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부지 내부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하며, 휴게공간은 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배치하여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td></tr>
<tr><td colspan="2">형태</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및 산업시설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옥상부분은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td></tr>
<tr><td colspan="2">색채</td><td>• 지구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 사용색 범위
<table>
<tr><th>구분</th><th>색상</th><th>흑색량</th><th>순색량</th></tr>
<tr><td>주조색</td><td>R70B-R</td><td>5-20</td><td>2-5</td></tr>
<tr><td>보조색</td><td>R70B-R</td><td>5-30</td><td>2-20</td></tr>
<tr><td>강조색</td><td>B-G60Y</td><td>5-60</td><td>2-60</td></tr>
</table>
• 배색예시
 </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td></tr>
</table>

바. 유보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보지①	유보지①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② 공공시설 용지

가. 폐기물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①	폐기물 처리시설 ①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 사용색 범위 (구분 / 색상 / 흑색량 /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 배색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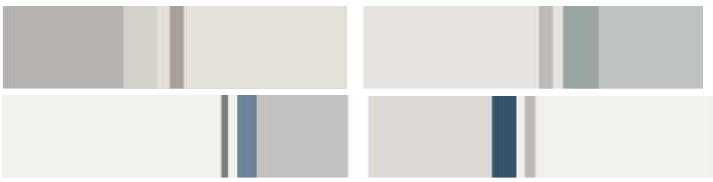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폐수종말처리시설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①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 사용색 범위 구분 / 색상 / 흑색량 / 순색량 주조색 / R70B-R / 5-20 / 2-5 보조색 / R70B-R / 5-30 / 2-20 강조색 / B-G60Y / 5-60 / 2-60 • 배색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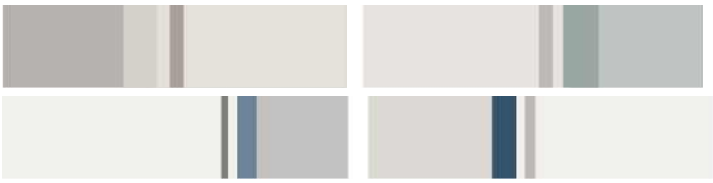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 진출입	•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차장 설치	• 부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의 110% 설치	
담장 및 울타리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단,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제672호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1동 (현황측량면적 : 325.68㎡)	1915년	학교법인 배화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등록문화재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	1동 (현황측량면적 : 795.4㎡)	1926년	학교법인 배화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나. 등록 사유

(1)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 현재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캐롤라이나관은 배화학당 초기인 1915년에 신축된 건물로 근대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와 계단이 배치되고 양쪽으로 교실이 위치한 실내공간구성이 독특한 점 등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2)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

○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동 시기의 건축적 양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를 지님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7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06,507
책임조사원	236,372
조 사 원	207,033
준 조 사 원	140,794
보 조 원	112,705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문화재청고시제201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등 6개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개 문화재(통합고시)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1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1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18호 경주 귀후재)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7-1호

2017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 림 청 장

1. 2017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122,021	
가. 묘목대	1,749,000	'16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3,021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2,503,375	
가. 직접노무비	2,247,195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256,180	직접노무비의 11.4%
3. 경비	391,591	
가. 운반비	37,98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25,303	노무비의 9.0%
라. 고용보험료	22,530	노무비의 0.9%(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830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4. 일반관리비	301,019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5. 이윤	479,397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579,740	총원가의 10%
합 계	6,377,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영민	1974.10.24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13-9 (서상동)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정영섭	1962.09.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0	2011.11.04	외국국적취득
변계덕	1959.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30	1999.12.15	외국국적취득
김가람	1991.02.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4-1 (광복동1가)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정일승	1958.07.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42	2008.08.18	외국국적취득
한정규	1989.04.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6	2009.07.09	외국국적취득
박정국	1955.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49-10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정종일	1957.12.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773	2004.05.28	외국국적취득
황진규	1994.04.0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9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임혜정	1975.12.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18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유혜욱	197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6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성지윤	1993.04.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이나데쟈	1982.01.22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2016.11.19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이디아나	2001.08.20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2016.11.19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자오천샤	1973.03.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527	2010.02.27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안희은	1966.05.1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344-3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정운성	1939.12.15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180	2008.03.19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이병덕	1967.12.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4 (정왕동, 옥구마을건영아파트)	2016.09.13	외국국적취득
정무광	1978.02.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17 (화수동)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56.04.22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자유로66-1 (심곡본동)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대혁	1980.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23나길30 (전농동)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최요한	1994.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4	2016.08.12	외국국적취득
김인애	1968.08.07	여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7	2015.05.11	외국국적취득
김명	1942.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65	2016.09.02	외국국적취득
정순녀	1946.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65	2016.09.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4.09.02	여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7	2016.11.02	외국국적취득
손종현	1993.06.1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0-6	2016.11.18	외국국적취득
문영섭	1946.03.22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1길 56-8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0.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27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서현석	1985.04.21	남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366-8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임승연	1957.05.16	여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366-8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강지영	1965.11.1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20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김찬호	1959.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84-24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94.0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13가길19 (자양동)	2006.03.02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02.24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209	1985.06.19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2001.12.11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직곡로7번길22-24 (가능동)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천진영	1965.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5	1976.11.09	외국국적취득
루앤던디	1955.11.14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994	1998.02.14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이즐리따	2011.07.02	여	인 도 네시아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0	2016.09.08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박범수	1990.12.24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길 77-5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원길남	1948.01.18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41길17 (이태원동)	2008.06.21	외국국적취득
정유경	1986.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9길14-1 (보문동5가)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3.02.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최금돌	1955.01.27	여	일 본	경기도 안성시 영동 446	1982.12.10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1959.01.0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3	2002.11.01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3.06.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110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2014.07.28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1982.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산 8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63.08.17	남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	2009.11.06	외국국적취득
손기덕	1988.02.03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427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이수로	1998.02.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오경례	1970.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삼성동, 호산프라자)	2016.12.01	외국국적취득

허용석	1994.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삼성동, 호산프라자)	2016.12.01	외국국적취득
허희	1992.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삼성동, 호산프라자)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반옥	1945.09.09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20, 305동 101호 (휴먼시아)	2016.01.09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이선재	1963.02.2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2	1986.04.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91.03.05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405-1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서막동	1959.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4길36 (상도동, 동호빌라)	2014.05.1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옥산교 확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515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영구 23,048㎡ / 일시 1,0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3. ~ 2022. 01. 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20.2㎡, 일시 587.5㎡

5. 점용개요 : 가스관로 (D=200㎜, L=516.5m)
6. 점용기간 : 2016.6.22. ~ 2021.6.2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6.22. ~ 2016.12.30.
(변경) 2016.6.22. ~ 2017.3.31.
8.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75번지 일원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항만이미지 개선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
   ○ 개 요 :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 26,000㎡
   - 토목공 : 아스콘 포장 2,625㎡ 등
   - 조경공 : 수목식재 1식(교목류 487주, 관목류 10,353주, 잔디 7,666㎡),
     시설물 설치 1식(조합놀이대 외 19종), 조경포장공 1식(화강석포장 1,367㎡ 등)
   - 건축공 : 화장실 2동
5. 공사 기간 : 2017. 3. ~ 2018. 9.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831백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폐 지	고대도항도원 A호 등부표	36-23-35.6N 126-22-12.5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12.21.	공사목적용	
폐 지	고대도항도원 B호 등부표	36-23-35.4N 126-22-14.9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12.21.	공사목적용	
폐 지	고대도항호성 A호 등부표	36-23-30.0N 126-22-23.0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12.29.	공사목적용	
폐 지	고대도항호성 B호 등부표	36-23-20.9N 126-22-28.8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12.29.	공사목적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1길 30-2, ㈜대광정밀
3. 목적 및 개요 : 주월소수력발전, 발전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산116 외 1필지(섬진강수계 오수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5월~9월 : 25,920㎥/일
   ○ 10월~4월 : 59,800㎥/일(점용면적 233㎡)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3. 공 사 명 : 강고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129
   동진강수계 고부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12,650㎥/일 (점용면적 200㎡)

8.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7. 05. 31.

9.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7. 05. 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합계		122개 노선	785.28	942,336			
강릉관리소	소계	12개 노선	92.28	110,736			
	노추산 등산로	늘막골~노추산정상	3.00	3,60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삼거리~모정탑길	3.00	3,60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칠성산 등산로	어단리~칠성산~목계리(도마리)	26.00	31,20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362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3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산9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제왕산 등산로	상제민원~제왕산~(구)대관령휴게소	5.89	7,068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대관령 옛길	대관령박물관~반정	6.33	7,59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2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09-1	
		반정~국사성황당	1.93	2,31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대공산성 순환 등산로	보광임도~대공산성~보광임도	8.00	9,60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삼형제봉 등산로	삼교임도~삼형제봉~삼교임도	4.66	5,59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	
	백두대간 등산로	대관령~능경봉~닭목재	12.77	15,32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닭목재~삽당령	15.00	18,00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1-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1-1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산56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59-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58	
	금강 소나무숲 둘레길	반정임도종점~제왕산임도종점	2.20	2,64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초막골 등산로	선자령정상~초막골	3.50	4,20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양양관리소	소계	8개 노선	40.41	48,492			
	조봉 등산로	미천골자연휴양림~조봉~미천골자연휴양림	6.20	7,440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	
	어성전 숲속 수련장 등산로	숲속수련장~590 고지~들미골폭포	4.41	5,29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구룡령 옛길	구룡령 옛길	3.00	3,600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갈천약수 등산로	갈천마을~갈천약수~백두대간 마루금	3.00	3,600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마산봉 등산로	흘리~마산봉~대간령	8.00	9,60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0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0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	
		대간령~도원임도	1.50	1,80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	
	백두대간트레일	장신마을~장신임도삼거리	5.30	6,36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	
		임도삼거리~진부령정상	9.00	10,80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8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8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8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9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0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1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1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3	
평창관리소	소계	25개 노선	243.35	292,020			
	계방산 등산로	이승복생가터~계방산	3.30	3,96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1	
		아랫삼거리~계방산	5.00	6,00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1	
		계방산~운두령	5.00	6,00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1	
	가리왕산 등산로	상장전~가리왕산 / 가리왕산~중왕산 / 중왕산~하안미 백일동	11.00	13,20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발왕산 등산로	용평리조트~발왕산, 발왕산~윗곧은골(1) / 발왕산~윗곧은골(2)	11.20	13,44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	
	백덕산 등산로	먹골~백덕산, 백덕산~비네소골(1) /백덕산~비네소골(2)/ 백덕산~사자산~문재터널	15.50	18,60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금당산 등산로	고대동~뾰족봉~법장사 / 법장사~거문산~금당산 / 심포동~금당산 / 금당동~금당산	10.00	12,00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900-1	
	능경봉 등산로	능경봉~대관령	1.80	2,16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선자령 등산로	대관령~선자령	13.30	15,96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	
	노인봉 등산로	진고개~노인봉	3.60	4,32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1	
	삼방산 등산로	위생사업소~삼방산~위생사업소	8.90	10,68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산80-1	
	백운산 등산로	백운산~샘터~문희마을, 백운산~문희마을, 백운산~전망대~문희마을	8.80	10,56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청옥산 등산로	육백마지기~청옥산, 청옥산~지동리, 청옥분교~회동리~청옥산,청옥분교~삿갓봉~청옥산	15.90	19,08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산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대미산 등산로	대미동~대미산~대미동	7.00	8,40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	
	장미산 등산로	봉황동~장미산~덕수산~봉황대	8.40	10,08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574	
	두타산 등산로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신기리 /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두타산자연휴양림	24.72	29,66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30-4	
	매산 등산로	핏대골~매산~운송골, 약수동~매산	8.90	10,68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77-1	
	백석산 등산로	샘터골~백석산~던지골	6.80	8,16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산100	
	백적산 등산로	모릿재~백적산, 골안이~백적산, 굴암사~백적산, 이목정리~백적산	13.10	15,72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30	
	장암산 등산로	아랫상리~장암산, 여남리~장암산	3.90	4,68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산120-2	
	태기산 등산로	메이플타운~태기산~구두미재	5.00	6,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80	
	백두대간 트레일	수하리~횡계3리	22.38	26,856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5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산악승마 레저 스포츠길	하안미리 남병산 임도	18.0	21,60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국민의 숲 트레킹	횡계리 국민의숲	3.95	4,74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33	
	회령봉 등산로	이방골~이방골	7.9	9,48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	
영월관리소	소계	7개 노선	38.24	45,888			
	백두대간트레일	주채동～삼동치	8.00	9,600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산10-1	
	백덕산 등산로	판운리~신선바위	1.34	1,60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3	
	완택산 등산로	한국래프팅～ 한국래프팅	9.00	10,8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81	
	태화산 등산로	홍교～고씨동굴	8.10	9,7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홍월리	산3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1-2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산2	
		오그란이～태화산성	2.70	3,24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1-2	
		큰골～정상	4.50	5,4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홍월리	산38	
	하늘숲길	도롱이연못～하이원C.C	4.60	5,520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정선관리소	소계	29개 노선	174.20	209,040			
	백석봉 등산로	새미골~백석봉~북평리	10.00	12,0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1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북평~백석봉~북평리	8.00	9,6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가리왕산 등산로	심마니교~어은골~가리왕산정상	5.00	6,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관광농원~중봉~가리왕산정상	7.00	8,4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마항치~주목군락지~가리왕산정상	3.00	3,6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	
		숙암분교~중봉~가리왕산정상	8.00	9,6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장구목이~가리왕산정상	7.00	8,4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두위봉 등산로	방제리~단곡계곡~두위봉	4.00	4,80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44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94-2	
		도사곡~쉼터~두위봉	5.50	6,60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	
		자미원역~작은골~두위봉	5.00	6,000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94-2	
		증산역~척산골~두위봉	6.00	7,200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5	
	노추산 등산로	절골~노추산정상	5.50	6,60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종량동~병풍바위~노추산정상	4.70	5,64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삼거리~이성대~노추산정상	4.90	5,88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백운산 등산로	점재마을~백운산정상~제장마을	6.70	8,040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덕천리	산146	
	반론산 등산로	고참골~반론산정상	1.50	1,80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고양산 등산로	적목동입구삼거리~고양산~뱃재~고양리 버스종점	17.00	20,40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산1	
	상정바위 등산로	문곡리주차장~전망대~상정바위	4.00	4,8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선양분교~철쭉군락지~상정바위	2.00	2,40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오반리버스종점~큰골~상정바위	8.00	9,60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상원산 등산로	하자개마을~상원산정상~하옥갑사	8.00	9,60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270-1	
	수병산 등산로	고적대~수병산	4.40	5,28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수병산~원방재	5.70	6,84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백복령 등산로	원방재~백봉령	7.90	9,48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백봉령~908고지	11.00	13,20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8-2	
	삽당령 등산로	908고지~삽당령	8.00	9,60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	
	하늘숲길	마운틴콘도~도롱이연못	3.60	4,32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3	
		도롱이연못~마운틴탑	1.30	1,56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3	
		낙엽송길~처녀치마길	1.50	1,80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3	
삼척관리소	소계	7개 노선	55.30	66,360			
	검봉산 등산로	휴양림~검봉산~휴양림	6.00	7,20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	
	백두대간등 산로	고적대~두타산	5.90	7,080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81	
		두타산~댓재	6.70	8,04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81	
		댓재~큰재	5.00	6,00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산55	
		큰재~덕항산	6.75	8,100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산55	
		덕항산~건의령	7.95	9,54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	산55	
	응봉산 등산로	덕풍마을~응봉산~덕풍마을	17.00	20,40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태백관리소	소계	34개 노선	141.50	169,800			
	백두대간등 산로	삼수령~두문동재	10.00	12,000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두문동재~만항재	8.00	9,6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6-1	
		만항재~화방재	3.00	3,6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57	
		화방재~깃대배기봉	9.00	10,8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건의령~삼수령	6.00	7,200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낙동정맥등 산로	천의봉~작은피재~대박동~우보산~통리	10.00	12,0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9	
		통리~백병산~덕거리봉	10.00	12,0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덕거리봉~토산령~면산~석개재	10.00	12,000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90-1	
	대조봉 등산로	혈암연탄입구~대조봉헬기장	3.00	3,6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한성2사택~대조봉	3.00	3,6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산업전사위령탑~대조봉헬기장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송이재~대조봉	3.00	3,6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9	
		예랑골채석장~대조봉	2.00	2,4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9	
	두타산 등산로	거무소골~두타산	2.00	2,40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문암산 등산로	장성터널~대명사~문암샘터~문암	2.00	2,4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문화동샘~박월산체육공원~박월산~문암	2.00	2,4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장성성당뒤화약골~문암체육공원~문암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목련아파트~화광체육공원~문암체육공원~문암	2.00	2,4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백병산 등산로	원통골체육공원~백병산~고비덕재~원통골체육공원	2.50	3,0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송내산 등산로	계산공동묘지~사베리재~계량촌샘~농공단지좌측	3.00	3,6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80	
		등광사~화약골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80	
		문곡풀장~사베리재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80	
		장명사~사베리재~장명사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80	
	연화산 등산로	송이재~연화산~투구봉~여성회관	4.00	4,8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한마음연림아파트~연화산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1대림아파트~연화산	1.00	1,2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연화산유원지~연화산	2.00	2,40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53	
	청옥산 등산로	구중봉분교입구~청옥산	7.00	8,40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큰거무소골~ 청옥산	7.00	8,40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태백산 등산로	유일사매표소~유일사쉼터~장군봉~천제단	4.00	4,8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백단사매표소~반재~망경사~천제단	4.00	4,8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당골매표소~반재~망경사~천제단	4.00	4,80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당골매표소~제당골~문수봉~천제단	7.00	8,40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화방재~사길령산령각~유일사쉼터~장군봉~천제단	5.00	6,000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2.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과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2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4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2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2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33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7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32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하천 평면, 종단, 횡단구조 기준 규정(안 제2조～제4조)

○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소하천시설에 대한 구조·재질, 배치기준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5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 044-205-5158(팩스번호 : 044-205-893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장～제3장)

○ 소하천 시설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4장～제10장)

○ 자연생태공간 및 친수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11장～제12장)

○ 재검토기한 등 행정사항(제13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 044-205-5158(팩스번호 : 044-205-893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방·대비 업무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 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다.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현행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6
- 이 메 일 : sgs243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가보훈처장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 이화장	박 진	2013. 4. 2.	○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의 연구와 선양 ○ 항일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건국사 그리고 6.25전쟁사 정리, 간행 ○ 이승만 박사의 유적보존과 유품의 수집 및 보관 ○ 이승만 박사의 건국사적지인 이화장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 이승만 박사의 추모행사와 학술강연회 개최 등	02-741-0815	기념사업과	대표자 변경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에스아이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 1.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썬앤트리자산운용

○ 승인일 : 2016년 12월 30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3,36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원	5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0,760,000주	7,400,000주	△3,360,000주
자본금		5,380,000,000원	3,700,000,000원	△1,680,000,000원

◉교육부공고제2016-368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互選”을 “호선(互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앙양”을 “높임”으로, “폐질”을 “장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FAX : 044-203-6909)

○ 이메일 : imagine14@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4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별표 1의6)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3. 의견 제출

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0, 6254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sylee229@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1호

업무 위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업무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통 일 부 장 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

o 위탁업무: 남북교역 · 경협 관리업무

o 위탁기간: 2017.1.1.~2017.12.31(1년)

*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

◉국방부공고제2017-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Mail : asell@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7. 1. 6. ~ 2017. 1. 19.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0.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041-635-4799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043-220-44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자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도로 명주소위 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신규】(1안)아산진천로, (2안)삼사로, (3안)서동로

구분	길이 (k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 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중심선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1	29.17	25	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장영실로 1380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260	충남, 경기, 충북	20m	1번부터 연속부여 (1~2917)	별첨	아산진천로	시・종점의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2										삼사로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3										서동로	도로의 방향을 이용하여 명명

* 국도 제34호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53호, 2016.7.13.)의 일부구간임

<별 첨> 중심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처분·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모집목적 : 참전용사 자녀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3. 승인내용(처분·사용계획)
   - 사용용도 :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재)향군장학재단에 잔액 이관
   - 잔액 : 1,087,074,792원 ※ 처분·사용기한 : 2016. 12. 3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26	0c0be4ee6c51f3f0916fc1d286c728b1
2016-12-27	40cd2fb2434abd5569a8f280ed40eef4
2016-12-28	b91154d9dff4b6a89a35dcc12a81a770
2016-12-29	cfeba655227ecbe06510eacbac273606
2016-12-30	b64d26461643dcb6edd18e20cce06f99
2016-12-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호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예술인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행위)의 중지

2. 대상

연번	업체명	성명	주소
1	㈜가을엔터테인먼트	추○○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 백제빌딩 304호
2	㈜코엔코퍼레이션	김○○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1502호(금호동 4가, 서울숲푸르지오)
3	-	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56번길 10, 동명아파트 나동 406호

3. 시정명령 사유

○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4.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5. 행정처분 내용

○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 행정처분 이행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6. 유의사항

○ 시정명령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나. 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34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50란에서 2017-1-772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생보우암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 춘 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 (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부산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1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경남 양산시 소재 물류시설(양산물류센터)을 매입하여 약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등록(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등록(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심은정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서울양원 등 4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운용(임대주택리츠에 부지 임대 등) 후 처분
 * 서울양원C-3BL, 고양지축B-7BL, 전주에코시티3BL, 전주 에코시티8BL
6. 변경인가일 :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4,411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석장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기업형임대주택(2,214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미추8대한제7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일부(2,114세대)를 선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우미대한제9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한옥형, 432세대)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 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양동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491세대)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1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양동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기업형임대주택(539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

나.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의 구조, 지반 관련 도서와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함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다.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 안전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등

라.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전문가 자문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평가비용

안전영향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 공공공사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벌칙 규정 신설 등

○ 건설기술 육성 제도 내실화를 통해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건설신기술 개발 여건 개선 등

2.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안전성 명시(안 제46조제1항)

○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원칙에 경제성·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하여 건설안전의 중요성 강조

나. 건설기술자 등의 의무 구체화

○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만 부과된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건설기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책임과 역할 강화(안 제39조제4항)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화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실시,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시 7일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의무 부여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다.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① 건설기술자의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미제출,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업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의2호)

※ 현행 업체에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건설기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자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등에 적용되던 행정처분을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등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안 제31조제2항제7호 마·바·사목)

* 미등록 기술인력이 품질시험 실시, 미확인 재료로 시험, 성적서 통합정보체계 미입력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③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적용 기간을 공사착공부터 하자담보 만료기간까지 확대(안 제85조제1항)

※ (기존) 공사준공~하자담보 만료기간 → (개정) 공사착공~하자담보 만료기간

④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안 제87조의2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안 제88조제1호의2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안 제84조제5호)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의 임직원 추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16.1)시 국민권익위(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마.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

①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업자와 건설업체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체결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②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9조제3의2호, 안 제89조제1의2호)

③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부실·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기준*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교육 유도(안 제20조제5항 신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대행자격 획득, 교육·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건축설계 사업수업능력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건축설계 제외(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⑤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는 건설기술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형입찰* 및 설계공모에 통합·운영(안 제36조 폐지)

* 기술형입찰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실시 기술제안입찰

※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청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협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 발생 소지 높음

바. 기타

○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취소 기준* 구체화(안 제51조제3항)

* 금고 이상의 형,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우수업자 선정 결격사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경영개선명령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제4항)

※ 현행「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고시)」 규정을 법률로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병무청공고제2017-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1. 신고의무자					
소속	경상북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직위 직급	과장 지도관	성명	최기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기연	1961.11.17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일병 ③입영(임관)일자: 19820911 ④전역(해제)일자: 19831105 ⑤전역(해제)사유: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최재호	1989.05.30	①병역처분일자: 20160607 ②병역처분사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경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경태	1965.01.04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병장 ③입영(임관)일자: 19860122 ④전역(해제)일자: 19880616 ⑤전역(해제)사유: 만기	
장남	김종훈	1997.02.11	①병역처분일자: 20160426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승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승희	1960.08.29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일병 ③입영(임관)일자: 19810523 ④전역(해제)일자: 19820802 ⑤전역(해제)사유: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김진한	1989.02.27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병장 ③입영(임관)일자: 20101005 ④전역(해제)일자: 20120713 ⑤전역(해제)사유: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재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재훈	1968.01.22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병장 ③입영(임관)일자: 19880408 ④전역(해제)일자: 19900816 ⑤전역(해제)사유: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정병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병진	1964.02.27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병장 ③입영(임관)일자: 19850628 ④전역(해제)일자: 19880225 ⑤전역(해제)사유: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정홍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홍석	1980.04.25	①군별(복무분야): 육군 ②계급: 이병 ③입영(임관)일자: 20080417 ④전역(해제)일자: 20100514 ⑤전역(해제)사유: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최상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상열	1965.06.2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0702 ④전역(해제)일자:198812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허윤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허윤선	1976.05.1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	직위 직급	학장 교수	성명	마득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마득상	1964.02.13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대위 ③임관일자:19910420 ④전역(해제)일자:19940430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 전역	
장남	마진욱	1993.03.31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161017 ④복무부대(복무기관):공군교육사령부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	직위 직급	학장 교수	성명	최현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현숙	1956.09.2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강원대학교	직위 직급	학장 교수	성명	박해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해일	1957.09.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840402 ④전역(해제)일자:1990040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장남	박윤식	1995.04.15	①병역처분일자: 20130101 ②병역처분사항: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강원대학교	직위 직급	학장 교수	성명	이종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종민	1960.10.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0822 ④전역(해제)일자:198811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진규	1989.08.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91013 ④전역(해제)일자:201108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경북대학교	직위 직급	총장 교수	성명	김상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상동	1959.05.1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20825 ④전역(해제)일자:198408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영각	1997.01.17	①병역처분일자: 20160809 ②병역처분사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경북대학교	직위 직급	기획처장 교수	성명	이상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상무	1960.01.0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20116 ④전역(해제)일자:198406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두희	1989.07.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90330 ④전역(해제)일자:201101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경북대학교	직위 직급	처장 교수	성명	채수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채수도	1966.02.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0129 ④전역(해제)일자:198808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채승훈	1992.07.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31021 ④전역(해제)일자:201507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경북대학교	직위 직급	처장 교수	성명	황의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황의욱	1968.12.0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930531 ④전역(해제)일자:200102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장남	황도연	1998.06.26	①병역처분일자: 20160101 ②병역처분사항: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직위 직급	기획처장 교수	성명	김강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강욱	1963.03.2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소위 ③임관일자:19880220 ④전역(해제)일자:1988022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군산대학교	직위 직급	인문대학장 교수	성명	이혜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혜자	1956.08.2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김동훈	1982.09.3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50602 ④전역(해제)일자:200706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목포해양대학교	직위 직급	교무처장 교수	성명	조대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대환	6402.29.16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소위 ③임관일자:19860301 ④전역(해제)일자:1990080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장남	조영진	1991.05.0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20529 ④전역(해제)일자:201402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전북대학교	직위 직급	학장 교수	성명	강형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형섭	1965.04.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0312 ④전역(해제)일자:198809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강병문	1994.06.13	①병역처분일자: 20140711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전북대학교	직위 직급	처장 교수	성명	이철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철로	1961.07.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00307 ④전역(해제)일자:198208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정민	1988.01.29	①2006년 병역면제(질병) ② 질병명 : 하지의 단축	

1. 신고의무자					
소속	교육부 한국복지대학교	직위 직급	총장	성명	이상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상진	1958.05.1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20921 ④전역(해제)일자:198409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창훈	1992.10.2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50108 ④전역(해제)일자:201610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구태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구태선	1960.03.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10725 ④전역(해제)일자:198311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권승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승수	1958.02.19	①1978년 5급 전시근로역(신장미달)	
장남	권희준	1987.03.2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70212 ④전역(해제)일자:200903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차남	권희수	1988.08.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80708 ④전역(해제)일자:201005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팀장 서기관	성명	김석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석기	1966.08.0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1127 ④전역(해제)일자:198905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팀장 서기관	성명	류재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류재호	1958.10.0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19790329 ④전역(해제)일자:1982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류진영	1989.02.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91208 ④전역(해제)일자:201109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소장	성명	방형남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방형남	1957.10.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780428 ④전역(해제)일자:198009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방시원	1987.02.2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70529 ④전역(해제)일자:200905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우동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우동교	1963.09.2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40326 ④전역(해제)일자:198610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우승태	1995.06.19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20160620 ④복무부대(복무기관):11전투비행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동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동희	1965.01.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19850826 ④전역(해제)일자:198610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이용규	1995.01.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③입영(임관)일자:20150608 ④복무부대(복무기관):제30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민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민정	1980.11.0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위 직급	상임이사 임원	성명	김우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우경	1958.02.15	①1978년~1780년 병역판정검사연기(재학생) ②1981년 병종 전시근로역(질병) ③질병명:수핵탈출증고도	
장남	김학재	1988.05.21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90216 ④전역(해제)일자:201103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김학준	1990.10.05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00118 ④전역(해제)일자:201202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강인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인순	1965.12.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20기계화보병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소장	성명	강창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창구	1966.01.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55보병사단	
장남	강동우	1994.10.2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410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60713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비서실장 소장	성명	구재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구재서	1964.11.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202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본부	
장남	구광현	1990.12.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204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40123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권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삼	1964.07.0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3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31보병사단	
장남	권정우	1993.01.13	①병역처분일자:20120405 ※비고:2012.5.5.~국외입영연기(24세이전출국)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김성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성도	1963.08.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30사단	
장남	김동규	1993.06.22	①군별(복무분야):의무소방원 ③입영(임관)일자:20150409	②계급:병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청주서부소방서	
차남	김동휘	1995.10.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50907	②계급:상병 ④복무부대(복무기관):제9공수특전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김정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정유	1965.09.0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17사단	
장남	김성재	1992.01.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207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40408	
차남	김성운	1994.02.22	①병역처분일자: 20121009	②병역처분사항: 학군사관후보생편입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김종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종철	1965.02.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7사단	
장남	김영균	1992.05.28	①군별(복무분야):사회복무요원 ③입영(임관)일자:20151221	②계급:이병 ④복무부대(복무기관):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	
차남	김영진	1993.07.1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503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61202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령관 소장	성명	박노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노천	1963.11.25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임관일자:1987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잠수함사령부	
장남	박민규	1993.09.21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입영(임관)일자:2013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41206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방종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방종관	1965.04.0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8기계화보병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소장	성명	이성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성환	1964.12.26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임관일자:1987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국방부	
장남	이재선	1991.12.24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입영(임관)일자:201102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30113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이진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진성	1963.03.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51220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36보병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이진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진형	1966.02.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임관일자:19880301	②계급:소장 ④복무부대(복무기관):6사단	
장남	이재강	1992.09.04	①병역처분일자: 20111124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사단장 소장	성명	정재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재학	1962.09.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소장 ③임관일자:19860301 ④복무부대(복무기관):50보병사단	
장남	정현민	1993.03.22	①병역처분일자:20120927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비고:2015.4.14.학군사관후보생편입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직급	본부장 소장	성명	한철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한철기	1964.04.2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소장 ③임관일자:19860328 ④복무부대(복무기관):국방부	
장남	한홍귀	1990.09.0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10314 ④전역(해제)일자:201212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강동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동기	1979.07.2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90906 ④전역(해제)일자:20011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정책연구위원 2급상당	성명	권영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영희	1973.06.2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김남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남규	1968.09.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19880830 ④전역(해제)일자:199101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김남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남기	1966.06.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920713 ④전역(해제)일자:19921029 ⑤전역(해제)사유:의병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김용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용연	1964.02.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40425 ④전역(해제)일자:198607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노병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노병근	1963.08.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30928 ④전역(해제)일자:198608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노도균	1991.06.2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20130502 ④전역(해제)일자:201311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박금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금직	1968.10.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19901008 ④전역(해제)일자:199202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박혁주	1995.07.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20160411 ④복무부대(복무기관):제2보급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박노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노철	1966.05.1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70220 ④전역(해제)일자:198908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박선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선민	1973.01.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이의연	1997.05.30	①병역처분일자: 20160906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박호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호영	1974.02.0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40623 ④전역(해제)일자:199608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오정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정훈	1975.08.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80115 ④전역(해제)일자:200003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오창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창유	1972.09.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21026 ④전역(해제)일자:19950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유승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유승준	1970.09.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③입영(임관)일자:19901008 ④전역(해제)일자:1992031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유지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유지영	1968.07.2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20623 ④전역(해제)일자:199407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이명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명동	1965.04.08	①1984년 2급 보충역(독자) ②1986년 소집면제(생계곤란)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이상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상호	1966.09.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61028 ④전역(해제)일자:198902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영은	1993.05.18	①군별(복무분야):학군사관후보생 ②계급:소위 ③임관일자:20160301 ④복무부대(복무기관):65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이충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충희	1958.06.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770131 ④전역(해제)일자:197910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준호	1986.03.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100628 ④전역(해제)일자:201206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이태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태훈	1975.10.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50418 ④전역(해제)일자:199706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임수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임수강	1962.05.30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중위 ③임관일자:19850801 ④전역(해제)일자:19880731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정용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용래	1968.10.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10327 ④전역(해제)일자:199307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입법조사관 서기관	성명	최지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지현	1982.09.0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추경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추경민	1971.01.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940428 ④전역(해제)일자:19960121 ⑤전역(해제)사유:수형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직위 직급	이사 상임이사	성명	이종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종옥	1959.09.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00820 ④전역(해제)일자:198304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온유	1992.09.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30318 ④전역(해제)일자:201412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이은총	1994.05.10	①군별(복무분야):의무경찰 ②계급:이경 ③입영(임관)일자:20150521 ④복무부대(복무기관):시흥경찰서	
3남	이평안	1996.06.1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20160426 ④복무부대(복무기관):3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직위 직급	팀장 농업연구관	성명	이경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경숙	1962.05.1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김바로	1987.11.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00413 ④전역(해제)일자:20120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농촌진흥청	직위 직급	팀장 농업연구관	성명	조용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용빈	1966.10.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90928 ④전역(해제)일자:199112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조상희	1994.07.15	①병역처분일자: 20160714 ②병역처분사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직급	행정관 3급상당	성명	임성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임성규	1961.06.03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19820608 ④전역(해제)일자:198308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임종헌	1987.01.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70319 ④전역(해제)일자:200902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임종률	1989.01.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00601 ④전역(해제)일자:201203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목포시의회	직위 직급	시의원(기초)	성명	김종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종선	1955.02.1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19760306 ④전역(해제)일자:1977051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김성신	1984.05.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40113 ④전역(해제)일자:200601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도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도환	1967.07.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90406 ④전역(해제)일자:199106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김보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보현	1969.08.10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중위 ③임관일자:19930616 ④전역(해제)일자:19960630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김정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정하	1962.04.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40620 ④전역(해제)일자:198611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정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정훈	1981.05.04	①2000년 3급 현역병입영대상 ②2000년~2003년 입영연기(재학생) ③2004년 정밀의뢰 ④2004년 5급 전시근로역(병역처분변경원) ⑤질병명:불안정성대관절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준모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준모	1973.02.19	①1992년 5급 전시근로역(질병) ② 질병명 : 선천성심장질환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박병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병현	1979.11.1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00724 ④전역(해제)일자:200209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전문임기제가급	성명	박성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성현	1979.07.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00410 ④전역(해제)일자:200206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박인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인호	1962.10.0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30121 ④전역(해제)일자:198507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박동준	1989.11.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81028 ④전역(해제)일자:201009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심혜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심혜영	1979.04.1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안경화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안경화	1964.07.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최성환	1993.07.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31008 ④전역(해제)일자:201507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윤두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윤두희	1973.07.0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00301 ④전역(해제)일자:2004113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제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제준	1976.04.0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10321 ④전역(해제)일자:2003072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임재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임재덕	1967.03.1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90912 ④전역(해제)일자:19911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비서관 서기관	성명	조종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종영	1983.01.16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중위 ③임관일자:20081101 ④전역(해제)일자:201110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한성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한성일	1981.02.1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10109 ④전역(해제)일자:2003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고희명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고희명	1964.09.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841119 ④전역(해제)일자:19850518 ⑤전역(해제)사유:독자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김영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영숙	1970.10.2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노미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노미숙	1965.12.2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박애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애서	1976.09.2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정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정숙	1973.07.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채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채희	1971.10.1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최형묵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형묵	1967.04.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80325 ④전역(해제)일자:199006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권혜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혜나	1981.06.1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김민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민정	1982.06.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정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정연	1980.09.0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학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학진	1965.09.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50109 ④전역(해제)일자:198704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윤기	1994.11.2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③입영(임관)일자:20150629 ④복무부대(복무기관):을지부대	
차남	김문기	1996.08.28	①병역처분일자: 20150826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희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희봉	1964.03.0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00709 ④전역(해제)일자:199210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송병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송병일	1966.08.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③입영(임관)일자:19870413 ④전역(해제)일자:1988101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송민규	1997.09.25	①병역처분일자: 20160907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유정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유정민	1984.01.3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창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창섭	1961.02.16	①1981년 정종 병역면제(질병) ②질병명: 비공개	
장남	이민교	1997.03.16	①병역처분일자: 20160617 ②병역처분사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서기관	성명	임강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임강섭	1980.09.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10205 ④전역(해제)일자:200306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정제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제혁	1974.04.1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40406 ④전역(해제)일자:2007040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최승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승현	1973.10.06	①1992년 5급 전시근로역(질병) ② 질병명 : 기흉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하태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하태길	1971.02.2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10813 ④전역(해제)일자:2003091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소방본부	직위 직급	관장 지방소방정	성명	곽승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곽승열	1958.03.1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790327 ④전역(해제)일자:1982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곽재송	1989.09.2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90428 ④전역(해제)일자:201102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소방본부	직위 직급	단장 지방소방정	성명	박철만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철만	1960.09.2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19800424 ④전역(해제)일자:198212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박문혁	1985.01.2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40730 ④전역(해제)일자:200607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박문진	1987.08.22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60724 ④전역(해제)일자:200807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소방본부	직위 직급	담당관 지방소방정	성명	서명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서명근	1960.03.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10620 ④전역(해제)일자:198401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서승현	1990.07.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00420 ④전역(해제)일자:201202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직위 직급	관장 학예연구관	성명	이원복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원복	1954.03.1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770221 ④전역(해제)일자:19770818 ⑤전역(해제)사유:독자	
장남	이관식	1980.05.0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11218 ④전역(해제)일자:200402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 부천혜림원	직위 직급	원장	성명	권미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미영	1964.04.2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직위 직급	상임이사	성명	손경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손경연	1962.09.1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직위 직급	상임이사	성명	정희남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희남	1958.04.0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③입영(임관)일자:19781027 ④전역(해제)일자:198107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정주현	1994.08.13	①병역처분일자: 20160816 ②병역처분사항: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위 직급	상임이사	성명	선석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선석기	1961.11.10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820406 ④전역(해제)일자:19821001 ⑤전역(해제)사유:독자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1등서기관 외교통상6등급	성명	김남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남기	1979.06.18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000529 ④전역(해제)일자:20021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1등서기관 외교정보기술6등급	성명	김재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재향	1973.05.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외교통상6등급	성명	박윤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윤래	1976.03.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1등서기관 외교통상6등급	성명	박은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은진	1983.11.1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외교통상6등급	성명	안지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안지인	1980.09.0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성명	양호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양호인	1974.07.11	①1992년 병역면제(영주권)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1등서기관 외교통상6등급	성명	유명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유명진	1982.08.1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외무영사6등급	성명	이한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한일	1970.06.0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91108 ④전역(해제)일자:199204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외교통상6등급	성명	이현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현승	1984.01.1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영사 외무영사6등급	성명	정수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수현	1978.12.2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성명	정종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종휴	1950.11.2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711224 ④전역(해제)일자:197408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정호석	1985.07.2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050411 ④전역(해제)일자:2007061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차남	정용석	1986.11.22	①군별(복무분야):사회복무요원 ②계급: - ③입영(임관)일자:20151030 ④복무부대(복무기관):동대문구청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외교통상6등급	성명	최종윤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종윤	1981.08.0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③임관일자:20040301 ④전역(해제)일자:2006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참사관 외교통상6등급	성명	홍상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홍상희	1975.02.2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황선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황선옥	1963.11.2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조영탁	1991.06.2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20903 ④전역(해제)일자:201406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전주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직위 직급	원장	성명	정동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동철	1967.08.2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80712 ④전역(해제)일자:199011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위 직급	상임감사 임원	성명	김현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현태	1961.07.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820309 ④전역(해제)일자:198408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동욱	1993.01.2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21029 ④전역(해제)일자:201407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충청북도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직위 직급	원장	성명	김진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진태	1959.03.0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780909 ④전역(해제)일자:198104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재영	1991.10.1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20111017 ④전역(해제)일자:201307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포항시 재단법인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직위 직급	원장	성명	이종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종봉	1953.02.2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③입영(임관)일자:19760308 ④전역(해제)일자:1977041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김종모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종모	1972.06.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③입영(임관)일자:19940728 ④전역(해제)일자:199610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직급	감사 기술서기관	성명	이영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영태	1962.01.1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19840716 ④전역(해제)일자:198907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장남	이도균	1993.10.2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③입영(임관)일자:20140228 ④전역(해제)일자:201602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차남	이대균	1995.09.25	①2014년 7급 재신체검사대상 ②2015년 5급 전시근로역(질병) ③질병명: 비공개	

◉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npkyida@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4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피데스투자파트너스(주) (이창형)	제2015-260호	2016.12.28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09, 9층(청담동, 에이앤에스타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 폐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 항만명 : 군산항
   - ○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건축
4. 공사의 목적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항만이미지 개선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75번지 일원
   - ○ 규모 :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 26,000㎡
     - 토목공 : 아스콘 포장 2,625㎡ 등
     - 조경공 : 수목식재 1식(교목류 487주, 관목류 10,353주, 잔디 7,666㎡), 시설물 설치 1식(조합놀이대 외 19종), 조경포장공 1식(화강석포장 1,367㎡ 등)
     - 건축공 : 화장실 2동
   - ○ 기간 : 2017. 3. ~ 2018. 9.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 방법 : 도급 및 관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하	단	기	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2. 2.(목) 14: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철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제조업 (제2548호)	㈜동성웰빙홈	김명*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101호
제조업 (제1850호)	한석온텍	맹선*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8, 천지빌딩 3층
제조업 (제807호)	㈜한주광학	한종*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제조업 (제1605호)	㈜조아스전자	오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199번길 47, A동 2층, B동
제조업 (제3982호)	㈜에이치아이티	조우*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80번길 24-27
제조업 (제891호)	㈜한양메디칼	조용*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131번길 3
제조업 (제1398호)	우림기계	김현*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66
제조업 (제1193호)	티씨엔젤(주)	현기*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길 46, 1동 1, 2층
제조업 (제2517호)	배설의학(주)	배영*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20, 비동 3층
제조업 (제2878호)	㈜킴스바이오메드	최광*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25, 광성빌딩 3층

제조업 (제4465호)	㈜자일럭스	임락*	-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39, 401호
제조업 (제3532호)	길우상사	김순*	-	서울시 종로구 종로35길 9, 205호
제조업 (제536호)	㈜에스엠메디칼	안승*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1공단 30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구 식품등수입판매업)	㈜와이투엠테크 (김*국)	제20090320666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신풍플로스타 305호)	

2. 처분 사항

○ 등록취소 (2017.01.1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1	제 018684 호	㈜에스투엠	김병찬
2	제 013737 호	㈜구름인터렉티브	박영수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에스투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을 체납하였고, ㈜구름인터렉티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주민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구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12.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압류된 각 건에 대하여는 향후 매각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압류 후에도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8, 172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어, 최대 77%까지 가산됨.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체납자 주소	압류일	압류관련 체납액
1	0185130191980006646	박현우	770307-*******	대구광역시 서구서대구로23길	2016-12-20	180,000,000
2	0185130191980006495	최훈석	84122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016-12-20	16,200,000
3	0185130191980006497 0185130191980006498	장혁	60031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80번길	2016-12-20	36,000,000
4	0185130191980006532 0185130191980006533 0185130191980006381 0185130191980006252	소병복	720303-*******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794번길	2016-12-20	56,160,000
5	0185130191980006478 0185130191980006479	최순자	630323-*******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안뜸1길	2016-12-20	36,000,000
6	0185130191980005700	이욱기	831223-*******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49번길	2016-12-20	7,938,000
7	0185130191980005125	유영만	581115-*******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북말길	2016-12-20	18,900,000
8	0185130191980007986	김시우	65020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9길	2016-12-20	5,670,000
9	0185130191980007999	우현근	810128-*******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499번길	2016-12-20	5,670,000
10	0185130191980008140	김만호	780114-*******	서을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2016-12-20	5,670,000
11	0185130191980009629	이강선	591006-*******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240번길	2016-12-20	5,670,000
12	0185140191980000193	변영원	6503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53길	2016-12-20	5,670,000
13	0185140191980000239	황재익	680928-*******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2016-12-20	5,103,000
14	0185140191980000257	고한웅	8511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2016-12-20	5,670,000
15	0185130191980005759	㈜엔터온구(주)하이엠	110111-2232299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4길	2016-11-25	4,339,440
16	0185130191980005594	(주)대한이동통신	110111-3649857	서울 관악구 남현4길	2016-11-25	17,841,600
17	0185130191980004742	(주)대한이동통신	110111-3649857	서울 관악구 남현4길	2016-11-25	53,100,000
18	0185130191980000305	디에이동아투어(주)	110111-08219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016-11-25	7,087,500
19	0185130191980007229	동양종합건설-주(정진건설)	131111-02434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7번길	2016-11-25	6,750,000
20	0185140191980001888	동양종합건설-주(정진건설)	131111-02434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7번길	2016-11-25	13,500,000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체납자 주소	압류일	압류관련 체납액
21	0185130191980007237	에이치에이(주)	110111-418307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16-11-25	7,087,500
22	0185130191980007719	(주) 소셜커뮤니케이션(현주 다섯색깔무지개)	110111-44769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2016-11-25	7,087,500
23	0185130191980008004	정원이노베이션(현 주 개인채무회생커뉴니티)	110111-492758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1길	2016-11-25	7,875,000
24	0185130191980008549	주식회사 인투앰	110111-4889882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2016-11-25	7,087,500
25	0185130191980009485	주식회사 임신부닷컴	110111-3569724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16-11-25	7,087,500
26	0185140191980000262	㈜프리미어빌	110111-3328344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38길	2016-11-25	7,087,500
27	0185140191980001134	주식회사 한샘에듀	110111-4233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016-11-25	7,087,500
28	0185140191980001137	주식회사 티씨엠유코리아	110111-3936262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016-11-25	3,150,000
29	0185130191980005788	(주)수양전설	110111-0847644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63길 67	2016-11-30	354,000
30	0185130191980005789	현대올림픽주택(주)	110111-0759849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2016-11-30	354,000
31	0185130191980005659	한국위치정보(주)	110111-3176024	서울 중구 소공로	2016-11-30	8,850,000
32	0185130191980005238	한국위치정보(주)	110111-3176024	서울 중구 소공로	2016-11-30	26,550,000
33	0185130191980004945	주식회사 중앙건설(현주 리코)	134811-004167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2016-11-30	212,400
34	0185130191980004672	삼성환경산업(주)	115911-00518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016-11-30	354,000
35	0185130191980004396	장훈건설㈜	110111-2585086	서울시 마포구 광성로	2016-11-30	210,000
36	0185130191980004127	반석토건(주)	110111-148504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2016-11-30	210,000
37	0185130191980000786	㈜정화엔지니어즈	110111-2044727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2016-11-30	315,000
38	0185130191980008724	기야건설(주)	131111-00408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016-11-30	315,000
39	0185130191980000907	박경희	660212-*******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29번길	2016-12-19	1,575,000
40	0185130191980000207	최지일	800725-*******	경기 부천시 고강로40번길	2016-12-19	5,103,000
41	0185130191980008193	이옥희	680907-*******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47번길	2016-12-19	1,575,000
42	0185140191980001810	한호수	75012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2016-12-19	3,150,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7-101호

2017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7~ 3. 9	3.18.토	3.18~3.20	3.23.목	3.25.토	3.27.월
2	6. 5~ 6. 8	6.17.토	6.17~6.19	6.22.목	6.24.토	6.26.월
3	9. 5~ 9. 7	9.16.토	9.16~9.18	9.21.목	9.23.토	9.25.월
4	11. 7~11. 9	11.18.토	11.18~11.20	11.23.목	11.25.토	11.27.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 장소는 각 회별 공고문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전 직종 및 등급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시행 안함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고객마당 ➔ 자료실 ➔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 인터넷접수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해기사 ➔ 접수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지 역	기관명	접수장소	소재지
부 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인 천	연수원 인천사무소	〃	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18:00까지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cm×세로 4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4) 응시 수수료

구 분	금 액
1급~2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직 종	시험과목	비 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 수에는 차이가 있음 - 시행령 별표2참조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4과목	100분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 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관리팀, 인천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 락 처	
		전 화	FAX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1899-3600	051-624-9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051-620-5831~3	051-626-7556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전시문화빌딩 5층) 22133, 인천시 남구 주안로 11 (주안동 130-3)	032-765-2335~6	032-765-4565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5호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BL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11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

1. 사 업 명

○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1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전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13,500	
③ 건 축 면 적 (㎡)			4,034.84	
④ 건축 연면적 (㎡)			44,556.03	
⑤ 건 폐 율 (%)			29.89	
⑥ 용 적 률 (%)			202.5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3개동 (지하2층, 지상6~22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행복주택)	17㎡ 300세대 29㎡ 120세대 36㎡ 180세대	
		계	총 600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 06. ~ 2019. 12	
⑨ 부대 복리 시설	경로당		228.81㎡	
	보육시설		342.57㎡	
	작은도서관		258.10㎡	
	소셜다이닝		25.93㎡	
	경비실		19.70㎡	
	다목적실		216.72㎡	
	관리사무소		328.21㎡	
	사회적기업		71.98㎡	
	바이크스테이션		33.60㎡	
	근린생활시설		143.75㎡	
	공동세탁실		103.95㎡	
	전기실/발전기실		306.68㎡	
	기계실/저류조		570.60㎡	
	지하주차장-1		6,366.66㎡	지하 404대
	지하주차장-2		8,415.26㎡	
	어린이놀이터		237.08㎡	
	외부주민운동시설		363.40㎡	
⑩ 공동저수시설			480 ton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행복 주택)	17A㎡	110	17.88	13.99	31.87	19.96	51.83
		17B㎡	184	17.97	13.82	31.79	20.07	51.86
		17C㎡	6	17.95	13.83	31.78	20.04	51.82
		29A㎡	54	29.78	22.19	51.97	33.27	85.24
		29BS㎡	66	29.93	21.96	51.89	33.42	85.31
		36A㎡	140	36.02	26.51	62.53	40.21	102.74
		36B㎡	40	36.91	27.90	64.81	41.21	106.0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5호

학교(동탄중앙고(구. 화성동탄(2) 제1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정정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44호(2016.12.21.)로 고시된 (가칭)화성동탄(2) 제1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에 대하여, 학교부지 확정측량 면적변경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동탄중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67번지

(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1대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3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당 초	변 경
(1)	교지면적	:	13,055.00㎡	12,985.30㎡
(2)	건축면적	:	3,515.32㎡	3,515.32㎡
(3)	건축연면적	:	12,656.78㎡	12,656.78㎡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2. 19. ~ 2016. 12. 20. 끝.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가칭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 립

나. 명칭 : “가칭” 논산나래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7,17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177㎡

다. 건축면적 : 3,631.99㎡

라. 건축연면적 : 10,789.6㎡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통학으로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여건 개선과 장거리 통학을 해소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끝.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진해신항초등학교(신항1초)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진해신항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1,635.06㎡, 건축면적: 4,265㎡

○ 대지면적 : 11,223.10㎡

5.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진해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 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김해수남고등학교(율하2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김해수남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402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4,578.97㎡, 건축면적: 3,948.25㎡
 ○ 대지면적 : 14,084.80㎡
5.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울산)울주군고시제2017-7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등억야영장 조성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5-1번지 일원
 ○ 면 적 : 32,3583㎡

○ 규 모 : 오토캠핑장 48면, 캐라반 20동, 편의시설 2동, 관리동 2동, 주차장 108면, 도로시설 L=1,026㎡, 계류 및 폰트, 어린이놀이터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8. 12.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5-95호(2015. 5. 20.)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인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B내(초3)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2)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인덕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5,000.0㎡

2) 건 축 면 적 : 3,825.56㎡

3) 건축 연면적 : 13,620.71㎡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8.03.31. 까지

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B (초3)	학	15,000	15,000	대구 북구 산격동1111-4	경상북도교육감	
합계				15,000	15,000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	매각방법
1	정자분교장	인제군 남면 정자리	361 365-1 366	토지	학	16,314	수의계약 (인제군)
					전	136	
				입목죽 등 일체			

2. 매각사유

가. (폐)정자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인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7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7. 1. 5. ~ 2017. 2. 3. (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김선희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인 사

관세청

부이사관 제영광(諸英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감사관에 보함

2016.12.26.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보익(張寶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6.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부이사관 정철우(鄭喆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보함

2016.12.30.

국세청

부이사관 조정목(曺楨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6.12.30.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이세윤(李世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12.31.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원(金泰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규종(朴圭鍾)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병호(鄭炳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철(李在哲)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기훈(權奇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경진(鄭京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최태붕(崔台朋)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17.1.1.~2019.12.31.)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준감 정완택(鄭完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6.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노길상(盧吉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30.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훈(金明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농촌진흥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라승용(羅昇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관 강양수(姜陽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박현수(朴賢洙)

총경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이상국(李相國)

총경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최용석(崔容碩)

총경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정 김택수(金澤洙)

총경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단양경찰서장

경정 정영오(鄭榮午)

총경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강헌수(姜憲秀)

총경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김철문(金喆文)

총경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김황구(金晃九)

총경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장

경정 장창우(張昌禹)

총경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영광경찰서장

경정 임춘석(林春石)

총경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성주경찰서장

경정 도준수(都俊秀)

총경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고령경찰서장

경정 여경동(呂慶東)

총경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장

경정 김인규(金仁圭)

총경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장

경정 박병기(朴炳起)

총경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정 박찬영(朴讚永)

총경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정 오충익(吳忠益)

총경에 임함

2016.12.31.

경찰청

경감 서승환(徐承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준열(金俊烈)

경정에 임함

2016.12.3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손영만(孫泳晩)

경정에 임함

2016.12.3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오부걸(吳富傑)

경정에 임함

2016.12.3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전진호(田辰浩)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경배(金冏背)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오승철(吳昇哲)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제갈오현(諸葛五鉉)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차재문(車載文)
경정에 임함
2016.12.3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래환(朴來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순찬(朴淳贊)
경정에 임함
2016.12.3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백일환(白一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최상욱(崔商旭)
경정에 임함
2016.12.31.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최윤석(崔倫碩)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항수(金抗洙)
경정에 임함
2016.12.31.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유정선(柳晶善)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고태완(高兌琓)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도형(金度衡)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용국(金容國)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정석(金政錫)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태환(金泰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한석(金翰奭)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상선(朴相善)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상준(朴祥俊)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양금석(梁今錫)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이이식(李利植)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임홍준(任洪俊)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정형은(鄭瀅殷)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최호석(崔祜碩)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한석봉(韓昔鳳)
경정에 임함
2016.12.3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홍기원(洪基源)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고경호(高慶昊)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김영구(金永九)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박유훈(朴有勳)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신동현(申東現)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양영주(楊永周)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양진호(梁珍昊)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이규탁(李圭卓)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임경빈(任慶彬)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장남철(張南喆)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전준석(田準錫)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정성기(鄭聲奇)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정용섭(鄭容燮)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한광규(韓光奎)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한혜선(韓惠先)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허석봉(許錫鳳)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허성수(許成守)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강성호(姜聲鎬)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김주영(金周營)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류인화(柳寅化)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서호양(徐鎬洋)
경정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고석현(高錫顯)
경정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인구(金寅九)
경정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안형배(安炯培)
경정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원용구(元容求)
경정에 임함
2016.12.3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홍규철(洪圭哲)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김경태(金敬泰)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재성(李在晟)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송동헌(宋東憲)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송석명(宋錫明)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지상호(池相昊)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명겸(金明謙)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범수(金範洙)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현수(金炫秀)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소준관(蘇峻觀)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양광모(梁光模)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선우(李善雨)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준근(李俊根)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정정민(鄭貞旼)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조성환(趙成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지충진(池忠鎭)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최정환(崔正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한상호(韓相虎)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감 박병연(朴柄衍)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유인만(柳寅萬)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만석(李滿石)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상곤(金相坤)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배도길(裵道吉)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성봉섭(成奉燮)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상오(李湘五)
경정에 임함
2016.12.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장보은(張輔恩)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진규(金珍奎)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서병철(徐炳哲)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상영(李相榮)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용두(李庸斗)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전주형(全周炯)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정용우(鄭鏞佑)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구민철(具敏哲)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수영(金秀英)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수환(金守煥)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용복(金龍福)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종호(金鍾昊)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박종철(朴鍾哲)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박형규(朴炯奎)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윤광호(尹光浩)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양현철(梁賢喆)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임찬홍(林燦興)

경정에 임함

2016.12.3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정성훈(鄭聖勳)

경정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박맹준(朴孟峻)

경정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이길형(李吉珩)

경정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장기천(張基千)

경정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최창복(崔彰福)

경정에 임함

2016.12.3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하준영(河俊榮)

경정에 임함

2016.12.3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김동현(金東顯)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서진교(徐震敎)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이근영(李根永)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윤성태(尹成泰)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황순일(黃淳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김녹범(金綠凡)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총경 구장회(具章會)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총경 권세도(權勢徒)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총경 김균(金均)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총경 이봉행(李捧行)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총경 임정섭(林正燮)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강원도지방경찰청

총경 박성수(朴成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강원도지방경찰청

총경 안승일(安承一)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강원도지방경찰청

총경 이병하(李炳夏)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강원도지방경찰청

총경 홍순광(洪淳光)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총경 김석돈(金錫暾)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총경 이문국(李文國)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총경 이병환(李秉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총경 장권영(張權煐)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총경 강윤경(姜閏慶)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총경 박병동(朴昞東)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총경 김수룡(金秀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총경 정우동(鄭佑東)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총경 김명일(金明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총경 박이갑(朴二甲)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총경 박종열(朴宗烈)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총경 고성욱(高性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강병룡(姜秉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명수(金明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상구(金相九)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상근(金相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영택(金榮澤)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화철(金華哲)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형식(金亨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박종권(朴鍾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박흥규(朴興奎)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배수오(裵壽梧)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윤돈원(尹暾遠)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윤정상(尹晶相)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이광수(李光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이병익(李柄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이점범(李点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이준목(李準穆)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장정동(張貞東)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조승묵(趙承默)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조원래(趙原來)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조태일(趙泰一)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최인우(崔隣友)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영원(金永源)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윤태(金潤泰)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문규주(文圭柱)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변우철(卞又喆)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이정희(李正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차동섭(車東燮)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황성용(黃成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성환(金成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박정환(朴正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오영달(吳英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윤종기(尹鐘起)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이경희(李慶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장재식(張載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박성준(朴晟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박정진(朴政鎭)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전중(金田中)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박경철(朴京喆)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장금배(蔣金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전태호(全泰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추진호(秋珍鎬)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일유(金日猷)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조현철(趙顯哲)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지용근(池龍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정 강재형(姜在馨)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정 박재환(朴載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정 이배윤(李培胤)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강기준(姜基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김명수(金明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김인찬(金仁贊)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김정선(金正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여인관(呂寅官)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최귀연(崔貴然)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정 한익선(韓益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정 나재엽(羅在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김대석(金大石)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강대철(姜大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곽태희(郭太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박종익(朴鍾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이창열(李彰烈)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최덕경(崔德卿)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홍민기(洪旻基)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국윤상(鞠潤相)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양병우(梁丙友)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고재등(高在登)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김상용(金相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손진봉(孫鎭鳳)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서관택(徐寬澤)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양진봉(楊鎭奉)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윤찬오(尹讚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지원식(池元植)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강호양(姜鎬良)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정 김명구(金明求)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설진쾌(薛鎭快)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최영희(崔泳凞)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송수근(宋秀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함

2016.12.3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욱(李東昱)

산업통상자원부 근무를 명함

2016.12.3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배병준(裵秉俊)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에 보함

2016.12.30.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남우체국장

부이사관 임정수(林正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12.31.

김광우(金光宇)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에 보함

(2017.1.2.~2020.1.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민병춘(閔炳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6.12.31.자로 정년퇴직

2016.12.29.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형정(朴炯政)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빈(金興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

허건량(許建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촌진흥청 차장에 보함

2017.1.1.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동훈(朴東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승일(鄭升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2.30.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이재두(李在斗)

총경에 임함

2017.1.1.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고봉균(高逢君)

경정에 임함

2017.1.1.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이현철(李賢喆)

경정에 임함

2017.1.1.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서부원(徐富源)

경정에 임함

2017.1.1.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김성권(金成權)

경정에 임함

2017.1.1.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 오상권(吳相權)

경무관에 임함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보함

2017.1.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수색구조과장

총경 여인태(呂寅太)

경무관에 임함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에 보함

2017.1.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장

경무관 류춘열(柳春烈)

치안감에 임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에 보함

2017.1.1.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장

부이사관 조현중(趙顯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에 보함

2017.1.1.

감사원 사무처 민원조사단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박성익(朴宬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박상식(朴常植)

총경에 임함

2017.1.6.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김영암(金英岩)

총경에 임함

2017.1.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박민철(朴珉哲)

경정에 임함

2017.1.6.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김원태(金垣兌)

경정에 임함

2017.1.6.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상 훈

'2016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반 상 권	근정포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故 김 동 우	근정포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박 선 미	옥조근정훈장
통일부	김 용 민	근정포장
통일부	김 용 규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유 진 우	국무총리표창
통일부	이 점 호	국무총리표창
통일부	이 선 영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2016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김 의 도	홍조근정훈장
통일부	김 종 우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통일부	백 동 룡	국무총리표창
통일부	정 윤 권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북한이탈주민지원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남부하나센터	소 태 영	국민포장
우리들학교	윤 동 주	대통령표창
		2016. 12. 30.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천주교수원교구민족화해위원회	양 은 숙	국무총리표창
복자여명의집	권 오 희	국무총리표창
		2016. 12. 30. 수여
		국무총리

'고품질 쌀 등 식량작물 생산·유통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농어촌공사	유빈상	철탑산업훈장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진의장	산업포장
보성농업협동조합	문병완	산업포장
경상남도	김종범	대통령표창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곽홍섭	대통령표창
영주농업협동조합	남정순	대통령표창
농협중앙회	주철	대통령표창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이정일	대통령표창
(사)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	김장섭	대통령표창
(사)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양동산	대통령표창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김용수	대통령표창
송악농업협동조합	박승석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진안군	박우석	대통령표창
큰사랑영농조합법인	김인현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정병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증평군	전만석	국무총리표창
진도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용준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어촌공사	황인태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권찬홍	국무총리표창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이민용	국무총리표창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채경문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이한용	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미농	이문규	국무총리표창
수영산업영농조합법인	박관주	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기찬들녘	이복기	국무총리표창
농협중앙회	유선곤	국무총리표창
상주농업협동조합	김성철	국무총리표창
한그루영농조합법인	박해원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박현주	국무총리표창

2016. 12. 30. 수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상담센터	정 혜 주	홍조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전 영 래	홍조근정훈장
중부세무서	오 광 태	홍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유 덕 환	홍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류 득 현	홍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이 종 철	홍조근정훈장
북인천세무서	박 경 윤	홍조근정훈장
부천세무서	김 종 오	홍조근정훈장
안양세무서	권 용 수	홍조근정훈장
수원세무서	양 신 규	홍조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이 숭 건	홍조근정훈장
파주세무서	이 제 우	홍조근정훈장
시흥세무서	황 대 철	홍조근정훈장
용인세무서	김 종 찬	홍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오 상 준	홍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임 동 현	홍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김 정 순	홍조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신 은 섭	홍조근정훈장
남원세무서	정 영 숙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현 종 현	홍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최 정 식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최 판 덕	홍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이 경 옥	녹조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강 재 남	녹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강 서 운	녹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홍 희 숙	녹조근정훈장
강서세무서	백 종 분	녹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조 오 연	녹조근정훈장
반포세무서	이 찬 규	녹조근정훈장
반포세무서	서 정 익	녹조근정훈장
금천세무서	이 태 영	녹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서 재 천	녹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이 용 우	녹조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김 재 수	녹조근정훈장
원주세무서	홍 병 희	녹조근정훈장
영동세무서	김 종 문	녹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박 정 분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공주세무서	최 영 숙	녹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김 경 애	녹조근정훈장
광주세무서	이 수 기	녹조근정훈장
광주세무서	김 용 진	녹조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김 현 진	녹조근정훈장
순천세무서	김 성 윤	녹조근정훈장
여수세무서	나 순 자	녹조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김 영 숙	녹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손 동 섭	녹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류 영 애	녹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최 금 줄	녹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유 재 선	녹조근정훈장
동래세무서	김 은 호	녹조근정훈장
창원세무서	이 성 구	녹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설 효 진	녹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윤 용 중	녹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허 동 규	녹조근정훈장
前 송파세무서	故 조광주	녹조근정훈장
인천세무서	조 항 미	녹조근정훈장
남인천세무서	김 미 숙	녹조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양 남 훈	녹조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최 길 해	녹조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차 정 병	녹조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이 봉 규	녹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오 연 향	녹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이 한 철	녹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최 황 경	녹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김 동 천	녹조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김 영 만	녹조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김 한 경	녹조근정훈장
김포세무서	황 원 열	녹조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편 무 학	녹조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최 용 승	녹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조 완 석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이 상 순	옥조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이 승 희	옥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엄 명 희	옥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황 선 용	옥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염 홍 식	옥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전 홍 철	옥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김 종 규	옥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정 찬 인	옥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김 재 봉	옥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박 용 원	옥조근정훈장
성북세무서	임 화 숙	옥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오 병 우	옥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최 병 복	옥조근정훈장
안양세무서	이 원 상	옥조근정훈장
수원세무서	장 옥 훈	옥조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강 상 오	옥조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한 형 남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세무서	노 진 국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의정부세무서	지 동 수	옥조근정훈장
영월세무서	여 준 달	옥조근정훈장
제천세무서	김 정 의	옥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임 공 순	옥조근정훈장
논산세무서	천 보 규	옥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장 복 수	옥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오 을 영	옥조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조 숙 현	옥조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백 기 동	옥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송 하 진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전 병 태	옥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최 명 섭	옥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강 만 수	옥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손 태 식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이 운 대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김 희 권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백 우 현	옥조근정훈장
영덕세무서	정 상 진	옥조근정훈장
영덕세무서	장 수 기	옥조근정훈장
상주세무서	김 태 현	옥조근정훈장
영주세무서	윤 홍 섭	옥조근정훈장
구미세무서	이 관 식	옥조근정훈장
구미세무서	박 홍 권	옥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문 대 곤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박 현 숙	옥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이 덕 용	옥조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우 경 식	옥조근정훈장
성동세무서	김 효 순	옥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이 재 오	옥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고 점 두	옥조근정훈장
북인천세무서	김 규 영	옥조근정훈장
군산세무서	방 영 귀	옥조근정훈장
노원세무서	김 재 인	옥조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김 정 일	옥조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구 본 향	옥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최 현 귀	옥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김 동 호	근정포장
남대문세무서	최 민 호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이 정 권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장 병 순	근정포장
역삼세무서	홍 규 자	근정포장
충주세무서	한 영 미	근정포장
안양세무서	이 혜 경	근정포장
부산지방국세청	윤 종 갑	근정포장
노원세무서	유 활	근정포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김 상 덕	근정포장
잠실세무서	박 은 경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김 병 만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세청	김 영 로	대통령표창
진주세무서	정 민 숙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반포세무서	최 성 락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국세청	김 종 희	국무총리표창
군산세무서	원 정 현	국무총리표창
광명세무서	김 양 기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2016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국세청	김용균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오호선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김지훈	근정포장
중부지방국세청	이병오	근정포장
국세청	함민규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공창석	대통령표창
중부지방국세청	권태은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성철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용진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손해수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신광현	대통령표창
국세청	유 영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이경진	대통령표창
국세청	전정일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정순재	대통령표창
국세청	최영호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공무원교육원	강백근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권영대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김남선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김동수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김진영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서미리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손영삼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이상락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이용균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정경철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정연주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홍철수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재청	차 금 용	녹조 근정훈장
문화재청	남 기 황	녹조 근정훈장
문화재청	허 복 수	녹조 근정훈장
문화재청	김 영 철	녹조 근정훈장
문화재청	김 말 선	근정포장
현충사관리소	전 영 분	근정포장
종묘관리소	정 영 길	근정포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문화재연구소	최 맹 식	홍조 근정훈장
문화재청	정 영 훈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문화재청	김 용 휘	국무총리표창
문화재청	방 현 기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	이중환(李重煥)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홍순(金洪淳)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희엽(李羲曄)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영우(李永雨)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박희붕(朴熙鵬)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송기용(宋基用)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종철(李宗哲)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정석현(鄭奭鉉)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선영(李善永)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전의림(田義林)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철식(金徹植)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강열(李康烈)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신현선(申鉉仙)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용배(金容培)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박인태(朴仁泰)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영수(金榮洙)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성기만(成耆滿)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구	황하중(黃夏中)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구	오두식(吳斗植)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중구	박종철(朴宗澈)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중구	정승철(鄭承哲)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중구	김종진(金鍾震)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이득재(李得宰)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도상수(都相洙)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조원기(趙元基)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 서구	전동식(全東植)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병찬(徐丙纘)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종일(金鐘一)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승(趙勝)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의수(金義洙)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전병수(全丙洙)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강일권(姜日權)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백기(金百基)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달주(李達周)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구	오은자(吳銀子)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중구	김화중(金和重)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백승복(白承福)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이원선(李元善)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창구(李暢九)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김억수(金億洙)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박효흠(朴孝欽)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중구	민병이(閔丙伊)	근정포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5 형제 32122	2015년압제 1689호	김○○	상표법위반		11	하나은행통장(김○○, 914-910018-26307, 별내신도시지검, 031-575-1111)	2 개
			상표법위반		13.8	하나은행통장(김○○, 914-910002-79021, 별내신도시지점, 031-575-1111)	1 개
			상표법위반		11.2	농협통장(김○○, 356-0865-8808-13, 별내농협 불암지점, 031-527-5548)	1 개
2015 형제 32122	2015년압제 1689호	김○○	상표법위반		11.3	농협통장(김○○, 354-1264-8113-73, 진접농협 앙지지점, 031-575-5500)	1 개
			상표법위반		11.4	하나은행통장(장○○, 486-910145-13925, 구리지점, 031-568-1111)	1 개
			상표법위반		12	휴대폰	3 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상표법위반		13	KB국민은행통장(주○○, 218302-04-153288, 동의정부지점, 031-853-0575)	2 개
			상표법위반		13.1	하나은행통장(김○○, 914-910022-10425, 별내신도시, 031-575-1111)	1 개
2015 형제 32122	2015년압제 1689호	김○○	상표법위반		13.2	농협은행통장(김○○, 011-9402-5369-51, 금곡지점, 031-591-2051)	1 개
			상표법위반		13.3	신한은행통장(김○○, 110-429-992411, 별내지점)	1 개
			상표법위반		13.4	농협통장(김○○, 384-0634-8761-13, 관악농협 우성지점, 02-846-5885)	1 개
			상표법위반		13.5	농협통장(김○○, 351-0810-0377-53, 진접농협 양지지점, 031-575-5500)	1 개
2015 형제 32122	2015년압제 1689호	김○○	상표법위반		13.6	농협은행통장(김○○, 302-0976-6065-71, 금곡지점, 031-591-2051)	1 개
			상표법위반		13.7	농협은행통장(김○○, 302-5548-3356-01, 금곡지점, 031-591-2051)	1 개
			상표법위반		11.1	우리은행통장(김○○, 1002-443-748784, 남대문시장지점, 02-756-1371)	1 개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7년 1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52732호	2016압1919호	장욱성	특수절도	장욱성	2	김태진(940727-*******)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3	김태진(940727-*******)명의 주민등록증	1매
					4	김태진(940727-*******)명의 주민등록등본	1매
2016형55200호	2016압1928호	유용선	절도	성명불상	1	로드마스터 자전거 환가대금	2000원
2016형50432호	2016압1733호	이찬형 외3명	특수절도	성명불상	1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1매
					2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매
					3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9매
2016형53665호	2016압1903호	임재군	절도	성명불상	6	태블릿pc (상호명 ASUS)	1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53310호	2016압1853호	강동혁 외1명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알통 ICON 자전거 환가대금	33,000원
2016형54759호	2016압1909호	백성현 외4명	도박	김순영	7	일천원권	14매
					8	일백원	80매
					9	화투	52개
2016형51934호	2016압1823호	김성우	특수절도	성명불상	37	전기면도기 (제품명 KEMEI)	1개
					38	전기면도기 (제품명 Shaver)	1개
2016형26918호	2016압855호	박상선	상습절도	성명불상	1	홍콩 10달러	1
					2	홍콩 50달러	1
2016형53315호	2016압1847호	김정순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KB국민카드 (9436 4514 6710 9146)	1
2015형3859호	2015압153호	오대환	특가법(절도)	안춘호	1	에쿠스차량(31나3281호)	1
					2	차량열쇠	1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7년 1월 9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환부대상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및 금액
15-12697	15압제561	김**외1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서등)	주거불상	5	엘지휴대전화 (LG-F200L)	1대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623 형사보상
(2014고단28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110111-*******)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고단286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0,286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6고약1039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6. 4. 1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610,286원[= 300,000원 + {300,000원 × 0.05 × (20 + 251/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609 형사보상
(2014고단950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110111-*******)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단950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1,5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5고약21749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5. 7. 20.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621,516원[= 300,000원 + {300,000원 × 0.05 × (21 + 159/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95 형사보상
(2014고단95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110111-*******)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단952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3,6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4고약30399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5. 5. 2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623,647원[= 300,000원 + {300,000원 × 0.05 × (21 + 211/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67 형사보상
(2014고단172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변경 전: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한진빌딩)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4고단172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35,86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4고약2264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4. 7. 20.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1,035,860원[= 500,000원 + {500,000원 × 0.05 × (21 + 159/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81 형사보상
(2014고단28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110111-*******)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고단285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23,661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4고약1884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4. 8. 1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423,661원[= 200,000원 + {200,000원 × 0.05 × (22 + 134/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25 형사보상
(2014고단144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남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범일동 68-31
대표이사 이석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4고단144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29,836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44802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1. 8. 30.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529,836원[= 300,000원 + {300,000원 × 0.05 × (15 + 118/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39 형사보상
(2014고단10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남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범일동 68-31
대표이사 이석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2. 선고 2014고단109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17,581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1고약22701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2. 6. 24.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517,581원[= 300,000원 + {300,000원 × 0.05 × (14 + 185/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6.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안희경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47 형사보상
(2014고단196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남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범일동 68-31
대표이사 이석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4. 선고 2014고단196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4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6고약877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7. 5. 31.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740,000원[= 50만 원 + {50만 원 × 5% × (3,50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19 형사보상
(2015고단10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국보
소재지 서울 중구 소공로 88 (소공동, 한진빌딩)
송달장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 186 (청학동)
대표이사 김영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5고단10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26,301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4고약113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4. 5. 23.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426,301원[= 20만 원 + {20만 원 × 5% × (8,26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05 형사보상
(2015고단6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국보
소재지 서울 중구 소공로 88 (소공동, 한진빌딩)
송달장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 186 (청학동)
대표이사 김영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5고단6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9,534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4고약3534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4. 5. 21.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639,534원[= 30만 원 + {30만

원 × 5% × (8,26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91 형사보상
(2014고단168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국보
소재지 서울 중구 소공로 88 (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 186 (청학동)
대표이사 김영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5. 선고 2014고단168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10,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1599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0. 8. 3.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910,684원[= 50만 원 + {50만 원 × 5% × (5,99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77 형사보상
(2015고단82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27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17,26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154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5. 4. 18.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417,260원[= 20만 원 + {20만 원 × 5% × (7,93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63 형사보상

(2015고단836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36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78,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39104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8. 6. 12.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578,589원[= 30만 원 + {30만 원 × 5% × (6,77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49 형사보상
(2015고단849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4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3,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17307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5. 6. 13.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623,589원[= 30만 원 + {30만 원 × 5% × (7,87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35 형사보상
(2015고단83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51 (용당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진목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3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06,849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1749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6. 5. 2.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406,849원[= 20만 원 + {20만 원 × 5% × (7,55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21 형사보상
(2015고단825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51 (용당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진목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25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0,054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579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7. 9. 6.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590,054원[= 30만 원 + {30만 원 × 5% × (7,05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07 형사보상
(2015고단833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51 (용당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진목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3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16,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404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5. 5. 13.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416,575원[= 20만 원 + {20만 원 × 5% × (7,90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393 형사보상
(2015고단82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51 (용당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진목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25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0,5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7고약454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7. 8. 25.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590,547원[= 30만 원 + {30만 원 × 5% × (7,07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604 형사보상
(2014고단948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948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30,205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3고약4199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4. 12. 2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630,205원[= 300,000원 + 330,205원{= 300,000원 × 0.05 × (8,035/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76 형사보상
(2014고단216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2. 선고 2014고단216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2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4고약759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5. 5. 2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624,000원[= 300,000원 + 324,000원{= 300,000원 × 0.05 × (7,884/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90 형사보상
(2014고단59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조양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1916호(수서동, 로즈데일)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2, 6층(한국아이비에스빌딩)
대표이사 최영균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4. 선고 2014고단592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90,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7고약419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7. 8. 19.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590,589원[= 300,000원 + 290,589원{= 300,000원 × 0.05 × (7,071/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62 형사보상
(2016고단42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서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상구 사상로 567(모라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김성태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고단425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20,5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5고약26396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5. 8. 21.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620,547원[= 300,000원 + 320,547원{= 300,000원 × 0.05 × (7,800/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618 형사보상
(2014고단377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소공동)
송달장소 부산 남구 우암로 225
대표이사 이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29. 선고 2014고단377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07,89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6고약1729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6. 6. 24.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607,890원[= 300,000원 + 307,890원{= 300,000원 × 0.05 × (7,492/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72 형사보상
(2014고단579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망 김의조의 자 김재구 (550514-*******)
주거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180, 101동 1009호(신평동, 신익강변타운1차)
송달장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753, 협진트랙트내(392, ㈜승학주유소2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31. 선고 2014고단579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042,191원을 지급한다.

이 유

망 김의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법원 1994고약3414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5. 4. 27.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망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우복득, 김정혜, 김말숙, 김시혜, 청구인(김재구), 김종

구, 김민혜]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우복득은 2014. 11. 21. 사망하고(그로 인한 상속재산은 김정혜, 김말숙, 김시혜, 청구인, 김종구, 김민혜가 상속하였다), 김정혜, 김말숙, 김시혜, 김종구, 김민혜가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형사보상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1,042,191원[= 500,000원 + 542,191원{= 500,000원 × 0.05 × (7,916/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8.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51 형사보상
(2015고단85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51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054,931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4고약10600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4. 10. 7.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러므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 날인 1994. 10. 8.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합계 1,054,931원[= 500,000원 + {500,000원 × 5% × (8,102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2.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이경호
판사 윤소희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58 형사보상
(2015고단852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고단852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39,41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4고약11967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4. 4. 30.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39,410원[= 300,000원 + {300,000원 × 5% × (8,25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9.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이경호
판사 윤소희